2023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

2022년도 실적신고

CAK 대한건설협회

문의하실 곳

회원사 : 본사 주소지 기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시 · 도회	전화번호	시 · 도회	전화번호
서울시회	(02) 3218-9121~4	강원도회	(033) 254-2912
부산시회	(051) 906-9000	충북도회	(043) 253-7496
대구시회	(053) 751-6601	충남세종시회	(041) 633-3000
인천시회	(032) 439-7272	전북도회	(063) 288-3881~2
광주시회	(062) 232-5601	전남도회	(062) 511-4001~5
대전시회	(042) 486-0881~4	경북도회	(053) 755-5007
울산시회	(052) 244-6500	경남도회	(055) 288-7001
경기도회	(031) 253-4551~3	제주도회	(064) 746-2503

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회

	문의사항	전화번호
1차신고	자기건설공사를 제외한 모든 문의	(02)3485-8337~56
	자기건설공사 관련 문의	(02)3485-8277, 274 275, 272
2차신고	건설업조사표를 제외한 모든 문의	(02)3485-8337~56
	건설업조사표 문의 (국내, 해외결산사항)	통계청(산업통계과) (02)2012-9114

공동인증서 : 한국무역정보통신 ☏ 1688-2370

CONTENTS

Ⅰ. 실적신고 일러두기

1. 시공능력평가 제도 2
2. 시공능력평가 신청(대상 및 절차) 3
3.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 8
4. 문 의 처 9
5. 최근 변경사항 11

Ⅱ. 실적신고 하기

가. 1차 실적신고(공사실적 관계서류) 16

A. 개 요 16

B. 작성요령 18

1. 신고서작성

01. 작성담당자 및 홈택스온라인 전송 21
02. 업체 개요 23
03. 기타공사업 등록현황 25
04. (종합)(전문)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26
04-1. 기성실적증명서 작성하기 38
04-2. 기성실적증명서 전자문서 전송하기 52
05. 건설기술인 명단 61
06. 자기건설공사 신고 64
07. 별지서식 신고 74
08. 건설업 조사표 77

2. 내용확정 79
3. 서류출력 81

나. 2차 실적신고(재무제표 관계서류) 86
1. 개 요 86
2. 작성요령 91
3. 내용확정 및 출력, 서류제출 107

Ⅲ. 실적신고 이후 해야 할 일

1. 1차 실적신고 이후 해야 할 일 112
2. 2차 실적신고 이후 해야 할 일 114

Ⅳ. 부록

1. 시공능력평가 관련 규정 118
2. 발주자 (분류/세분류) 해설 132
3. 공사유형[신설/유지보수] 판단 요령 151
4. 공 종 (분류/세분류) 해설 158
5. 건설기술인 분류 165
6. 재무제표 계정과목 해설 166
7. 교재 주석 해설 182
8. 서식 모음 186

Creating Advanced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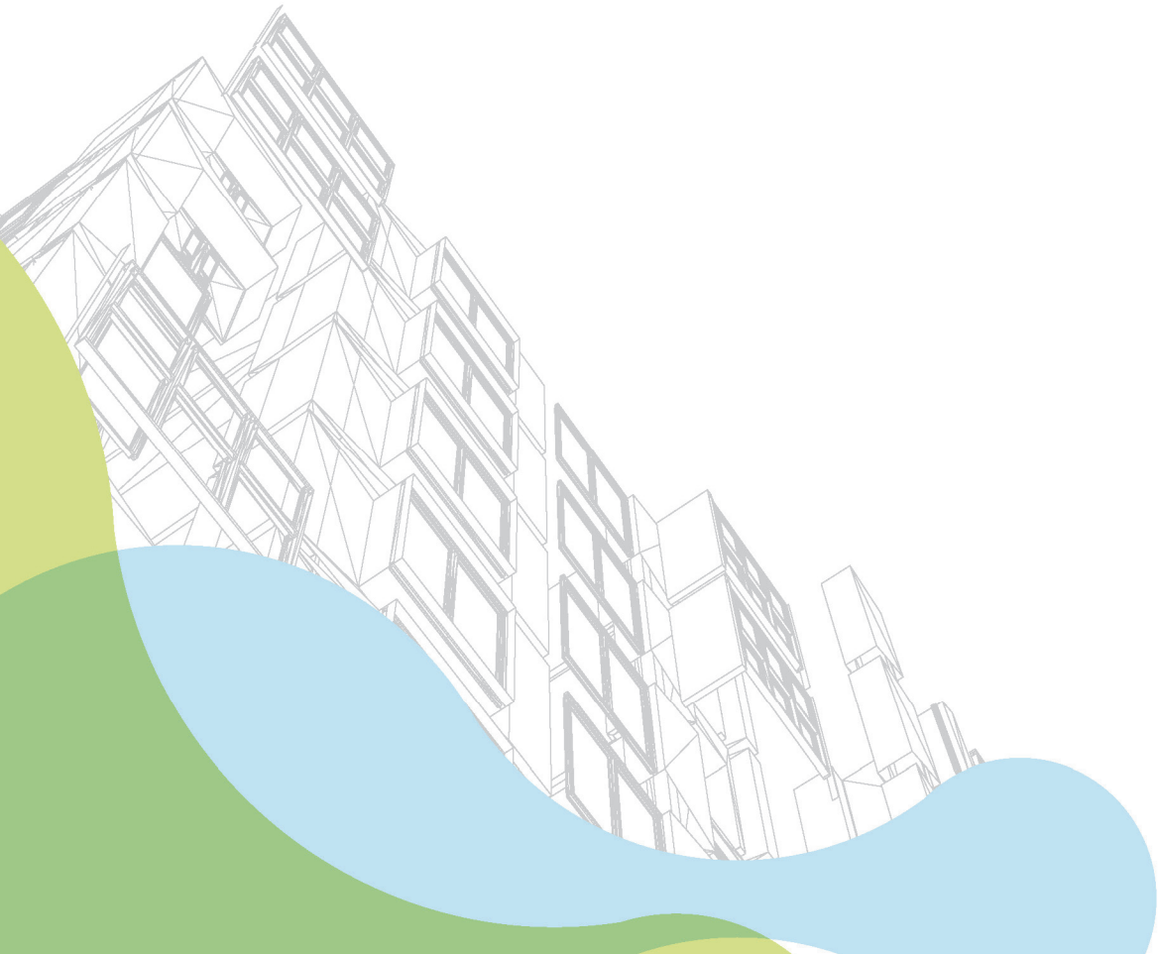

2022년도

실적신고

Ⅰ. 실적신고 일러두기

1. 시공능력평가 제도
2. 시공능력평가 신청(대상 및 절차)
3.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
4. 문 의 처
5. 최근 변경사항

1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 요

○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뒤 이를 시공능력으로 공시하는 제도

○ **공 시** : 매년 7월 31일까지

※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은 익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전까지 유효

○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활 용

○ 발주자의 적정한 건설사업자 선정에 활용

【활용 예 : 관급공사】

- 공사 규모별로 등급을 나누어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조달청)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특정 시공능력평가액 보유자로 참가자 지명(기재부, 행안부) 등

○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의 선정 기준

○ 대기업인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 도급하한 금액 결정 등

2 시공능력평가 신청(대상 및 절차)

신청 대상

○ **2022. 12. 31** 현재 **종합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사업자

* **종합건설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신청 방법

○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신고기간(신청 접수기간)까지 대한건설협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

○ **신청 접수기간** : 기간 내 접수만 가능

구분	접수일자	접수시각
공사실적 신고	2023. 2. 1(수) ~ 2. 15(수)	09:00~18:00
재무제표 신고	2023. 4. 3(월) ~ 4. 17(월)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으며, 마지막 접수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까지 접수

※ 1차, 2차 모두 신고해야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가능

○ **접 수 처 : 대한건설협회**

회 원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본사 소재지 기준)
비회원 (입찰자료제공서비스 이용업체 포함)	대한건설협회 **본 회**

☞ 자세한 접수처는 9쪽 참조

○ **제출서류 : 신고표지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 **신고표지** : 건설공사 실적신고(I) 또는 건설공사 실적신고(II)
- **입증서류** : 기성실적증명서, 재무제표확인원 등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 자세한 서류목록은 17, 87쪽 참조

공통 주의사항

○ 1차(공사실적) 및 2차(재무제표)신고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받을 수 있음

○ 서류접수는 정해진 접수기간 내에만 받음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제출 전 부본을 보관할 것

○ 서류제출 후 수정 또는 추가 제출 불가

○ 신고표지와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

- 원본 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일체의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인, 철인 또는 압인 등의 표시가 되어 있을 것
- 다만, 사본이 가능한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종이사본 제출하지 말 것)

○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자료로 제출됨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 허위신고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음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8,000만원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6개월 또는 1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183쪽 참조)

1차 신고(공사실적) 주의사항

○ **비건설부문***은 제외하고 신고할 것

* **비건설부문** : **건설용역**(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비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공사)

○ **1건의 계약**으로 발생된 기성실적은 **주된 공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2개 이상의 공종으로 분리하여 신고 불가**

※ 예시) ○○다세대 건립공사(건축) 1건 ⇒ ○○다세대 건립공사(건축) 신고 가능

~~⇏ ○○다세대 건립공사(토목)~~ 신고 불가

○ 종합·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 **업종별 소관협회에 각각 신고**

- 1건의 공사를 종합공종과 전문공종으로 이중 신고 불가

※ **다만,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사 중** 2021.1.1. 이후 입찰공고된 공공공사, 또는 2022.1.1. 이후 입찰공고(없으면 도급계약 체결)된 민간공사에 **종합건설업종의 자격으로 전문공사를 수행한 경우 대한건설협회에 신고**

○ 기성이 발생하지 않은 신규공사도 당년도기성액 '0'으로 신고

○ 2022년 기성실적에 대하여 신고

※ 2021년 및 2020년 기성실적을 신고 누락한 경우 누락분으로 실적신고

○ **종합공사 → 전문공사, 신고번호 순**으로 증명서 정렬

○ 입찰공고일이 2022.1.1. 이후인 **유지보수공사는 협회에 신고하지 않음**에 유의

○ **종합공사를 전문공사로,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올해부터 실적신고 출력물인 **건설공사실적총괄표, 건설공사기성실적 신고서, 건설기술인보유현황표는 제출하지 않음**

2차 신고(재무상태) 주의사항

○ 재무제표는 당기와 전기로 구분된 **연도비교식**으로 제출

○ 외부감사대상업체(185쪽 참조)는 감사보고서를, 그 외 기업은 재무제표 확인원 제출

- 외부감사대상업체가 아니더라도 5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의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사보고서 제출

○ 재무제표는 '22년도 중 도래한 정기결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정기결산서 제출

<예시> 3월말이 정기결산일인 업체의 경우 '21.4.1~'22.3.31의 기간에 대한 결산서 제출

○ 정기결산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결산일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정기총회 의사록이나 정관(원본대조필) 업로드

<예시> 12월 결산법인이 6월말 결산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2.1.1~22.6.30 기간의 결산서 제출 및 정기총회 의사록 업로드

○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건설매출액과 건설외매출액으로 구분 표시

※ 건설매출액과 건설업외매출액의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 '건설매출액구분확인서'(216쪽 참조) 제출

○ 기술개발투자비는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206쪽 참조) 함께 제출

신청 절차

준 비	- 신고안내시스템(http://siljuk.cak.or.kr) 로그인 -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비회원은 프로그램 이용료 결제
신고서 작성	- 실적신고 제반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서류 출력
서 류 접 수	- 신고서류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우편 : 도착분에 한함) ① 공사실적 신고 : 2. 1(수)부터 2. 15(수)까지 제출 ② 재무제표 신고 : 4. 3(월)부터 4. 17(월)까지 제출 ※ ①, ② **모두 제출**
접 수 확 인	- 서류접수 여부 확인 : http://siljuk.cak.or.kr ➔ 접수여부 확인
결 과 확 인	- 신고한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 확인 http://siljuk.cak.or.kr ➔ 평가결과 확인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기간내 이의 신청 (기간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 평가결과 확정) ① 공사실적 평가결과 확인 : 5월 15일 ~ 19일(예정) ② 경영상태 평가결과 확인 : 6월 12일 ~ 16일(예정) ③ 시공능력 평가요소 확인 : 7월 10일 ~ 14일(예정) ※ 결과는 별도/개별 안내하지 않으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 시	① 공사실적 증명발급 개시 : 6. 1 (예정) ② 경영상태 증명발급 개시 : 7. 1 (예정) ③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7월말 (예정)
수첩 기재	- 시공능력평가액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8월 1일 이후, 본사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3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자세한 산정방식은 부록1(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118쪽) 참조

시공능력 평가액 = **공사실적 평가액 (①)** + **경영 평가액 (②)** + **기술능력 평가액 (③)** ± **신인도 평가액 (④)**

①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의 연차별 가중평균액**[1] × $\frac{70}{100}$

☞ 1)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 182쪽 참조

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2] × $\frac{80}{100}$

☞ 2)경영평점 : 182쪽 참조

③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납임금 × 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④ **신인도평가액** = 최근 3년간 건설공사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 30%이내
허위실적의 경우 - 60%이내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및 별표1

4 문의처(접수처)

회원사 : 본사 주소지 기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시・도회	전 화 홈페이지	주 소
서울시회	(02) 3218-9121~4 www.scak.or.kr	06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부산시회	(051) 906-9000 cak.or.kr/busan	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진흥원 701호
대구시회	(053) 751-6601 cak.or.kr/daegu	41250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84
인천시회	(032) 439-7272 cak.or.kr/incheon	22007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B동 25층 2506호, 2507호)
광주시회	(062) 232-5601 cak.or.kr/kwangju	61926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174, 5층(양동)
대전시회	(042) 486-0881~4 cak.or.kr/daejun	35214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26, 601호
울산시회	(052) 244-6500 cak.or.kr/ulsan	44417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3층(건설회관)
경기도회	(031) 253-4551~3 www.kcak.or.kr	1627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05, 3층
강원도회	(033) 254-2912 cak.or.kr/kangwon	24217 강원도 춘천시 동면 후만로 166, 2층(건설회관)
충북도회	(043) 253-7496 www.cbcak.or.kr	28760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82 3층(용암동117-1)
충남세종시회	(041) 633-3000 cak.or.kr/chungnam	32256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8, 센트럴타워 4층
전북도회	(063) 288-3881~2 cak.or.kr/jeonbuk	5498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전남도회	(062) 511-4001~5 cak.or.kr/jeonnam	6122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한국시멘트빌딩 4층)
경북도회	(053) 755-5007 cak.or.kr/kyungbuk	420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74안길 11
경남도회	(055) 288-7001 cak.or.kr/kyungnam	5138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26, 4층(건설회관)
제주도회	(064) 746-2503 cak.or.kr/cheju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9층(건설회관)

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회

○ **1차 신고**(공사실적 관련) : **정보관리실**

자기건설공사를 제외한 모든 문의	(02)3485-8337~56
자기건설공사* 관련 문의	(02)3485-8277, 274 275, 272

* **자기건설공사** : 발주자(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

○ **2차 신고**(재무제표 관련) : **정보관리실**

건설업조사표를 제외한 모든 문의	(02)3485-8337~56
건설업조사표 문의 (국내, 해외결산사항)	통계청(산업통계과) (02)2012-9114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실적신고 접수처

○ **홈페이지 :** www.cak.or.kr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 관련 문의처 : 한국무역정보통신 ☏ 1688-2370

5 최근 변경사항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준 부분 포함하여 실적 인정

아 래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하도급**일 것

※1건공사금액이 10억원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금지 및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도급(재하도급) 가능 등(건산법 제29조)

② 원도급공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공공사
-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된 민간공사

* 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체결'을 말함

○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기준

아 래

① (사례1)**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A)**가 다른 건설사업자(B)에게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부분의 실적(B의 실적)을 원도급자의 실적(A)에 가산하여 인정. 다만, 2020.12.31. 이전(민간공사는 2021.12.31. 이전) 발주한 공사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B)에게 하도급 한 경우 원도급자(A)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

② (사례2)**하수급자인 종합건설사업자(B)**가 다른 전문건설사업자(C)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한 부분의 실적(C의 실적)의 1/2을 하수급자(B)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

③ (사례3)**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D)**가 다른 건설사업자(E 또는 F)에게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E의 실적 또는 F의 실적)의 1/2을 원도급자(D)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

④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 받아 시공한 실적만 인정

< 참고 > 건산법상 개편된 원하도급 체계도 (자료 : 국토부)

❶ 본(本)업역 도급시 : **최대 3단계**

❷ 상대업역 도급시 : **최대 2단계**

종합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전문공사)한 경우 실적신고

※ 상기 <참고>의 사례3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한건설협회에 신고

아 래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사일 것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공공사
-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된 민간공사

*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을 말함

③ 종합건설사업자 자격으로 전문공사를 수주하였을 것

※ 전문건설사업자 자격으로 전문공사를 수주한 경우 전문건설협회에 신고

종합건설사업자의 신설-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 **종합건설사업자 자격**으로 **수주한 공사**는 대한건설협회에 실적신고

- 다만, 입찰공고(없으면 도급계약체결)일이 2022.1.1이후인 유지보수공사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실적신고

공사유형(신설공사-유지보수공사) 판단 요령

□ (**신설**)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 (**유지보수**)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 · 보수 · 보강하는 공사

<유지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 시설물의 **완공 전** 공사

▶ 건축물의 **증축 · 개축 · 재축** 및 **대수선**공사

※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정의는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 ·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 · 보강 · 변경**하는 공사

*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주요구조부>

-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 공사유형(신설공사-유지보수공사) 판단 요령 세부내용은 151쪽 참조

1차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 건설공사실적총괄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건설기술인력보유 현황표를 제출서류에서 제외

종전

신고서철	No. 1	건설공사실적신고(Ⅰ) 표지
	No. 2	~~건설공사실적총괄표~~
	No. 3	~~건설공사기성실적 신고서~~
	No. 4	~~건설기술인인력보유 현황표~~
증명서철	No. 5	~~기성실적증명서 표지~~
	No.5-1	기성실적증명서 원본
	No. 6	기성액 대비 매출처별 금액 확인표
	첨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변경

증명서철	No. 1	**건설공사실적신고(Ⅰ) 표지**
	No. 2	**기성실적증명서 원본**
	No. 3	**기성액 대비 매출처별 금액 확인표**
	첨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자기공사철	No. 7	자기건설공사실적 평가신청 표지
	No. 8	자기건설공사실적 평가 신청서
	No. 9	총공사비내역총괄표

자기공사철	No. 4	자기건설공사실적 평가신청 표지
	No. 5	자기건설공사실적 평가 신청서
	No. 6	총공사비내역총괄표

○ 입증서류 제출 간소화

종전		변경
각종 입증서류 신고시 서면 제출	⇨	**실적신고 입력시 업로드**

- 업로드 대상서류 : 사본 제출이 가능한 입증서류

ex)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발주자의 서면승락서, 기술인의 자격·재직증빙자료 등

※ 날인 도장을 요구하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서면 제출하여야 함

2022년도

실적신고

Ⅱ. 실적신고 하기

가. 1차 실적신고(공사실적 관계서류)

A. 개　　요

B. 작성요령

1. 신고서작성

2. 내용확정

3. 서류출력

가 1차 실적신고(공사실적 관계서류)

A 개 요

신고대상

○ 2022. 12. 31 현재 **종합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사업자

신고기간 : 2023. 2. 1(수) ~ 2. 15(수), 프로그램 12월말 오픈

※ 2차 신고기간 : 2023. 4. 3(월) ~ 4. 17(월)

접수처 : 대한건설협회 (☞ 9쪽 참조)

회 원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본사 소재지 기준)
비회원 (입찰자료제공서비스 이용업체 포함)	대한건설협회 본 회

- 종합·전문건설업 겸업 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건설공사(1차신고)는 해당 소관 협회에 각각 신고

※ **다만,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사로써 보유한 종합건설업종으로 전문공사를 수행한 경우 대한건설협회에 신고**(공공공사는 2021.1.1. 이후 입찰공고, 민간공사는 2022.1.1.이후 입찰공고(없으면 도급계약)한 공사에 한함)

제출서류

○ 협회 실적신고 시스템에서 작성·확정한 출력물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제출서류 목록

필수	No. 1	**건설공사실적신고(I) 표지**	전산 출력물 (대표 직인)
	No. 2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발주자가 확인한 원본
	No. 3	기성액 대비 매출처별 금액 확인표	전산 출력물
	첨 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원본

선택	자기공사신고서류	No. 4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서 표지
		No. 5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서 (감리자가 확인한 원본)
		No. 6	총공사비내역총괄표
	별지서식	1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내역신고서
		2	산업·환경설비제조실적신고서 ↳ 산업·환경설비제조실적 확인서**(발주자 확인 원본)**
		3	건설사업관리위탁수행실적신고서
		4	새로운기술·공법사용에 따른 공사비절감, 시공기간 단축공사 내역신고서 ↳ 새로운기술·공법사용에 따른 공사비절감, 시공기간 단축공사 증명서**(발주자 확인 원본)**
		5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내역 신고서 ↳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설실적 증명서**(발주자 확인 원본)**
		6	경력 건설근로자 건설업등록(창업) 우대 신고서
		7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내역 신고서 ↳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내역 확인서**(발주자 확인 원본)**

B 작성요령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안내시스템 초기화면 설명

대한건설협회 신고안내시스템(http://siljuk.cak.or.kr)에 접속

❶ **로그인** : 사업자등록번호/공동인증서 확인 후 로그인

❷ **신고서 작성·확정** : 건설공사·재무제표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❸ **접수 확인** : 실적신고 접수 여부 확인

❹ **평가결과 확인** : 접수완료(❸) 이후 실적신고 평가결과 확인

※ **평가결과 확정** : 이의 신청없이 평가결과 확인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기간내에 평가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포함

❺ 마이페이지

- 실적검토담당자의 검토가 끝나면 보완·삭감내용을 휴대폰(카카오톡,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함.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검토진행현황, 보완현황 등 확인

· 보완이 필요한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은 마이페이지에서 업로드 요망

❻ 세금계산서(영수증) : 납부한 회비입금증(또는 세금계산서) 확인

❼ 공동인증서

- **대한건설협회 시스템*** 이용시 사업자 범용공동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 실적신고/상호협력평가/하도급직불신청, 인터넷증명발급 등

- 문의처 : 한국무역정보통신(☏ 1688-2370)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기

① 사업자등록번호/공동인증서 확인 후 로그인

② "신고서 작성·확정 버튼" 클릭

③ "조회하기" 버튼 클릭

④ 업체정보 확인하여 "로그인" 버튼 클릭

※ 상호변경, 합병, 양수 등에 따라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되었거나 변경 전 업체정보가 나타는 경우 본사 소재지 관할 시도회(9쪽 참조)에 확인

1. 신고서작성

01 작성담당자 및 홈택스온라인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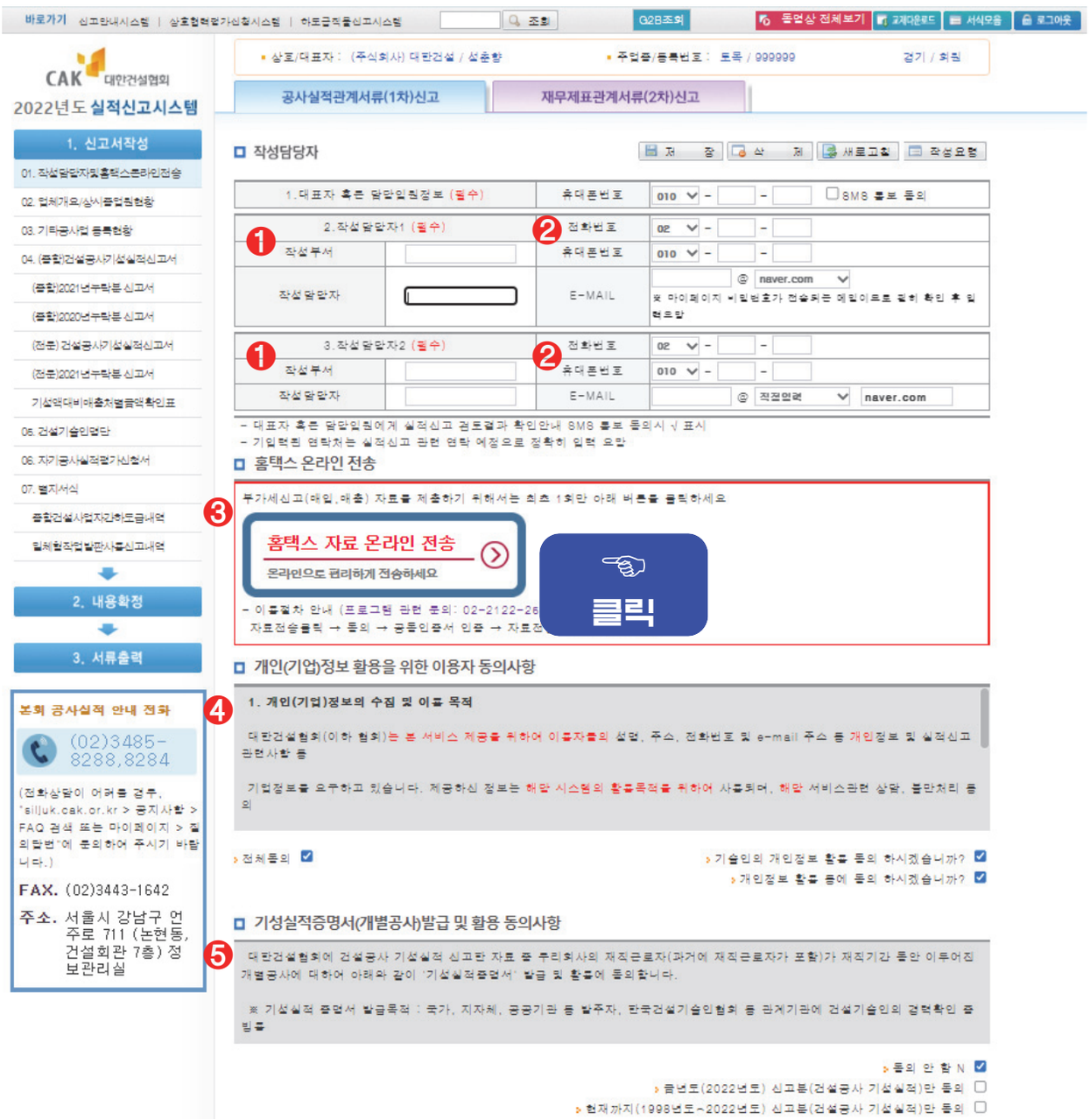

❶ 작성부서 및 작성담당자, ❷ 연락처

- 실적신고 후 증빙자료 추가 제출, 평가결과 통보 등에 사용
  - ※ 실적신고 이후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협회로 통보
  - ※ 대표자 또는 담당임원도 안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SMS 통보 동의에 ☑ 체크
- 입력완료 후 반드시 "저장"하여야 함

❸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 자료**" **전산연계하기**(2023. 1월 25일 이후)

※ 전산연계 가능일자는 국세청 일정에 의함

- 실적신고시스템「01. 작성담당자및홈택스온라인전송」하단에 "홈택스 온라인 전송 클릭 : 부가세신고(매입, 매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자료전송 필수

★ 홈택스 온라인 전송 진행절차

자료전송 클릭

동의(☑) 후 확인 및 로그인 클릭

사업자번호 입력 후 로그인 클릭

부가세매입매출처 합계표 선택 및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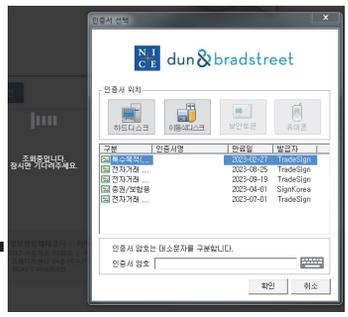

공동인증서 암호 입력후 확인 클릭

전송내역 조회

※ 관련문의 : 02-2122-2536 나이스D&B

❹ 개인(기업)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 건설기술인의 시공능력평가업무 및 작성담당자의 실적신고통보업무에 필요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미동의시 해당업무 진행 불가

❺ 기성실적증명서(개별공사) 발급 및 활용 동의사항

- 재직근로자(과거 재직근로자 포함)가 재직기간 동안 이루어진 개별공사에 대한 기성실적 증명서 발급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체크함

※ 미동의시 재직근로자가 협회 건설기술자 경력확인 용도의 증명발급시 개별적으로 재직회사의 동의를 구해야 함

02 업체 개요

❶ **법인설립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일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❷ **대표자 성명** : 공동대표자일 경우 1인만 표시

❸ **본사 소재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❹ **주영업소재지** : 본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자사의 실질적인 주된 영업 소재지

❺ **전화번호 및 Fax번호** : 실적신고 담당부서

※ 실적신고기간 종료시「http://siljuk.cak.or.kr」 → "마이페이지"에서 수시 수정 가능

❻ **기업형태, 상장여부 및 겸업여부**

❼ **해외건설업 유무**

❽ **건설업 등록번호** : 자동으로 표시

※ 건설업 등록번호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본사 소재지 관할 시도회(9쪽 참조) 문의

❾ **상시종업원 수** : (101쪽 참조)

- 2022년 12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상 상시종업원 수 기재

※ 상시 종업원 수(대표자 및 임원 제외) ≠ 건설기술인보유현황의 기술인 수

03 기타공사업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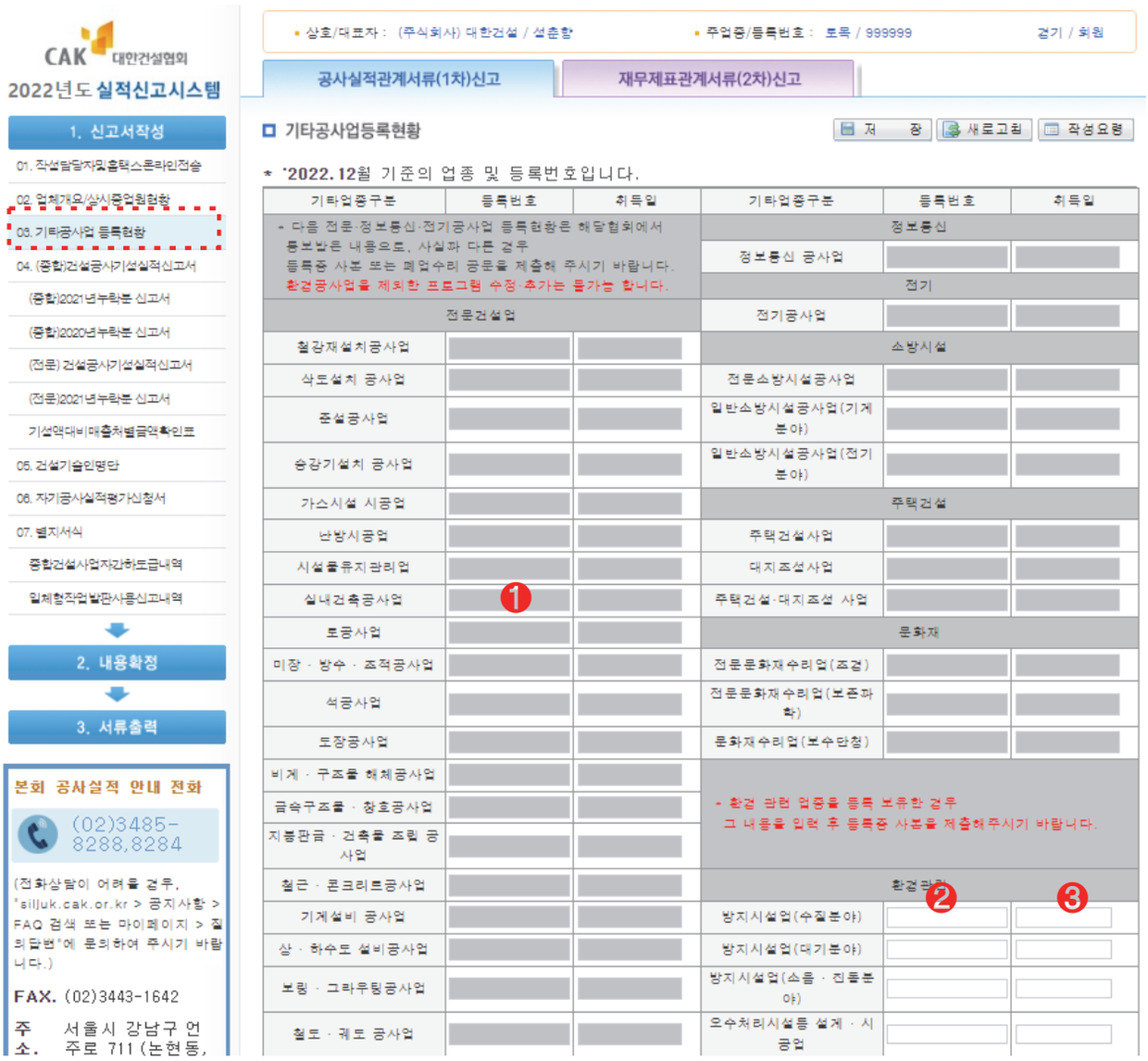

☞ 화면 좌측 메뉴에서 "03. 기타공사업 등록현황"을 클릭하여 보유한 기타공사업을 입력·저장함

❶ 음영부분(직접 수정불가)은 해당협회에서 제공된 자료이며,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 공문제출(등록증 또는 폐업수리공문 등 증빙서류 포함) 요망

❷ 환경관련 시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록번호와 취득일 입력

※ 2022. 12. 31 기준,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❸ 취득일 : 최초 취득일

※ 해당사업을 양수한 경우 : 양수일이 아닌 양수전의 최초취득일

04 (종합)(전문)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신고대상 공사

① **시설공사 유형**에 따른 신고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173쪽 참조)는 신고대상이 아님

※ 물품구매·제작납품·용역계약은 신고대상 아님 (예외 : 184쪽 참조)

※ 전문공사 및 위 비건설공사 실적 등을 타협회와 우리협회에 중복신고시 허위신고가 될 수 있음

- **종합·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 업종별 소관협회에 각각 신고**

다만,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는 예외적으로 대한건설협회에 신고

가.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사일 것

나. 종합건설업종의 자격으로 전문공사를 수행하였을 것

다. 2021.1.1. 이후 입찰공고된 공공공사, 또는 2022.1.1. 이후 입찰공고(없으면 도급계약)된 민간공사일 것

② **기성발생 시점**에 따른 신고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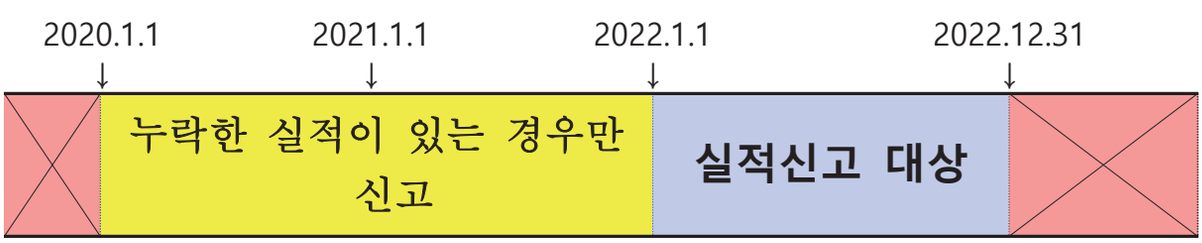

신고시 주의사항

구 분	내용
금 액	- **단위 : 백만원**(VAT포함, 백만원 미만 절사)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전문공사의 경우 : 천원**(미만 절사) ※면세·영세율의 경우 : VAT를 가산하지 않음 -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기성***이 이루어진 경우 신고 * **기성** : 당년도 시공에 대해 발주자가 인정한 금액 - 기성이 없이 **선금만** 수령한 경우 기성액에 포함하지 않음 - **발주자가 공급한 자재**가 있는 경우 → 계약액 및 기성액에 포함하지 않음 - **건설용역부분**(건설공사에 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과 전기·정보통신 등 비건설공사 제외** - 2020.12.31. 이전 입찰공고한 공공공사 또는 2021.12.31. 이전 민간 원도급공사 중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공사는 하도급 준 금액 제외
공 종	- 1건 도급계약으로 성립된 도급공사는 주된 공종으로 신고 ☞ 예시) ○○다세대 건립공사 1건 도급계약 ⇒ ○○다세대 건립공사 주된 공종인 건축으로만 신고 ⇏ ○○다세대 건립공사를 각각 건축과 토목으로 나누어 신고 불가 - 공종세분류 코드는 (입·낙찰시) 주요 공종별 실적 및 동일 공정 실적평가 등의 기준(추후 수정 불가)
발주자	- 발주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예시) 123456-XXXXXXX ※ 잘못 입력하면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아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불인정	-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 건설업등록 전의 계약 및 실적 · 영업정지기간 중의 계약 · 하도급제한·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경우

공사유형별 증빙서류

지역	발 주 자	설 명	증빙서류
국내 공사	공공공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	- 발주기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 발주자 전자승인 전자증명서의 경우, 종이서류 제출없이 전자적 제출 가능
	민간공사	**법인/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 (하도급 포함)	- 발주자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 계약금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생략가능 ※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확인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주한 외국군 공 사	**주한UN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 (**외화**로 수령한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원본 및 도급계약서 사본 - (원화로 계약하여 **원화** 수령한 경우) 당해공사 금액이 입금된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 내역서(지점장 확인) 및 도급계약서 사본(214쪽 참조)
	자기공사	**발주자 = 도급인**	-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 신청서류** ※ 64쪽 참조

지역	수 급 인	설 명	증빙서류
해외 공사	국내기업	**국내건설사업자**가 해외에서 건설하는 공사(하도급공사 포함)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하도급공사 동일)
	외국기업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에서 건설하는 공사	- (해외 **공공기관**)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 (해외 **공공기관 이외**) 감리자가 확인하고 당해 외국 상공회의소가 확인한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기성실적증명서

※ 해외(외화)공사는 2022년말 최종 공시된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 기재하고, 현지화로 계약된 경우에는 현지화 대비 US$ 환율을 기재

기성실적신고서 입력메뉴 구분

공사유형 및 기성연도 구분		실적신고시스템 입력메뉴
종합건설 공사의	2022년도 기성 신고 ➔	04. (종합)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2021년도 기성 신고 ➔	(종합)2021년누락분 신고서
	2020년도 기성 신고 ➔	(종합)2020년누락분 신고서
전문건설 공사※의	2022년도 기성 신고 ➔	(전문)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2021년도 기성 신고 ➔	(전문)2021년누락분 신고서

※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된 공사로써 2021.1.1. 이후 입찰공고한 공공공사와 2022.1.1. 이후 입찰공고(없으면 도급계약 체결)한 민간공사에 한함

기성실적신고서 입력요령

❶ **종합공사는 「04. (종합)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클릭**
전문공사는 「(전문)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클릭

❷ **"전년도 자료 가져오기" 클릭**

※ 전년도 자료중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경우 삭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입력

※ 매월 조사통계자료를 협조한 업체의 경우, 신규 수주(계약)건이 확인 될 수 있음

❸ 신규 건에 대해서는 "**추가**"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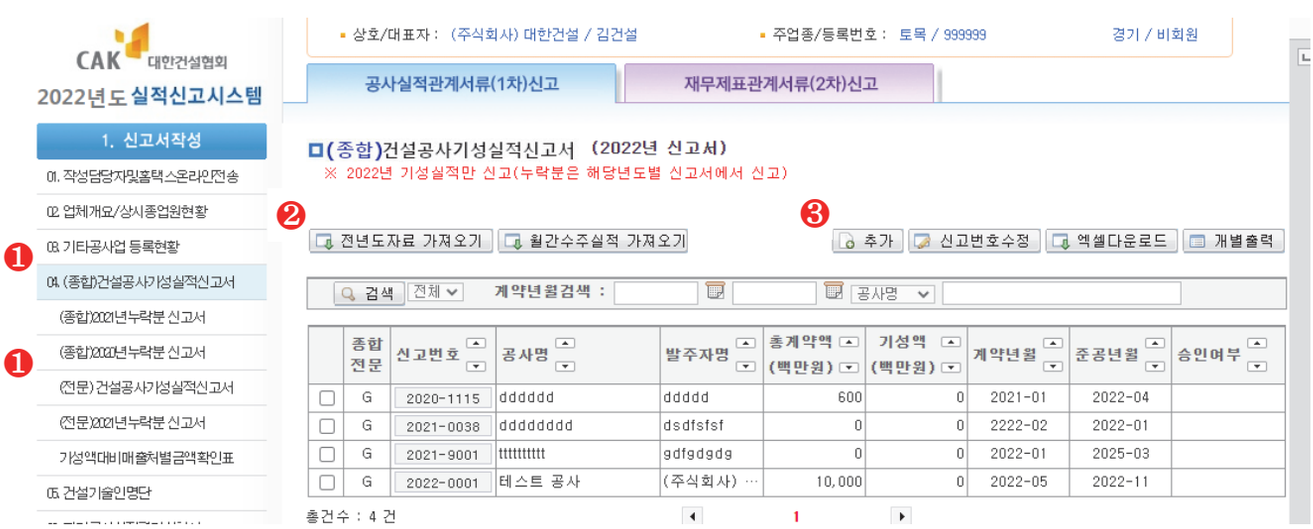

(종합)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입력화면

공사실적관계서류(1차)신고 | 재무제표관계서류(2차)신고

■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2022년 신고서)

발주자 전자승인요청 | 저장 | 삭제 | 작성요령 | 새로고침 | 목록 | 개별출력

❶ 신고번호	G 2022 - 0002 G2B등 증명서 검색 ※ G2B·한국전력 증명서, 해건협 해외공사상황통보 조회 가능, 자료 없는 경우 직접입력		
❷ 공사명	"장기계속(차수계약)"공사 경우, 해당차수 기재(예, OO공사 1차)		
❸ 공사지역 상세주소	선택 주소검색 시군구명 : ※ 해외공사의 경우 신고서에 작성하되, 해외건설협회의 '기성실적증명서' 제출 생략가능(2016년 신고 개정사항)		
❹ 공종분류	신설 공종분류 :	❺ 도급종류	선택하세요.

❻ 발주자명	하도급공사는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자명 기입	❼ 발주자분류	분류 세분류
❽ 법인 등록번호	◉ 법인 ○ 개인 * 생일입력예시 : 181206	❾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비영리법인, 국가기관등은 고유번호증의 번호	* 실제발주자와 매출거래처가 상이한 경우, 관계소명자료 제출 및 증명서상 그밖에사항에 내용기재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입력예시 : 010-1234-5678
발주자 주소	주소검색		

❿ 발주자 추가 ※발주자는 +버튼 클릭하여 최대 2인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⓫ 경쟁유형	선택	⓬ 공동도급여부 ※총공사금액의 차지비중 기재	☐
⓭ 낙찰자결정방법	분류1 분류2 * 공공공사의 경우만 입력	⓮ 계약체결형태	선택
⓯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입력예시 : 202001 (2020년 01월)
⓰ 입찰공고일	※입찰공고일이 없는경우, 최초계약일 기재요망	⓱ 공고번호	
⓲ 인허가 기관	* 인허가 기관 있을시 입력	인허가 년월	※입력예시 : 202001 (2020년 01월)
⓳ 그밖의 사항(비고) ※공동,분담이행경우 상세기재			

⓴

㉮ 총공사금액(장기계속공사는 총부기금액)				백만원
이하 내용은 비건설·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 금액 제외 입력(공동도급인 경우, 자사분만 기입) (단, 공공공사 '21년 공고부터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 금액 포함 입력)				
건설부문	㉱ 당년도(이월)계약액 ① - ② : 자사분	백만원	㉲ 당년도 기성액 (외화공사는 수령액)	백만원
	㉯ 총계약액 ① : 자사분	백만원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외화공사는누계수령액) ②	백만원
	㉰ ※ 당년도 발주자 공급자재액 ('22'년도 도급설치분만 기재)	0 백만원	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 ('21'년도 까지의 도급설치분만 기재)	0 백만원

※ 공공공사 2020년 신규계약분 부터 수급인이 해당 발주자가 구입한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한 경우, 시평산정시에 50%가산(주의: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불가 / 하도급공사, 누락공사 가산불가)

(전문)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입력화면

공사실적관계서류(1차)신고 | 재무제표관계서류(2차)신고

(전문)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2022년 신고서)

저장 | 삭제 | 작성요령 | 새로고침 | 목록 | 개별출력

❶ 신고번호	S 2022 - 0314 G2B등 증명서 검색 ※ G2B·한국전력 증명서, 해건협 해외공사상황통보 조회 가능, 자료 없는 경우 직접입력				
❷ 공사명	"장기계속(차수계약)"공사 경우, 해당차수 기재(예, OO공사 1차)				
❸ 공사지역 상세주소	선택 주소검색 시군구명 : ※ 해외공사의 경우 신고서에 작성하되, 해외건설협회의 '기성실적증명서' 제출 생략가능(2016년 신고 개정사항)				
❹ 공사유형	신설	공종분류	공종분류 : 공종세분류(전문) 선택	❺ 도급종류	선택하세요.

❻ 발주자명	하도급공사는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자명 기입	❼ 발주자분류	분류 세분류 ※ 21년도 민간 발주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신고대상 아님
❽ 법인 등록번호	◉ 법인 ○ 개인 ※ 생일입력예시 : 181206	❾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실제발주자와 매출거래처가 상이한 경우, 관계소명자료 제출 및 증명서상 그밖에사항에 내용기재 ※ 비영리법인, 국가기관등은 고유번호증의 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입력예시 : 010-1234-5678
발주자 주소	주소검색		

❿ 발주자 추가 ※발주자는 +버튼 클릭하여 최대 2인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⓫ 경쟁유형	선택	⓬ 공동도급여부 ※총공사금액의 차지비중 기재	☐
⓭ 낙찰자결정방법	분류1 분류2 ※ 공공공사의 경우만 입력	⓮ 계약체결형태	선택
⓯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입력예시 : 202001 (2020년 01월)		
⓰ 입찰공고일	※입찰공고일이 없는경우, 최초계약일 기재요망	⓱ 공고번호	
⓲ 인허가 기관	※ 인허가 기관 있을시 입력	인허가 년월	※입력예시 : 202001 (2020년 01월)
⓳ 그밖의 사항(비고) ※공동,분담이행경우 상세기재			

⓴

㉮ 총공사금액(장기계속공사는 총부기금액)				천원
이하 내용은 비건설·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 금액 제외 입력(공동도급인 경우, 자사분만 기입) (단, 공공공사 '21년 공고부터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 금액 포함 입력)				
건설부문	㉱ 당년도(이월)계약액 ① - ② : 자사분	천원	㉲ 당년도 기성액 (외화공사는 수령액)	천원
	㉯ 총계약액 ① : 자사분	천원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외화공사는누계수령액) ②	천원
	㉰ ※ 당년도 발주자 공급자재액 ('22'년도 도급설치분만 기재)	0 천원	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 ('21'년도 까지의 도급설치분만 기재)	0 천원

※ 공공공사 2020년 신규계약분 부터 수급인이 해당 발주자가 구입한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한 경우, 시평산정시에 50%가산(주의: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불가 / 하도급공사, 누락공사 가산불가)

❶ 신고번호

- **신고번호의 구성 :**

종합, 전문 여부		신고년도		일련번호
종합(G)/전문(S)	—	2022	—	0001

- **유형별 신고번호 입력방법**

구 분			내용	신고번호 입력방법(예시) 신고년도		일련번호
신 규 공 사 (2022년도 신규로 도급계약한 공사)			• 공공공사 → 민간공사 순으로 입력 바람	2022	—	0001
이 월 공 사 (전년도 이전에서 2022년으로 계속되는 공사)			• 전년도 **이전 신고번호 그대로 사용**	2021	—	0002
장기계속공사 (차수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공사)			• 전차공사 신고번호와 상관없이 **새로 번호 부여**	2022	—	0001
누락공사	과거에 해당공사를 **신고한 적이 없다면**	**2021년** 기성신고인 경우	• **2022년 신고번호**를 사용하되 **일련번호 "천의 자리"를 9로 수정**	2022	—	9001
		2020년 기성신고인 경우	• **2022년 신고번호**를 사용하되 **일련번호 "천의 자리"를 8로 수정**	2022	—	8001
	과거에 해당공사를 **신고한 적이 있다면**	**2021년** 기성신고인 경우	• **종전 신고번호**를 사용하되 **일련번호 "천의 자리"를 9로 수정**	2021	—	9003
		2020년 기성신고인 경우	• **종전 신고번호**를 사용하되 **일련번호 "천의 자리"를 8로 수정**	2020	—	8004
		2019년 최초신고, 2021년 기성신고인 경우	• **종전 신고번호**를 사용하되 **일련번호 "천의 자리"를 9로 수정**	2019	—	9005

- **합볍 양수한 업체**의 신고번호 입력방법

내용	신고번호 입력방법(예시)		
• 22년 합병·양수한 경우 종전법인(피합병 등)이 신고한 신고번호를 사용하되 일련번호 "천의 자리"를 **1**로 **수정**	2021	—	1001

- **신고번호 수정방법** :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 목록이 보이는 화면에서 직접 신고번호 변경한 다음 상단 신고번호 수정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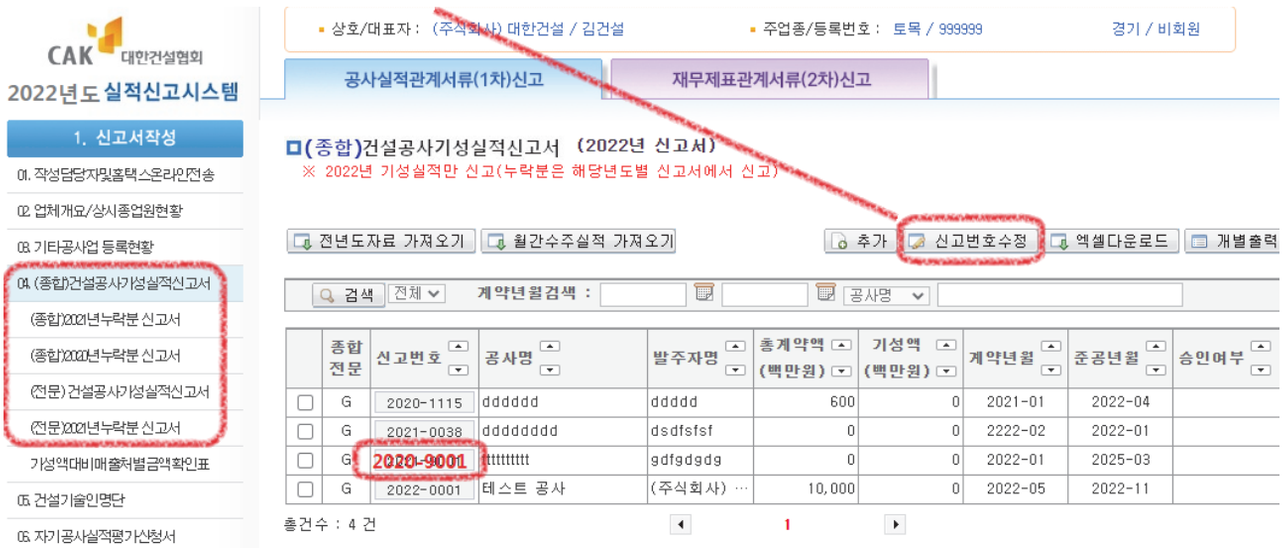

❷ 공사명 : 계약서상의 공사명 그대로 입력

❸ 공사지역 상세주소

-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직접 입력(우편번호는 가장 근접한 지역 우편번호 기재)
- 2개 이상 지역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된 주소 입력

❹ 공종분류 : 공종분류/세분류 해설(158쪽) 참조

※ 공종세분류 코드는 주요 공종별 실적 및 조달청 PQ 동일실적평가 등의 기준

- 전문공사는 전문공종까지 입력하여야 함

❺ 도급종류 :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자기공사 중 선택

※ 하도급공사의 경우 원도급자 정보 추가 입력

※ 자기공사를 선택한 경우 반드시 '06, 자기공사실적평가신청서' 메뉴 추가 입력

❻ 발주자명

- ❺ 도급종류에서 하도급을 선택한 경우 원도급자명이 아닌 발주자명을 입력
- 조달청에서 입찰을 대행한 경우 조달청이 아닌 실수요기관명을 입력

❼ **발주자 분류** : 132쪽의 발주자 해설 참조하여 입력

❽ **법인등록번호** : 민간공사의 경우 반드시 입력

※ 개인사업자 및 개인(자연인)은 개인 선택후 생년월일 입력

❾ **사업자등록번호** : 매출이 발생된 발주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법인은 고유번호증의 고유번호 기재

❿ **발주자 추가** : 발주자가 2인인 경우 클릭하여 입력

※ 증명서 출력물 비고에 ■공동발주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으로 표시됨

※ 발주자가 3인 이상인 경우 비고에 위 형식대로 추가 기재 바람

⓫ **경쟁유형**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중 택일

※ 민간공사로서 경쟁하지 않고 도급받은 경우 수의계약 선택

⓬ **공동도급 여부 및 지분율** : 공동도급의 경우 자사의 지분율 입력

⓭ **낙찰자결정방법**(공공공사만 입력) : 분류1과 분류2를 입력

【분류1】

분류	구분	해설
1	적격심사낙찰제 공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최저가낙찰대상공사 제외)
2	최저가낙찰제 공사	추정가격 3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턴키·대안공사 제외)
3	기타 공사 (수의계약공사 등)	적격심사낙찰제공사, 최저가낙찰제공사, 종합심사낙찰제공사, 종합평가낙찰제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공공공사
4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국가계약법 대상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원('19.12.18 부터는 100억) 이상인 공사 중 공사수행 능력점수, 가격점수,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공사
5	종합평가낙찰제 공사	지방계약법 대상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가격점수, 기술이행능력점수,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공사

【분류2】

분류	구분	해설
1	일반공사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공사
2	P-Q대상공사	종합심사낙찰제공사, 최저가낙찰제공사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중 18개 공종을 대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적격자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3	대안입찰공사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의 제출이 허용되는 공사
4	설계시공일괄 입찰공사	입찰자가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사
5	기술제안입찰 공사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기본 or 실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6	적격심사대상 공사	종합평가낙찰제공사에서 종합평가 이전에 이행능력평가를 통해 적격심사 통과자 선정

⑭ 계약체결형태

구 분	장기계속공사	계속비공사	그외 공사 (단년도공사)
공사기간	2개년에 걸쳐 지속되는 공사		1개년에 마치는 공사
총예산 확보	미확보	확보	
계약 체결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차수 계약체결(총공사금액부기)	총공사금액으로 계약	

※ 입찰공고문/계약서 내용 확인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의

⑮ 계약·착공·준공연월

-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최초 계약연월 입력

- 착공·준공연월이 변경된 경우 : 실제 착공·준공연월 입력

※ 공고되지 않은 공사는 입찰공고일에 (최초)계약일 입력

⑯ 입찰공고일 : 입찰공고일이 없는 경우 최초계약일 입력

⑰ 공고번호 : 입찰공고번호 입력

⑱ 인·허가기관 및 인·허가연월

※ 인·허가 받지 않은 경우 생략

⑲ 비고

- 발주자가 다수인 경우 : 모든 발주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발주자 추가한 경우 해당발주자는 자동표기됨. 세번째 발주자부터 직접 입력
  ※ 입증서류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업로드
- 공사규모, 공법, 공동도급지분율 등 입력
  ※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이 혼재된 경우 "비고"란에 상세기재
- 발주자 (세금)계산서 발행 주민번호 ↔ 사업자번호가 변경된 경우 기재
  예시) 2022.8월 사업자 123-45-67890 → 주민번호 890123-4567890 변경

⑳ 공사별 금액 입력방법

<table>
<tr><th>구 분</th><th>내용 및 입력방법</th></tr>
<tr><td>㉮ 총공사금액</td><td>- 건설부문과 비건설부문이 모두 포함된 계약서상의 계약총액
<table>
<tr><td>공동도급</td><td>자사분이 아닌 공동도급사 전체분</td></tr>
<tr><td>장기계속공사</td><td>차수분이 아닌 전체금액(부기금액)</td></tr>
<tr><td>자기공사</td><td>착공부터 준공까지 예상되는 전체공사비</td></tr>
</table></td></tr>
<tr><td>㉯ 총 계 약 액</td><td>- 비건설부문을 제외한 건설부문의 당해차수 자사분 계약액
<table>
<tr><td>공동도급</td><td>자사분</td></tr>
<tr><td>장기계속공사</td><td>차수분</td></tr>
<tr><td>자기공사</td><td>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 준 금액 제외
'내역총괄표상' 총공사비</td></tr>
</table></td></tr>
<tr><td>㉰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td><td>- 2021년까지의 인정기성 누계액
※ 2022년도 신규공사는 0</td></tr>
<tr><td>㉱ 당년도계약액
(이월계약액)</td><td>⇒ 총계약액(㉯)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 2022년도 신규계약의 경우 : 총계약액(㉯)과 같음
- 2021년도 이전년도에서 2022년도로 이월된 공사
<table>
<tr><td>자기공사</td><td>당년도 기성액(㉱)과 동일하게 입력</td></tr>
</table></td></tr>
</table>

㉲ 당년도기성액	- 당년도에 시공한 기성액으로 발주자가 기성부분으로 확인한 금액 ※ 대금수령 여부와는 무관 자기공사: 당년도에 시공한 기성액 주한 UN군 등 공사: 기성액으로 수령한 금액(원화환산)
㉳ 당년도발주자 공급자재액	- 공공공사로서 해당연도에 발주자가 공급한 자재가 있는 경우만 입력 ※ 계약금액 및 기성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누락공사, 하도급공사, '20.1.1 이전계약분 입력 금지 ※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 **종합**공사는 **백만원**단위, **전문**공사는 **천원단위**로 입력, 단위미만 절사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구 분	입력방법	예 시
공 사 명	변경된 공사명 입력 (당초 공사명 입력)	K-빌딩 신축공사 (한국빌딩 신축공사)
계 약 금	최종 변경된 계약액 입력	
공사기간	최초 계약연월 입력 실제 (예정)착공연월 입력 실제 (예정)준공연월 입력	
발 주 자	변경된 발주자 입력 (당초 발주자 입력)	㈜K실업 (변경전 : ㈜한국)

04-1 기성실적증명서 작성하기

작성시 유의사항

○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는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입력하면 출력 가능

※ 증명서 서식(서식모음)을 다운로드받아 직접 작성도 가능

직접 작성하는 경우 (예시)

- 구성원 2인 이상의 기성실적을 1장의 증명서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 · **공동수급체**의 경우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등
  - · **원하도급자 관계인 경우**
- (비건설부문이 포함된 경우) 건설부문과 비건설부문을 구분하여 증명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구 분	유의사항
금 액	- 단 위 : **백만원**(VAT 포함, 단위미만 절사) ※ 단, 전문공사는 천원 단위 ※ 면세/영세율 적용공사는 부가세 가산하지 않음 - 관급자재 : 발주가 공급한 자재는 계약액 및 기성액에서 제외 ※ 2020.1.1.이후 최초계약한 공사(하도급공사/누락공사 신고대상 제외)
공 종	- 기성실적신고서와 증명서의 공종은 반드시 일치
발 주 자 정 보	-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계 약 일 공사기간	-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로 신고하고 증명서도 차수별로 작성·제출 - 준공일이 2021.12.31. 이전인 경우 '22년 실적으로 인정불가 ※ 2021, 2020년 실적을 신고누락한 경우 : 누락분으로 신고

유형별 증명서 작성방법(예시)

【가. 계약·공사 시점별 작성방법】

계약일	준공일	기성 여부	참조 위치
당년도	당년도 후	×	① 40쪽
당년도	당년도	○	② 41쪽
당년도	당년도 후	○	③ 42쪽
당년도 전	당년도	○	④ 43쪽

※ 상기 사례는 전산 입력 후 출력된 증명서에 발주자의 확인받아 제출
※ 계약상의 착공 · 준공일과 다른 경우, 실제(예정) 착공 · 준공일 기재

【나.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이행방식		참조 위치
공동도급	공 동 이 행 방 식	⑤ 44쪽
	주계약자관리방식	⑥ 45쪽

※ 상기 경우는 '서식모음'에서 증명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

【다. 기타의 경우】

구 분	설 명	참조 위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건설용역 등 비건설부문이 포함된 경우		⑦ 46쪽
외화로 대금을 수령한 공사	주한 외군국 공사인 경우	⑧-1 47쪽
	해외건설공사인 경우	⑧-2 48쪽
신고누락한 공사	2021년 또는 2020년 기성실적신고를 누락한 건설공사	⑨-1 49쪽
	신고누락한 공사가 여러 해에 걸쳐 있는 경우	⑨-2 50쪽

※ 상기 사례는 '서식모음'에서 증명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

【라.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에서 전문공사를 수주한 경우】

설 명	참조 위치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된 공사에서 전문공사를 수주한 경우	⑩ 51쪽

※ 2021. 1. 1이후 입찰공고된 공공공사, 2022.1.1.이후 입찰공고(도급계약)된 민간공사에 한함

【가. 계약·공사 시점별 작성 예】

① 당년도에 계약만 체결한 공사

2022년 12월 15일 ○○지방도로공사에 대하여 30억원의 도급계약만 체결하고 기성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명서 중 공사내역 부분만 발췌〕

공사내역

공사명	○○ 지방도로공사	㉮ 총공사금액 3,000 백만원
현장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인리 ~ 금광면 죽장리	
공사유형 신 설	주력분야	① 공사종류 : 토목 ② 세부공사종류(종합) 일반도로 ③ 세부공사종류(전문)
		인·허가 기관
		인·허가 연월일

종합·전문 구분	신고번호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예정)연월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 총계약금액	㉱ 당년도 기성액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전년도까지 누계 관급자재액
G	2022-0001	2022.12.	2023.01.	2023.09	3,000,000	3,000,000	0			

그 밖의 사항 (공사의 규모·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 기성액이 "0"인 경우 발주자의 확인 불필요

구 분		내 용
㉮	총공사금액	계약서상의 금액(건설부문 + 비건설부문)
㉯	총계약금액	㉮ - 비건설부문 금액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와 같음 (이월금액의 경우 : ㉯ - ㉲)
㉱	당년도 기성액	2022년 기성액 : 0 백만원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2021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 0 백만원

※ ㉯ ~ ㉲ : 공동도급의 경우 자사분,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분을 의미

② 당년도에 계약체결 및 준공된 공사

2022년 2월 1일 ○○지방도로공사에 대하여 30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월 2일 착공하여 2022년 11월 15일 준공한 경우

〔증명서 중 공사내역 부분만 발췌〕

공사내역

공사명	○○ 지방도로공사	㉮ 총공사금액 3,000 백만원
현장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인리 ~ 금광면 죽장리	
공사유형 신 설	주력분야 ① 공사종류 : 토목 ② 세부공사종류(종합) 일반도로 ③ 세부공사종류(전문)	인·허가 기관 인·허가 연월일

종합·전문 구분	신고 번호	계약 연월	착공 연월	준공(예정) 연월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 총계약금액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 관급자재액

종합·전문 구분	신고 번호	계약 연월	착공 연월	준공(예정) 연월	㉰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G	2022-0002	2022.02.	2022.03.	2022.11				3	0	0	0				3	0	0	0							0
								3	0	0	0							0							.

그 밖의 사항 (공사의 규모·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구 분		내 용
㉮	총공사금액	계약서상의 금액(건설부문 + 비건설부문)
㉯	총계약금액	㉮ - 비건설부문 금액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와 같음 (이월금액의 경우 : ㉯ - ㉲)
㉱	당년도 기성액	2022년 기성액 : 3,000 백만원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2021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 0 백만원

※ ㉯ ~ ㉲ : 공동도급의 경우 자사분,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분을 의미

③ 당년도에 계약체결하고 준공되지 못한 경우(미준공)

2022년 2월 1일 ○○지방도로공사에 대하여 30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월 2일 착공하여 당년도에 기성이 10억원 발생한 경우

〔증명서 중 공사내역 부분만 발췌〕

공사내역

공사명	○○ 지방도로공사	㉮ 총공사금액	3,000 백만원
현장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인리 ~ 금광면 죽장리		
공사유형 신 설	주력분야	① 공사종류 : 토목 ② 세부공사종류(종합) 일반도로 ③ 세부공사종류(전문)	인·허가 기관 인·허가 연월일

종합·전문 구분	신고번호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예정)연월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 총계약금액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 관급자재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G	2022-0003	2022.02.	2022.03.	2023.11				3	0	0	0				1	0	0	0							0
								3	0	0	0							0							.
그 밖의 사항 (공사의 규모·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구 분		내 용
㉮	총공사금액	계약서상의 금액(건설부문 + 비건설부문)
㉯	총계약금액	㉮ - 비건설부문 금액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와 같음 (이월금액의 경우 : ㉯ - ㉲)
㉱	당년도 기성액	2022년 기성액 : 1,000 백만원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2021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 0 백만원

※ ㉯ ~ ㉲ : 공동도급의 경우 자사분,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분을 의미

④ 당년도 전에 계약체결하고 당년도로 이월되어 준공된 경우(이월공사)

2021년 2월 1일 ○○지방도로공사에 대하여 30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월 2일 착공하여 2022년 11월 15일 준공한 경우

※ 2021년 기성액은 10억

〔증명서 중 공사내역 부분만 발췌〕

공사내역

공사명	○○ 지방도로공사	㉮ 총공사금액	3,000 백만원
현장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인리 ~ 금광면 죽장리		
공사유형 신 설	주력분야	① 공사종류 : 토목 ② 세부공사종류(종합) 일반도로 ③ 세부공사종류(전문)	인·허가 기관 인·허가 연월일

종합·전문 구분	신고번호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예정)연월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 총계약금액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 관급자재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G	2021-0008	2021.02.	2021.03.	2022.11				2	0	0	0				2	0	0	0							0
								3	0	0	0				1	0	0	0							.
그 밖의 사항 (공사의 규모·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구 분		내 용
㉮	총공사금액	계약서상의 금액(건설부문 + 비건설부문)
㉯	총계약금액	㉮ - 비건설부문 금액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와 같음 (이월금액의 경우 : ㉯ - ㉲)
㉱	당년도 기성액	2022년 기성액 : 2,000 백만원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2021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 1,000 백만원

※ ㉯ ~ ㉲ : 공동도급의 경우 자사분,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분을 의미

【나. 공동도급의 경우 작성 예】

⑤ 1장의 증명서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성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2022년 2월 1일 ○○지방도로공사에 대하여 300억원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월 2일 착공하여 2022년 10월 10일 준공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인, 지분이 각각 50%, 30%, 20%인 경우

〔증명서 중 공사내역 부분만 발췌〕

공사내역

공사명	○○ 지방도로공사	㉮ 총공사금액	30,000 백만원
현장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인리 ~ 금광면 죽장리		
공사유형 신 설	주력분야	① 공사종류 : 토목 ② 세부공사종류(종합) 일반도로 ③ 세부공사종류(전문)	인·허가 기관 인·허가 연월일

종합·전문 구분	신고번호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예정)연월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 총계약금액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 관급자재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G	2022-0004	2022.02.	2022.03.	2022.10			3	0	0	0	0			3	0	0	0	0							0
							3	0	0	0	0			3	0	0	0	0							0
○○토건㈜							1	5	0	0	0			1	5	0	0	0							0
							1	5	0	0	0							0							0
△△건설㈜								9	0	0	0				9	0	0	0							0
								9	0	0	0							0							0
☆☆건설㈜								6	0	0	0				6	0	0	0							0
								6	0	0	0							0							0
그 밖의 사항 (공사의 규모·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 - ○○토건㈜ : 대표자, 지분율 50% - △△건설㈜ : 구성원1, 지분율 30% - ☆☆건설㈜ : 구성원2, 지분율 20%																						

구 분		내 용
㉮	총공사금액	계약서상의 금액(건설부문 + 비건설부문)
㉯	총계약금액	㉮ - 비건설부문 금액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와 같음 (이월금액의 경우 : ㉯ - ㉲)
㉱	당년도 기성액	2022년 기성액 : 1,500 백만원 (대표사 기준)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2021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 0 백만원 (대표사 기준)

※ 빨간색 네모상자부문 : 자사분을 기준으로 작성,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분을 의미

⑥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2022년 2월 1일 ○○지방도로공사에 대하여 30억원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월 2일 착공하여 2022년 11월 10일 준공한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인(주계약자, 종합부계약자, 전문부계약자), 지분은 각각 50%, 30%, 20%인 경우

〔증명서 중 공사내역 부분만 발췌〕

공사내역

공사명	○○ 지방도로공사	㉮ 총공사금액	3,000 백만원
현장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인리 ~ 금광면 죽장리		
공사유형 신 설	주력분야	① 공사종류 : 토목 ② 세부공사종류(종합) 일반도로 ③ 세부공사종류(전문)	인·허가 기관 인·허가 연월일

종합·전문 구분	신고번호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예정)연월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 총계약금액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 관급자재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G	2022-0005	2022.02.	2022.03.	2022.11				3	0	0	0				3	0	0	0							0
								3	0	0	0				3	0	0	0							0
○○토건㈜								2	5	5	0				2	5	5	0							0
								2	5	5	0							0							0
△△건설㈜									9	0	0					9	0	0							0
									9	0	0							0							0
☆☆토공㈜									6	0	0					6	0	0							0
									6	0	0							0							0

그 밖의 사항 (공사의 규모·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공동수급체(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 - ○○토건㈜ : 주계약자 지분율 50% - △△건설㈜ : 구성원1(종합), 지분율 30% - ☆☆토공㈜ : 구성원2(전문), 지분율 20%

구 분		내 용
㉮	총공사금액	계약서상의 금액(건설부문 + 비건설부문)
㉯	총계약금액	(㉮ - 비건설부문 금액)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와 같음 (이월금액의 경우 : ㉯ - ㉲)
㉱	당년도 기성액	2022년 기성액 : 2,550 백만원 (주계약자 기준)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2021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 0 백만원 (주계약자 기준)

㉯ ~ ㉲ : 주계약자의 금액은 종합부계약자의 금액 50%, 전문부계약자의 금액 100%를 더해줍니다.

[주계약자 기성액(2550) = 1,500(자사분) + 450(종합 부계약자의 50%) + 600(전문 부계약자의 100%)

【다. 기타의 경우 작성 예】

⑦ 비건설부문이 포함된 공사

2022년 2월 1일 ○○다세대주택을 20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1월 15일 준공한 경우(단, 전기부문(공사금액 1%)이 포함)

〔증명서 중 공사내역 부분만 발췌〕

공사내역

공사명	○○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총공사금액	2,000 백만원
현장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공사유형 신 설	주력분야	① 공사종류 : 건축 ② 세부공사종류(종합)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③ 세부공사종류(전문)	인·허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인·허가 연월일 2021. 12. 10

종합·전문 구분	신고번호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예정)연월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 총계약금액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 관급자재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G	2022-0006	2022.02.	2022.03.	2022.11				2	0	0	0				2	0	0	0							0
								2	0	0	0							0							0
건축분								1	9	8	0				1	9	8	0							0.
								1	9	8	0							0							0
전기분										2	0						2	0							0
										2	0							0							0
그 밖의 사항 (공사의 규모·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구 분		내 용
㉮	총공사금액	계약서상의 금액(건설부문 + 비건설부문)
㉯	총계약금액	(㉮ - 비건설부문 금액)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와 같음 (이월금액의 경우 : ㉯ - ㉲)
㉱	당년도 기성액	2022년 기성액 : 1,980 백만원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2021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 0 백만원

※ 빨간색 네모상자부문은 위의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⑧ - 1 주한 외국군 공사인 경우

당해 연도에 주한미군과 건설공사계약을 $135,000로 체결·준공한 경우 (기성금은 130,000달러(미화)와 6백만원(원화)으로 각각 수령)

※ 2022년 12월 31일 환율을 1,200(원/$)라고 가정

〔증명서 중 공사내역 부분만 발췌〕

공사내역

공사명	미○○군 ○○공사	㉮ 총공사금액	162백만원
현장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		
공사유형	신 설	주력분야	① 공사종류 : 건축 ② 세부공사종류(종합) 기타건축시설 ③ 세부공사종류(전문)
인·허가 기관			
인·허가 연월일			

종합·전문 구분	신고번호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예정)연월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 총계약금액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 관급자재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G	2022-0007	2022.09	2022.10	2022.12					1	6	2					1	6	2							0
									1	6	2							0							0

그 밖의 사항 (공사의 규모·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원화 수령액 : 6백만원 미화 수령액 : 156백만원(= 130,000달러X1200원)

구 분		내 용
㉮	총공사금액	계약서상의 금액(건설부문 + 비건설부문)
㉯	총계약금액	(㉮ - 비건설부문 금액)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와 같음 (이월금액의 경우 : ㉯ - ㉲)
㉱	당년도 기성액	2022년 기성액 : 162 백만원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2021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 0 백만원

※ 외화로 수령한 경우 12월 31일 기준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

⑧ - 2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연도 해외에서 $5,000,000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1,000,000 기성이 발생한 경우

※ 2022년 12월 31일 환율을 1,200(원/$)라고 가정

〔신고 화면 예시〕

공사명	크로스아일랜드 라인 CR112 지하철공사	㉮ 총공사금액	6,000백만원
현장 소재지	싱가포르 XXXXXXXXXXXXXXX		

공사유형	주력분야		
신 설		① 공사종류 : 토목 ② 세부공사종류(종합) 지하철 ③ 세부공사종류(전문)	인·허가 기관 인·허가 연월일

종합·전문 구분	신고번호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예정)연월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 총계약금액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 관급자재액

종합·전문 구분	신고번호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예정)연월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 총계약금액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 관급자재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S	2022-0008	2022.09	2022.10	2023.12				6	0	0	0				1	2	0	0							0
								6	0	0	0							0							0

그 밖의 사항 (공사의 규모·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미화 수령액 : 1,200백만원(=1,000,000달러 X 1,200원)

※ 해외기성 평가시 환율은 직전년도 12월 31일자 기준 적용 (협회 홈페이지등 게재 참고)

○ **신규 신고분**('23.2월부터, 신고번호 2022-xxxx)

-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한 해외공사상황통보※ 자료를 조회하여 관련 정보를 불러오고, 공란(기성액 등)은 추가 입력

※ 협회실적신고사이트(esingo.cak.or.kr)> 신고서 작성> 04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 > 신고번호 우측 G2B등 증명서 검색 ※ G2B, 한국전력, 해건협 자료 조회)

☞ 해건협 '해외공사 상황통보'에 신고한 공사명, 발주자명 일치 신고 요망

○ **종전 신고분**('22.2월까지 신고분, 신고번호~2021-xxxx, 기성유무 무관)

- 종전 신고건의 신고번호, 공사명, 발주자명을 가능한한 수정없이 신고

※ 해외건설공사의 당년도기성액 신고기준 구분

구분	22.2월이후 신고한 공사	21.2월이전 신고한 공사(기성유무 무관)
해당신고번호	2021-xxxx, 2022-xxxx	2019-xxxx, 2020-xxxx
당년도기성액 신고기준	해건협에서 통보한 **기성액** 기준	해건협에서 통보한 **수령액** 기준

⑨-1 신고누락한 공사

2020년도의 실적 중 일부금액(10백만원)을 신고누락하여 당해 연도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총공사금액 2억원, 2020년 신고한 기성액190백만원 이라고 가정

〔증명서 중 공사내역 부분만 발췌〕

공사내역

공사명	○○ 지방도로공사	㉮ 총공사금액	200백만원
현장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공사유형 신 설	주력분야 ① 공사종류 : 토목 ② 세부공사종류(종합) 일반도로 ③ 세부공사종류(전문)	인·허가 기관 / 인·허가 연월일	

종합·전문 구분	신고번호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예정)연월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 총계약금액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 관급자재액

종합·전문 구분	신고번호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예정)연월	㉰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G	2020-8001	2020.01.	2020.2.	2020.11						1	0						1	0							0
									2	0	0					1	9	0							0

그 밖의 사항 (공사의 규모·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2020년도 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성이 발생한 해당년도와 일치하는 누락신고번호 및 기성년도 기재

구 분		내 용
㉮	총공사금액	계약서상의 금액(건설부문 + 비건설부문)
㉯	총계약금액	(㉮ - 비건설부문 금액)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와 같음 (이월금액의 경우 : ㉯ - ㉲)
㉱	당년도 기성액	2022년 기성액 : 10 백만원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2021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 190 백만원

⑨-2 신고누락한 공사가 여러 해에 걸쳐 있는 경우

2019년도에 계약(100백만원)한 공사로 2019년도 기성신고(40백만원, 신고번호 G-2019-**0009**)했으나, ① 2020년도 누락기성(20백만원)과 ② 2021년도 누락기성(30백만원) 및 ③ 2022년 기성신고(10백만원)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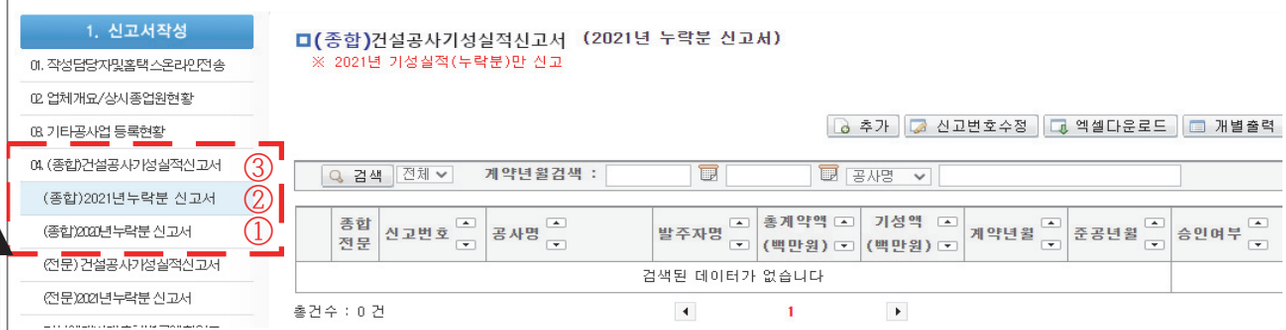

① 2020년도 누락기성(20백만원) : 〔2020년 누락분 신고〕를 클릭하여 입력 저장

종합·전문 구분	신고번호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예정)연월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총계약금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 관급자재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G	2019-8009	2019.02.	2019.03.	2022.11						6	0						2	0							0
									1	0	0						4	0							.

② 2021년도 누락기성(30백만원) : 〔2021년 누락분 신고〕를 클릭하여 입력 저장

종합·전문 구분	신고번호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예정)연월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총계약금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 관급자재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G	2019-9009	2019.02.	2019.03.	2022.11						4	0						3	0							0
									1	0	0						6	0							.

③ 2022년도 당년도 기성(10백만원) : 〔(종합)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를 클릭하여 입력 저장

종합·전문 구분	신고번호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예정)연월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총계약금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 관급자재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G	2019-0009	2019.02.	2019.03.	2022.11						1	0						1	0							0
									1	0	0						9	0							.

⑩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에서 전문공사를 수주한 경우

○○군에서 입찰공고(2022년 1월 15일)한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를 5억원에 계약 체결하고 같은해 5월 1일 준공한 경우

※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로 주된공사는 포장공사업

〔증명서 중 공사내역 부분만 발췌〕

공사내역

공사명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 총공사금액 500,000천원
현장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	
공사유형 신 설	주력분야 ① 공사종류 : 토목 ② 세부공사종류(종합) 일반도로 ③ 세부공사종류(전문) 일반포장공사	인·허가 기관 인·허가 연월일

종합·전문 구분	신고번호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예정)연월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 총계약금액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 관급자재액

종합·전문 구분	신고번호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예정)연월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 총계약금액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 관급자재액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S	2022-0001	2022.02.	2022.2.	2022.5		5	0	0	0	0	0		5	0	0	0	0	0		5	0	0	0	0	0
						5	0	0	0	0	0							0							0
그 밖의 사항 (공사의 규모·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구 분		내 용
㉮	총공사금액	계약서상의 금액(건설부문 + 비건설부문)
㉯	총계약금액	(㉮ - 비건설부문 금액)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와 같음 (이월금액의 경우 : ㉯ - ㉲)
㉱	당년도 기성액	2022년 기성액 : 500,000 천원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2021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 0 천원

※ 금액 단위 : 천원

- 주력분야 : 기재하지 않음
- ①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중 해당공종 택일
- ② 세부공사종류(종합) : 종합공종 세분류를 입력함
- ③ 세부공사종류(전문) : 전문공종 세분류를 입력함

04-2 기성실적증명서 전자문서 전송하기

주의사항

- 나라장터(G2B)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전자전송한 경우
- 대한건설협회 발주자 기성실적 전자승인시스템(order.cak.or.kr)을 통해 발주자가 전자승인한 경우
- 한국전력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건설협회 공사실적증명 신청서"를 온라인 전송(발급)한 경우

⇨ 출력물(종이 증명서) 제출 생략

가. 나라장터(G2B) 실적증명 온라인시스템 이용하기

(1) 실적증명요청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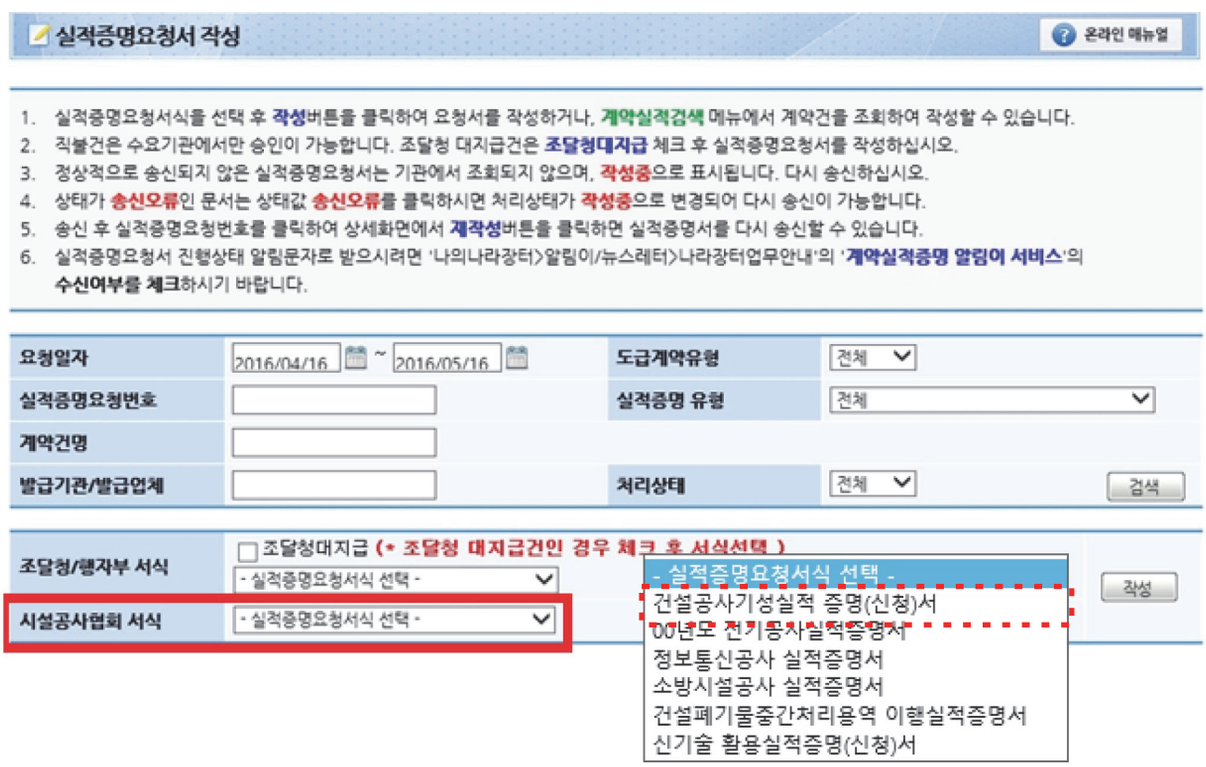

❶ **시설공사협회 서식** 선택

※ 조달청/행자부 서식(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요청서)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❷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신청)서** 선택, 작성

(2) 발주자로부터 실적증명(신청)서 승인받기

- 발주자에게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 실적증명요청서 처리" 요청

(3) "나라장터 증명서" 전자전송하기

- G2B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출력 및 전자문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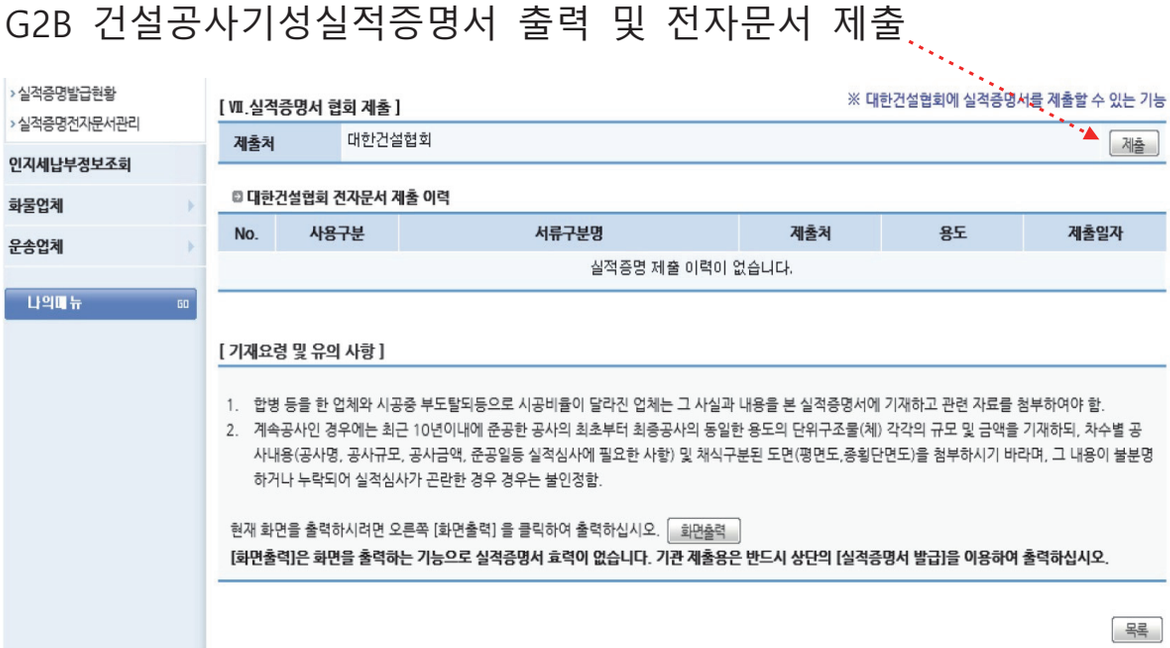

※ 반드시 협회 실적신고시스템에서 가져오기 해야 함(다음 쪽 참조)

(4) 협회 실적신고시스템에서 전자 제출 자료 가져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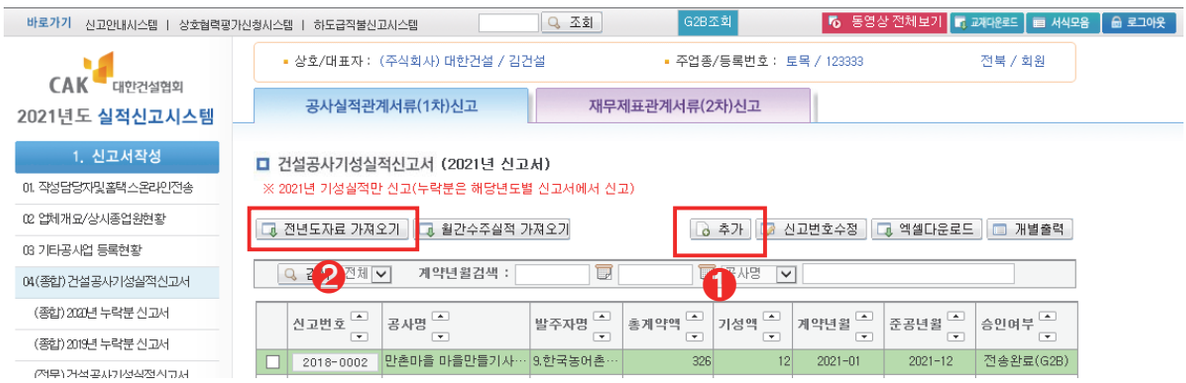

- **신규 신고공사인 경우** : ❶ 추가 클릭 ⇒ G2B등 증명서 검색 클릭
  ⇒ 해당 건 클릭, 저장 ⇒ 자동완성되지 않은 항목 추가입력, 저장

- **이월 공사인 경우** : ❷ 전년도자료 가져오기 클릭 ⇒ 해당 건 클릭
  ⇒ G2B등 증명서 검색 클릭 ⇒ 해당 건 클릭, 저장(연계항목 덮어씀)
  ⇒ 자동완성되지 않은 항목 추가입력, 저장

나. 발주자 기성실적 전자승인시스템 이용하기

■ 개요

- 발주자가 기성실적증명서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전자서명***하는 시스템

  * **전자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말함

■ 활용대상

-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공공/민간 발주자 모두 가능

- 다만, 나라장터, 국가·지자체,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일부 사기업 등은 각각 자체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확인받을 것

-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경우 출력물(종이 증명서) 제출 생략

■ 비용 : 없음

■ 이용방법

ㅇ 건설사업자는 http://esingo.cak.or.kr로 신청

ㅇ 발주자는 http://order.cak.or.kr에서 전자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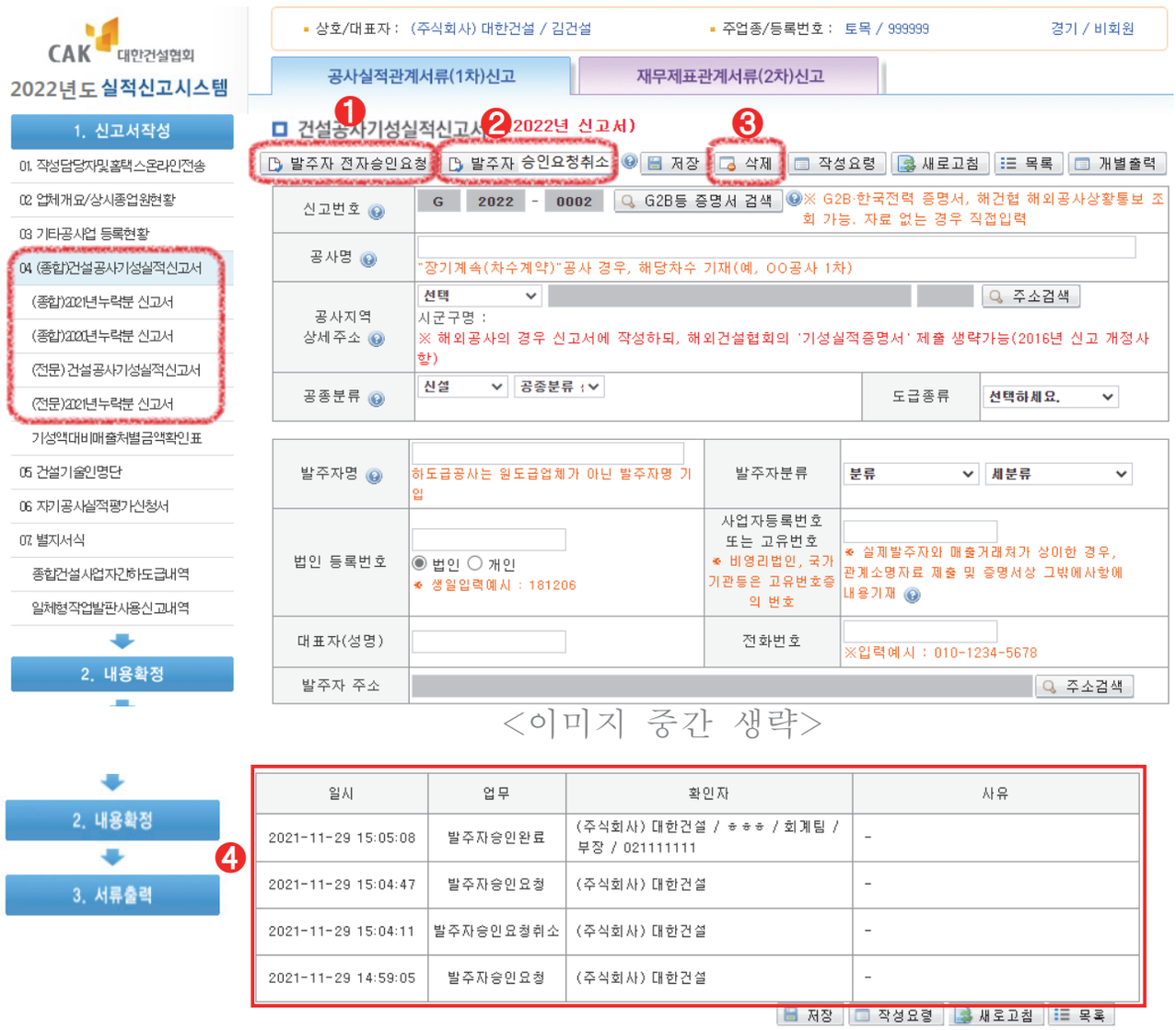

❶ 발주자승인 요청 클릭

-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에게 http://order.cak.or.kr로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승인하여 줄 것을 별도로 요청

❷ 승인요청 취소 : 발주자가 전자승인하기 전까지 취소 가능

❸ 삭제 : 발주자가 전자승인한 경우 삭제 불가

❹ 발주자 승인요청 정보 조회

다. 한국전력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기

1.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요청서 작성하기

❶입찰계약 ⇨ ❷실적증명 ⇨ ❸공사용역실적증명 ⇨ ❹건설공사협회(전자) 선택

⇨ 건설협회 공사실적증명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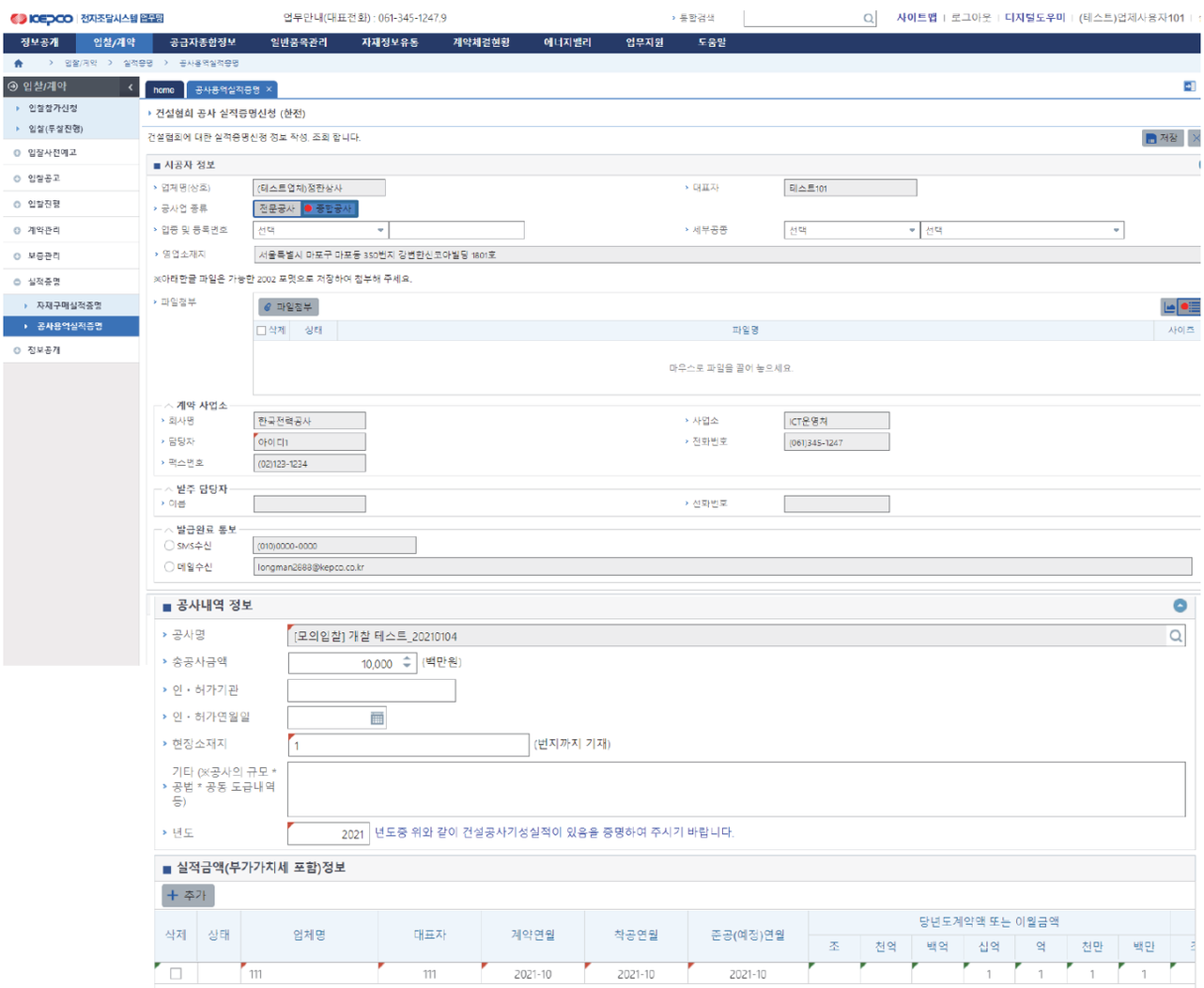

2.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출력 및 전자문서 제출하기

ㅇ 실적증명서 인쇄 : 업체에서 승인받은 실적증명서를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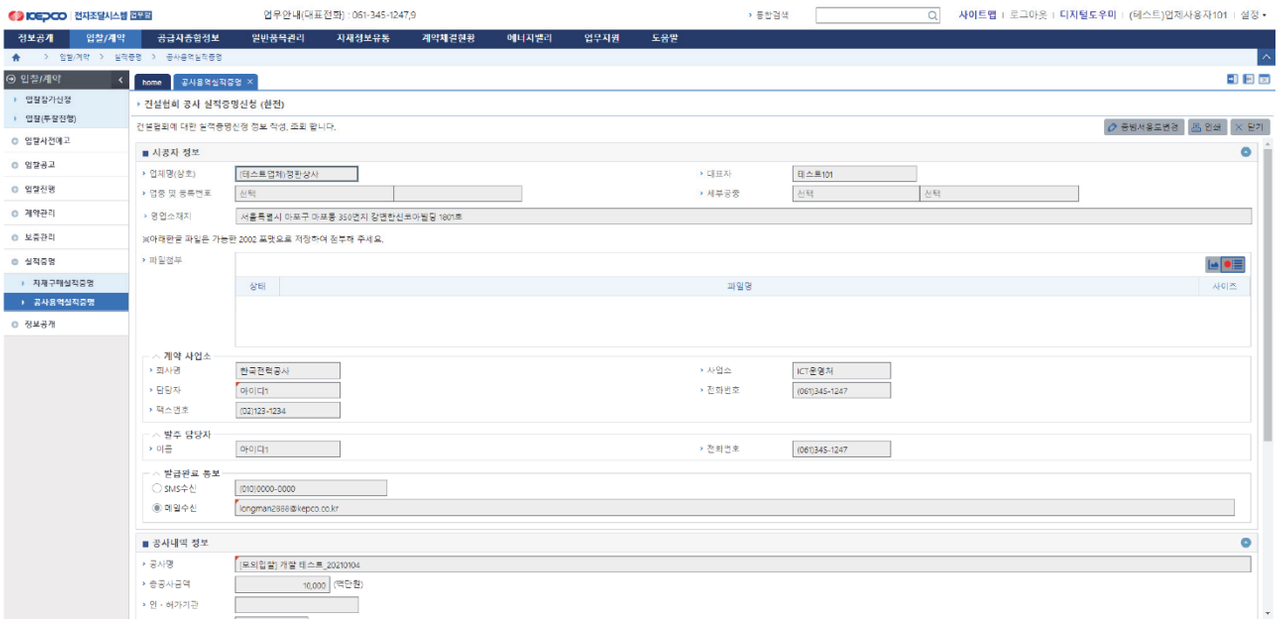

ㅇ 실적증명서 협회 제출 : 실적증명 목록에서 전송버튼 클릭하면 협회로 발급정보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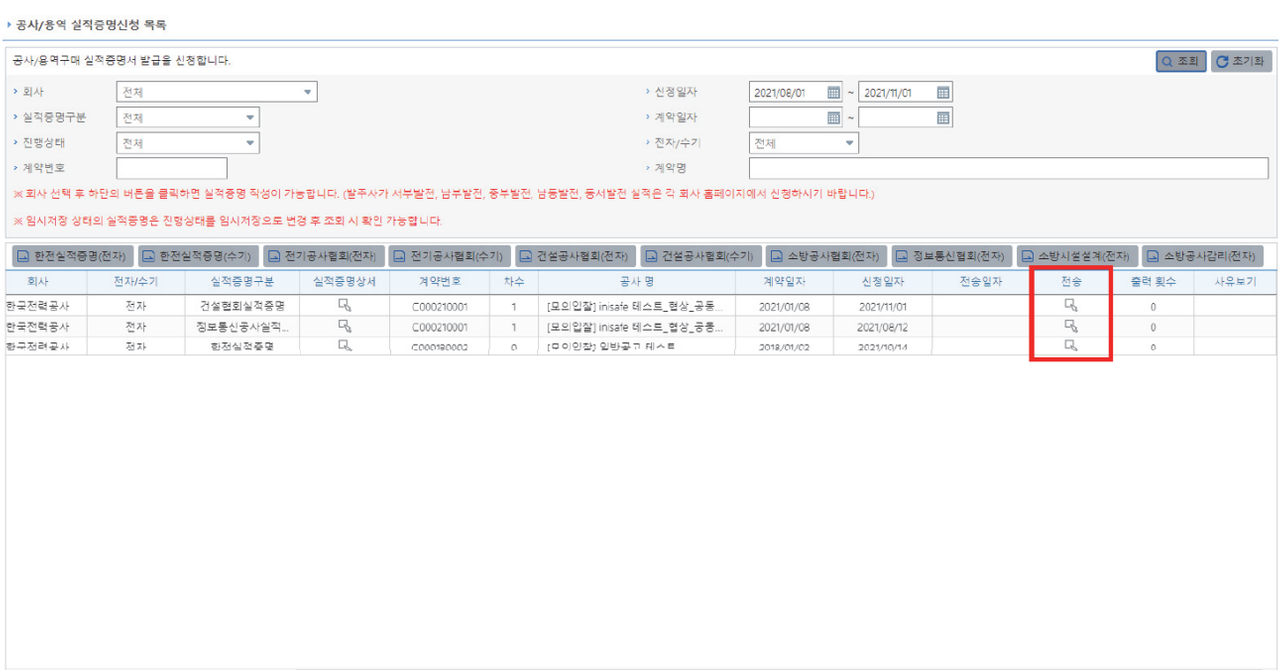

ㅇ 협회 실적신고시스템에서 한국전력공사 전자 제출 자료 가져오기 : 54쪽 참조

제출전 확인사항

증명서 제출전 확인사항

- **신청인(건설사업자)**의 정보가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
- **공사내용** : 공종(세부공종), 기성금액 단위, 공사연도 등이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
- **발주자** 정보가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
  (발주자 날인이 누락되거나 사본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발주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한 경우**) 검증표시가 되거나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었는지 확인

[실적신고용 증명서 예시]

실적신고용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9.20>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신청인	(1)상호		(2)대표자	
	(3)영업소 소재지		(4)업종및등록번호	
공사내역				

※ 실적신고용 증명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만 해당

실적신고용 ×

[실적증명 제7호서식] <제정 2009.9.1>

시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 공사 기준으로 작성 및 공동수급제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작성				
I. 업체정보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 실적증명 제7호서식은 실적신고용 서식이 아님

[검증된 증명서 예시]

검증완료

미검증

※ 파일형태에서 PDF로 전환하여 출력시 “진본”검증이 안될 수 있음

05 건설기술인 명단

신고대상 기술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건설업등록기준의 건설기술인(대표자 및 임원 포함)

- 건설기술진흥법 별표1에 따른 기술인, 165쪽 참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인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소방·전기·정보통신기술인,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제외

입력방법

○ 좌측의 메뉴에서 「05.건설기술인명단」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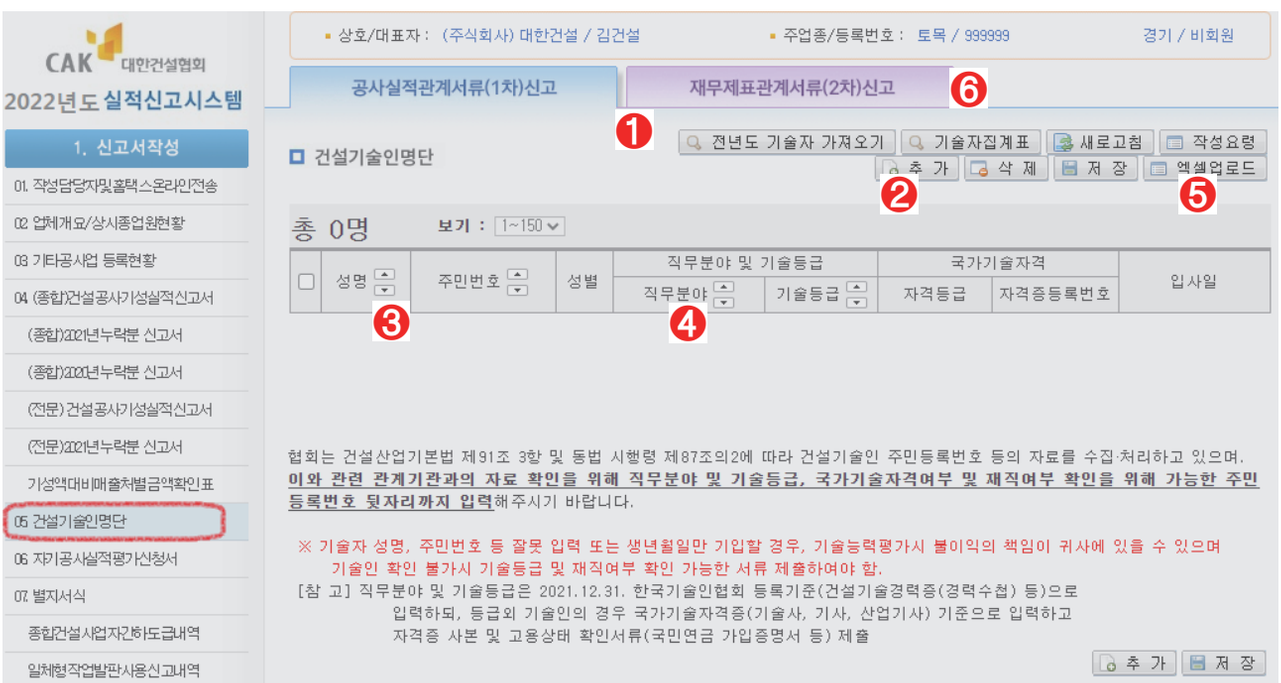

❶ 전년도 기술자 가져오기 : 전년도 최종 건설기술인명단 가져옴

➔ 이후 등급 상향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 수정하여 저장

❷ 추 가 : 기술인을 추가로 입력하는 경우 클릭

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해야 기술등급 및 재직여부 확인 가능

❹ **직무분야** : 1인이 여러 분야의 기술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개 직무분야 및 기술등급을 선택

※ 2022.12.31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 중인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중인 자 제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술인인 경우]

- 건설기술경력증(경력수첩) 상의 전문분야 및 기술등급 입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인 경우]

- 기술등급 : '해당없음'으로 입력
- 직무분야 : '건설기술인분류'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해당하는 직무분야, 자격등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번호 입력

❺ **엑셀업로드 방법**

- 엑셀업로드 클릭, 양식 다운로드 받아 직접 입력하는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 집어넣은 엑셀화일을 검증 클릭하여 오류 수정한 다음 저장

❻ 기술자집계표 : 입력완료 후 직무분야별 등급별 집계 확인

■ 건설기술자보유현황

창닫기

직무분야	기술등급 계						국가기술자격				
	계	없음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전기·전자	0	0	0	0	0	0	0	0	0	0	0
토목	0	0	0	0	0	0	0	0	0	0	0
건축	1	0	0	0	0	1	0	0	0	0	1
광업	0	0	0	0	0	0	0	0	0	0	0
도시·교통	0	0	0	0	0	0	0	0	0	0	0
조경	0	0	0	0	0	0	0	0	0	0	0
안전관리	1	0	0	0	1	0	0	0	0	1	0
환경	0	0	0	0	0	0	0	0	0	0	0
건설지원	0	0	0	0	0	0	0	0	0	0	0
기타(산업환경)	0	0	0	0	0	0	0	0	0	0	0
소 계	2	0	0	0	1	1	0	0	0	1	1

증빙서류(업로드서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 : (업로드서류) **없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 : ㈎ + ㈏ **함께 업로드**

㈎ 건설기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래의 서류 중 택 1

재직상태 확인서류(택 1)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 사업장별 고용보험자격취득 피보험자 목록
-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세무사 확인 원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06 자기건설공사 신고(해당되는 경우 제출)

자기건설공사 개요

○ **건설사업자(시공자)와 발주자(건축주)가 동일한 공사의 경우를 자기건설공사라 함**

- 건설사업자가 자기건설공사로 시공 할 경우 협회에 실적신고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다목 참조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자기건설공사로 신고 (국토부 유권해석 '20.2.3)

☞ 신규공사(2021년이후 계약)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공사는 자기건설공사로 신고
☞ 2020년 이전 신고한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공사는 기신고 방법으로 준공시까지 신고
※ (예시1) 2019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공사를 도급공사로 신고 → 준공시까지 도급공사
(예시2) 2019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공사를 자기공사로 신고 → 준공시까지 자기공사

- NHF방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재원 조달한 경우 지분율만큼 자기건설공사로 신고

○ 협회 **자기건설공사 평가**와 **도급공사 실적신고** 흐름도 비교

자기건설공사	도급공사(원.하도급)
▼	▼
04. 기성실적신고서 입력	04. 기성실적신고서 입력
▼	▼
06.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신청서 작성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작성
▼	▼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신청서에 감리자 확인.날인	기성실적증명서에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확인.날인
▼	▼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신청서 및 각종 구비서류 제출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

자기건설공사 신고사항

○ 신고기간 : 매년 2.1 ~ 2.15 (건설사 실적신고 기간과 동일)

○ 신고기준

- 자기건설공사는 공동주택, 오피스, 근생시설 등 주된공사가 건축공사로써, 정부고시 및 건물 구조·용도지수 등 다양한 산정방식의 최대 상한값을 추가 적용하여 공사유형별 **협회 기준으로 평가함**

  ※ **협회 기준평가 예외공사** : '○ 제출서류 < ❼ 총공사비 세부실행내역서'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후 건설공사별 신청

- 건축공사에 부대되는 토목·조경 등의 공사 및 공동주택 단지내에 부속건축물(상가, 노인정, 유치원 등)은 **건축공사에 공종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 단, 부지조성공사 연약지반개량공사 등 건축공사에 포함이 곤란한 경우 별도 신청 가능

- 총공사비에서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공사비, 설계·감리용역비, 대지구입비, 인허가비용, 이동식 가구구입비, 전자제품구입비 등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하여 신고**

- 당년도에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착공년도에 실적신고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요약 가이드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신고서류	필수	①No.4 :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 표지	**출력물 제출 (온라인 제출 불가)**
신고서류	필수	②No.5 :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서	
신고서류	필수	③No.6 : 총공사비내역총괄표	
증빙서류	필수	④인·허가 관련서류(세부내용 하단 참조) 건축주 2인 이상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추가제출	**온라인 제출 (파일업로드)** 또는 출력물 제출 선택 ※ 온라인 업로드시 주의사항 - 파일이름을 신고번호별로 먼저 기입 후 1개 파일로 업로드 요망 예시) 20210001_인허가서류.pdf 예시) 20210001_현장사진.pdf
증빙서류	필수	⑤설계도면(배치도 및 기준층평면도 등)	
증빙서류	필수	⑥공사현황사진 2매	
증빙서류	선택	⑦총공사비 세부실행내역서(감리자 확인 필수)	
기 타	선택	⑧기성율확인서(공정표), 약정서, 면적구분확인서 등	

❶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 신청표지(전산작성 출력물, No.4)

❷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 신청서(전산작성 출력물, No.5) : 실적평가 신청서 입력요령에 따라 작성후 출력하여 감리자와 신청회사 날인 후 제출

❸ 총공사비 내역총괄표(전산작성 출력물, No.6) : 총공사비에 대한 세부항목별 입력

❹ 인·허가 서류

(a) 미준공 공사 : 건축(변경)허가서,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착공신고필증

구 분	인·허가 서류 추가 확인사항
건축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제출 (지분율 확인용) ※ 1인은 건설사업자가 건축주로 명시되어야 함
건축주가 신탁사인 경우	- 신탁 계약(협약)서 - 건설사업자의 토지소유를 증빙 할 서류 ※ 건설사업자 명의가 표시된 최초 건축허가서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등

(b) 준공된 공사 : 시공사(건축주)가 표시된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사용승인서, 사용검사필증

※ 건축주와 시공사(건설사업자)가 동일한 표시가 된 서류 필요

(c) 예외사항 : 인허가 대상이 아닌 공사인 경우

·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비산먼지발생신고필증,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각종 보증서 등 시공과정에서 신고한 사실을 공공기관이 증명하는 서류 2종 이상

· 공사장위치, 건축관계자(건축주 및 시공사), 구조, 층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주용도 등 공사개요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설계개요 등 관련자료(설계자 명판 및 도장 날인)

❺ 설계도면 : 설계개요, 배치도 및 기준층 평면도 각 1부

· 인허가대상이 아니거나 감리확인이 없는 공사인 경우 설계도면 일체

❻ 공사현황사진 : 현장사진 2매 이상 (연도말 기준 외부전경 1매, 시공사진 1매)

❼ 총공사비 세부 실행내역서 (해당 경우만 제출, 감리자 확인 필수)

> **총공사비 세부 실행내역서란?**
> ☞ 총(전체)공사비의 실제 투입(예상) 비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세부사항(공종, 규격, 수량, 단위, 금액 등)까지 명시된 내역서

(a) **필수제출 공사** : 공장(근생제외), 숙박시설, 학교, 부지조성 및 연약지반개량공사, 공동주택 미포함 부속 건축물(상가, 노인정, 유치원, 관리사무소), 주된공사가 토목 및 조경공사 등 **협회 기준평가가 불가능한 공사**

· **(제출방법)** '총공사비 세부실행내역서'는 **건설사업자 자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 후** 내역서 갑지에 감리자 명판 및 도장 날인하고, 측면에 통간인 또는 철인 제출

· **(예외사항)** 전년도에 '총공사비 세부실행내역서'로 평가한 이월공사로서, **총공사비가 변동이 없는 경우 미제출**

(b) **선택제출 공사**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철골조주택, 그 외주택, 오피스,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의 **총공사비 세부실행내역서 기초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

❽ 기타 증빙서류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a) 신고년도 이전에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연말 기준 공정률을 확인할 수 있는 감리자의 기성률확인서(공정표)

(b) 실적평가신청서(NO.5)에 감리자 날인을 거부한 경우 월별 공정표 등에 감리자가 확인한 서류 일체

(c) 감리자가 없는 경우는 월별 공정표 일체 등 (원본대조필 필수)

(d) 신고년도에 도급종류가 변경(도급→자기 또는 자기→도급)되는 경우 계약서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및 변경일 기준 감리자의 공정률확인서

(e) 공사도중 당해공사 양수/양도시 계약서 및 양수양도일 기준 감리자의 공정률확인서

(f) 공동이행공사인 경우 지분율이 표시된 약정서 및 면적구분 확인서

(g) 종합건설사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도급 준 경우 도급계약서 사본

자기건설공사 신고방법

○ 입력요령 및 제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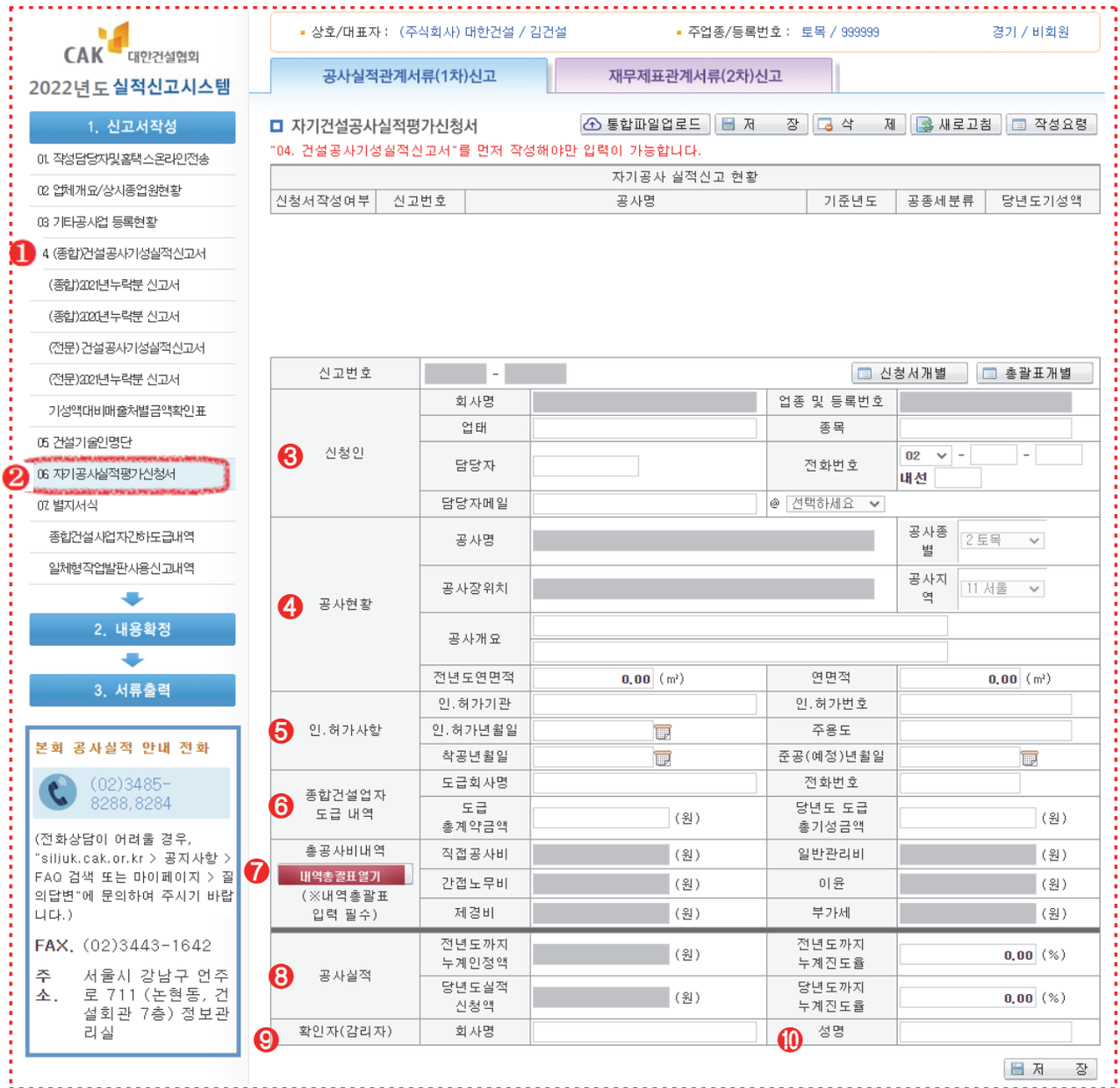

❶ '**04. 건설기성실적신고서**' 도급종류 **'자기공사'**로 선택하여 입력·저장

· 위 메뉴에서 입력·저장해야 '06.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서' 메뉴에 해당공사가 나타남

❷ '**06.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서**' 클릭하여 이동 후 공사 선택·입력

· '자기공사 실적신고 현황'에서 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공사명을 선택

❸ 신청인

· 업태 및 종목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 입력
·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건설공사 업무 담당자 정보 입력

❹ 공사현황

· 공사개요 : 공사현황에 대한 주요내용 위주로 입력
※ 준공된 공사의 경우 향후 증명발급시 표기되는 내용이므로 신중히 작성
<예시, 공동주택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구조, 10개동, 지하1층-지상15층, 총800세대 아파트
· 전년도 연면적 : 전년도 실적신고시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신청서 상의 연면적
※ 신규공사는 미입력
· 연면적 : 최종 인·허가서류 상의 연면적
※ 연면적 변경시 - 최종 건축허가서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서의 연면적
· 준공된 경우 : 건축물대장, 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상의 연면적

❺ 인·허가 사항

· 인·허가번호 : 인허가서류 상의 허가번호
· 인·허가년월일 : 인·허가서류 상의 승인일까지 포함하여 입력
· 주용도 : 인·허가서류 상의 주용도 입력
· 착공년월일 : 착공일까지 포함하여 입력
· 준공(예정)년월일 : 인·허가서류 상의 준공(예정)일까지 포함하여 추가입력

❻ 종합건설사업자 도급내역 (해당 경우만 입력)
<주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 당해 공사의 일부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 입력
※ 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 도급회사명 : 도급을 준 회사를 모두 입력, 다수인 경우 쉼표(,)로 구분
· 전화번호 : 도급을 준 회사의 전화번호를 입력, 다수인 경우 쉼표(,)로 구분
· 도급 총계약금액 : 도급을 준 회사의 계약금액을 모두 합산한 총계약금액을 '원단위'로 입력함
· 당년도 도급 총기성금액 : 도급을 준 회사에 당년도 지급한 기성금액을 모두 합산한 총기성금액을 원단위로 입력함

❼ 총공사비내역

· 해당공사의 총공사비 세부 실행내역서를 토대로 작성하되, 종합건설사업자에 도급을 준 경우 도급금액은 총공사비(자사분)에서 제외하여 별도 기재

※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한 금액은 '❻종합건설사업자 도급금액'란에 따로 기재하고, 총공사비는 도급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명시

총공사비 : 건설공사의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의 소요되는 총 공사금액

☞ 전기/통신/소방공사비, 대지구입비, 설계·감리용역비, 인·허가비용(채권구입비, 수수료 등), 이동식가구구입비, 전자제품구입비 등 비건설부문 비용은 제외

공종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가설공사	0	0	0	0
토공사	0	0	0	0
기초공사	0	0	0	0
철근콘크리트공사	0	0	0	0
철골공사	0	0	0	0
조적공사	0	0	0	0
미장(방수)공사	0	0	0	0
목(가구)공사	0	0	0	0
금속공사	0	0	0	0
지붕(홈통)공사	0	0	0	0
창호(유리)공사	0	0	0	0
타일(돌)공사	0	0	0	0
도장공사	0	0	0	0
수장(도배)공사	0	0	0	0
잡공사	0	0	0	0
조경공사	0	0	0	0
설비공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직접공사비소계(①)	0
간접노무비	0
제경비	0
일반관리비	0
이윤	0
간접공사비소계(②)	0
총원가(①+②)	0
부가가치세	0
총공사비(③)	0
종합건설업자도급금액(④)	0
전체공사비(③+④)	0

〈 주의사항 〉
해당공사의 총공사비 세부 실행내역을 토대로 작성
당년도분이 아닌 총공사금액 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공사비,대지구입비,설계/감리용역비,
인/허가비용(수수료,채권구입비 등),이동식가구구입비,
자제품구입비 등에 해당되는 비용은 총공사비에서 제외
종합 건설업자에 도급을 준 경우 도급을 준
금액(계약금액,부가세포함)은 총공사비(③)에서 제외하고
④에 별도기재

· 공종 : 건축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체계 기준으로 입력된 상태이므로, 필요시 당해공사에 맞게 공종을 직접 수정하여 기재

· 공사금액 : 당해 공종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기계경비, 운반비, 가설비) 기재

· 간접노무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공사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합계액

· 제경비 :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기타경비의 합계액

☞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료 등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 환경보전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라 당해공사의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퇴직공제부금비 : 건산법 제87조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기타경비 : 각종 관계법령 및 당해공사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서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보상비, 폐기물처리비, 외주가공비, 품질관리비, 안전점검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로 소요된 비용

·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건설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

· 이윤 : 영업이익으로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적용한 금액

※ 동일규모의 도급공사의 일반적인 이윤(금액)을 기재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기재

· 총공사비 : 총원가(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기재

· 종합건설사업자 도급금액 :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만 입력하되, 각 도급회사와의 계약금액을 합한 금액(부가세 포함) 기재

· 전체공사비 : 신청업체의 총공사비와 동종건설사업자 도급금액을 합한 금액 기재

❽ 공사실적

· 전년도까지 누계인정액 : 전년도 실적신고시 협회에 평가신청하여 인정받은 누계금액 입력

· 전년도까지 누계진도율 : 전년도 실적신고시 평가신청서에 기재 신고한 당년도까지 누계진도율 입력

· 당년도 실적신청액 : 아래 산식에 의하여 진도율이 자동으로 입력됨

= 총공사비 × (당년도까지 누계진도율 – 전년도까지 누계진도율)

당년도 실적신청액 주의사항

◎ '당년도 실적신청액'이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의 당년도기성액과 다른 경우 건설공사기성실적 신고서의 당년도기성액은 '당년도 실적신청액'과 동일하게 자동 수정됨

◎ 공사실적 신고 이후에는 수정 불가

❾ 확인자(감리자)

· 해당공사 감리자(건축사사무소 등)의 회사명, 성명 입력

❿ 공사실적신청서 출력 및 날인

· 최종 입력이 완료되면 반드시 저장 후

☞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 신청서(서식 No.8) 출력

☞ 당해공사 감리자 및 신청회사 해당란에 각각 (명판 등) 날인 후 제출

자기건설공사 기타사항

○ 면적구분확인서 (공동시공일 경우만 제출)

※ 프로그램 상단 '서식모음' 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공사명 :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신청서 상의 공사명과 동일하게 기재
- 공사장위치 : 인·허가서류 상의 대지 위치와 동일하게 기재(번지까지 기재)
- 연면적 : 인·허가서류 상의 동별면적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공동사업 구성회사 지분별로 구분
- 확인자 : 공동사업 구성회사의 각각의 대표자가 공동확인(복사본 아닌 날인 원본)

○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 수수료

- 평가료는 본회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시 신청한 각 건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평가료는 반환되지 아니함

실적평가 수수료 현황

평가신청액 (= 당년도 실적신청액)	평가 수수료		비고
	회 원	비회원	
10억원 미만	100,000원	200,000원	부가가치세 별 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0,000원	300,000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00,000원	400,000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50,000원	500,000원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00,000원	600,000원	
500억원 이상	500,000원	1,000,000원	

07 별지서식 신고

별지 서식 신고는 필수가 아님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만 신고)

(가)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 내역서 (별지서식1)

신고대상

- 도급받은 종합건설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종합건설공사에 한함) 준 경우
  ※ 2020.12.31 이전에 입찰공고한 공공공사 또는 2021.12.31.이전 입찰공고(없으면 도급계약)한 민간공사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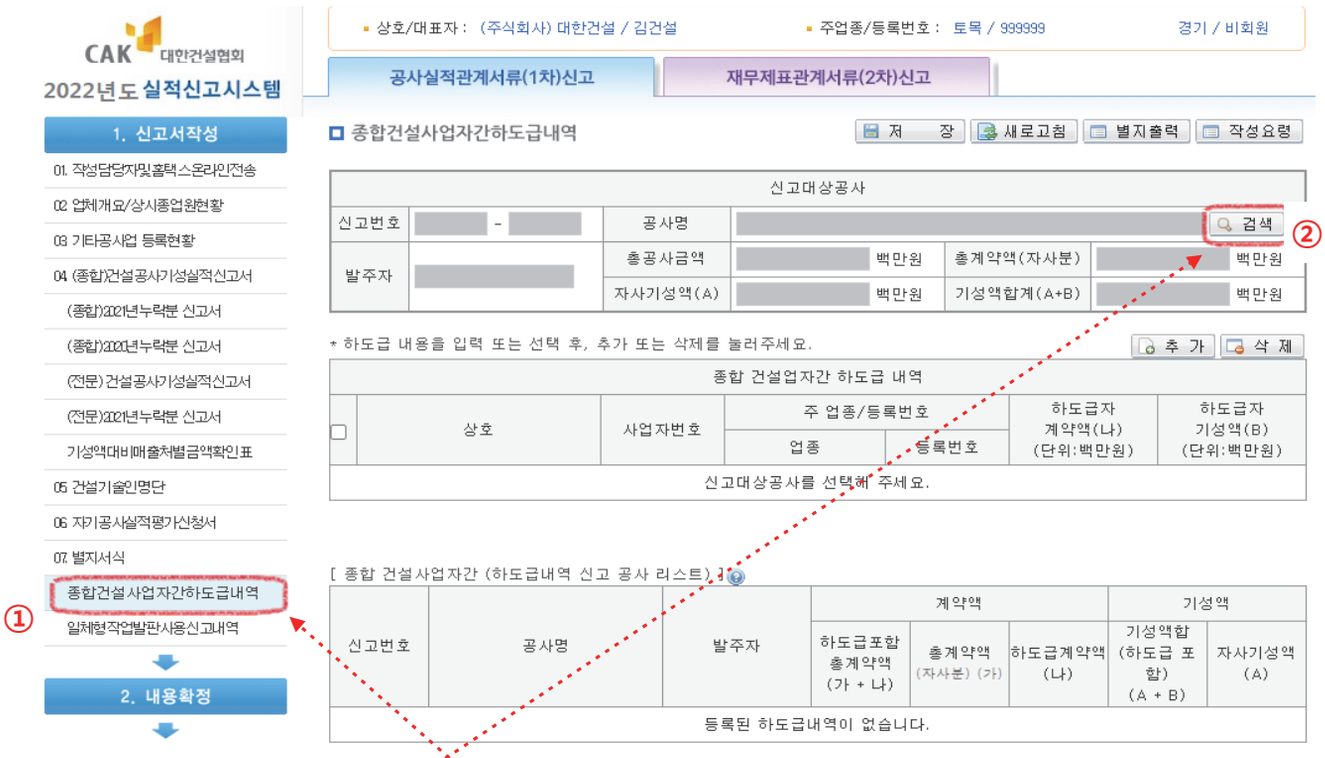

① 좌측 메뉴의 「별지서식」- 종합건설사업자간하도급내역 선택

②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공사명 선택 및 작성

※ 제출서류 및 혜택

구분	동일업종	비동일업종
제출서류	- 발주자의 하도급서면승낙서 - 하도급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하도급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혜택	하도급기성액의 50%를 당년도 공사실적평가액에 가산	하도급기성액을 당년도 공사실적 평가액에 가산

(나) 건설현장 일체형작업발판 설치·사용신고 (별지서식2)

신고대상

국내 민간 건설공사 중 신규계약 현장에서 일체형작업발판을 설치한 경우
※ 공사 현장당 1회만 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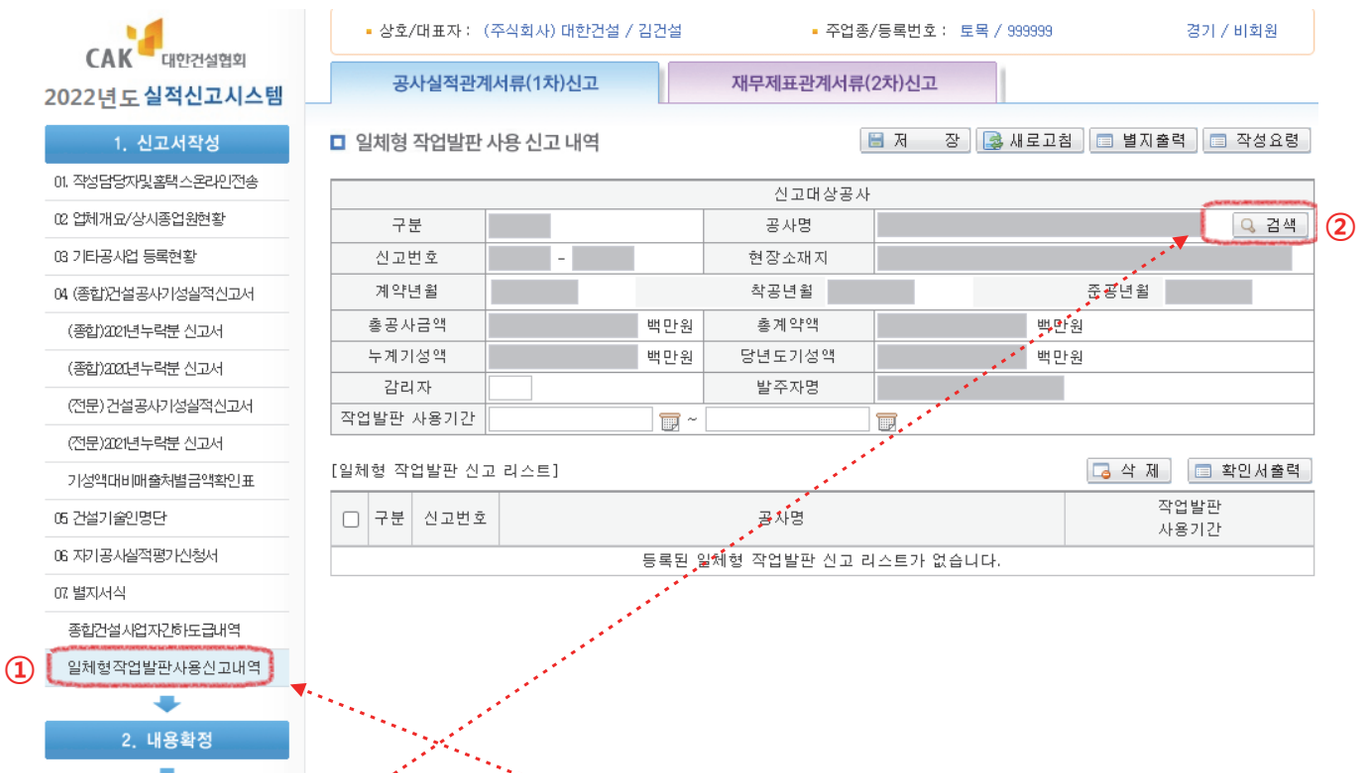

① 좌측 메뉴의「별지서식」-「일체형작업발판 설치·사용신고」를 선택

②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공사명 선택 및 작성

③ 혜택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2% ~ 5% 가산

④ 가산방법 : 업종별로 각각 평가하여 가산

$$\frac{\text{㉡일체형작업발판 설치 현장 수}}{\text{㉠신규 계약 민간공사 수}}$$

30%미만 : 2% 가산
30%이상 40%미만 : 3% 가산
40%이상 : 5% 가산

※ 공사 계약년도와 일체형작업발판 설치연도가 다를 경우, 공사계약건(분모)과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 현장 수(분자)를 분리하여 각각의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예시) 21.1월 공사계약㉠, 22.1월 시스템비계 설치㉡의 경우
㉠ : 2022년 시공능력평가시 가산비율의 분모값에 반영 ㉡ : 설치시점은 2022년이므로 2023년 시공능력평가시 관련 서류 제출하여 가산비율의 분자 값에 반영 ※ 단, 미신고 또는 누락신고 등으로 이전년도에 신고되지 않은 현장(분모값에 반영되지 않은 현장)의 경우 신고연도 가산비율의 분모값 및 분자값에 일괄 1건씩 반영 ※ 키스콘에 신고된 공사도 분모 및 분자에 합산

⑤ 제출서류 : 일체형작업발판 설치·사용신고서(별지7) 및 증명서(별지7의 첨부)

⑥ 첨부서류 : 일체형 작업발판 임대업체와의 계약형태(가~라)에 따라 해당서류(㉠~㉣)를 모두 제출

계약형태	첨 부 서 류
가. 원수급인이 임대업체와 직접 계약	㉠ 현장별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사용에 대한 감리자(또는 발주자) 확인서(붙임서식) ㉡ 일체형작업발판 임대계약서(신청사↔임대업체) ㉢ 전자세금계산서(신청사↔임대업체)
나. 하수급인(협력업자)이 임대업체와 직접 계약	㉠ 현장별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사용에 대한 감리자(또는 발주자) 확인서(붙임서식) ㉡ 일체형작업발판 임대계약서(하수급인↔임대업체) ㉢ 전자세금계산서(하수급인↔임대업체) ㉣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공사내역서*(신청사↔하수급인) *시공범위에 일체형작업발판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하도급계약 특수조건문, 하도급견적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제출 가능
다. 일체형작업 발판을 보유한 하수급인(협력업자)과 계약	㉠ 현장별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사용에 대한 감리자(또는 발주자) 확인서(붙임서식) ㉡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공사내역서(신청사↔하수급인) ㉢ 전자세금계산서(신청사↔하수급인) ㉣ 하수급인의 일체형 작업발판 장비구입·보유입증서류 (구입영수증, 안전인증원 인증서 등)
라. 원수급인이 일체형발판을 보유한 경우	㉠ 현장별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사용에 대한 감리자(또는 발주자) 확인서(붙임서식) ㉡ 원수급인의 일체형 작업발판 장비구입·보유입증서류 (구입영수증, 안전인증원 인증서 등)

※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대표사 명의의 상기 필수서류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능

※ 감리자가 확인한 경우 감리업등록증 등 감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08 건설업 조사표

통계청(산업통계과 콜센터 : 02-2012-9114)

조사목적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업조사 홈페이지(http://survey.go.kr/cs/) 참조 요망

① 조사목적 및 용도

-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활동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종합적인 국민경제 분석 및 자본형성 측정, 그리고 개별건설업체의 자체 사업계획수립과 그 실적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② 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10114호 : 1974. 11. 13)

③ 조사기준시점 및 기간

구 분	일 자
조사기준시점	2022. 12. 31 현재
조사기준기간	2022.01.01 ~ 2022.12.31(1년간)

④ 제출기간

건설업조사표(**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등**)	: **2023. 2. 1 ~ 15**
건설업조사표(**결산사항**) ※ 2차신고시 조사	: **2023. 4. 3 ~ 17**

⑤ 조사범위 및 대상

-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F. 건설업」
- 대상 : 건설업종을 등록하고 건설활동을 수행한 기업체

⑥ 조사항목

일반사항	결산사항	실적내역표
(1)기업체명 및 소재지	(1)종사자수	공종별, 공사지역별, 발주자 별 등의 수주액, 기성액 등에 관한 사항
(2)조직형태 (3)등록연월	(2)연간급여액	
(4)자본금 (5)겸업타산업	(3)매출액 및 건설비용	
(6) 등록업종별 공사실적		

⑦ 조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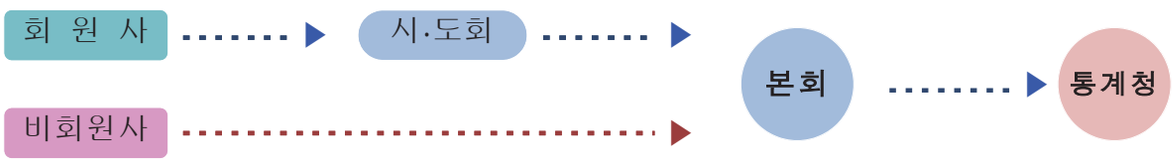

⑧ 결과공표

- 잠정결과공표 : 2023. 8월(통계청)
- 보고서 발간 : 2023. 12월(협회)

2. 내용확정

☞ 내용확정 전, 신고내용을 반드시 확인(출력 검토 가능)

❶ 신고서 작성 후 좌측의 **[내용확정] 버튼 클릭**

※ 신고내용 확정 클릭 후에는 수정 또는 재입력이 불가하니 신고내용을 재차 확인 후 확정 요망

❷ 업체개황(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본사소재지, 종업원수 기업유형), 공사실적,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우수건설사업자 지정현황, ISO 인증현황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여부 체크

❸ 공사실적 신고현황 최종 확인 후 "**신고내용 확정**"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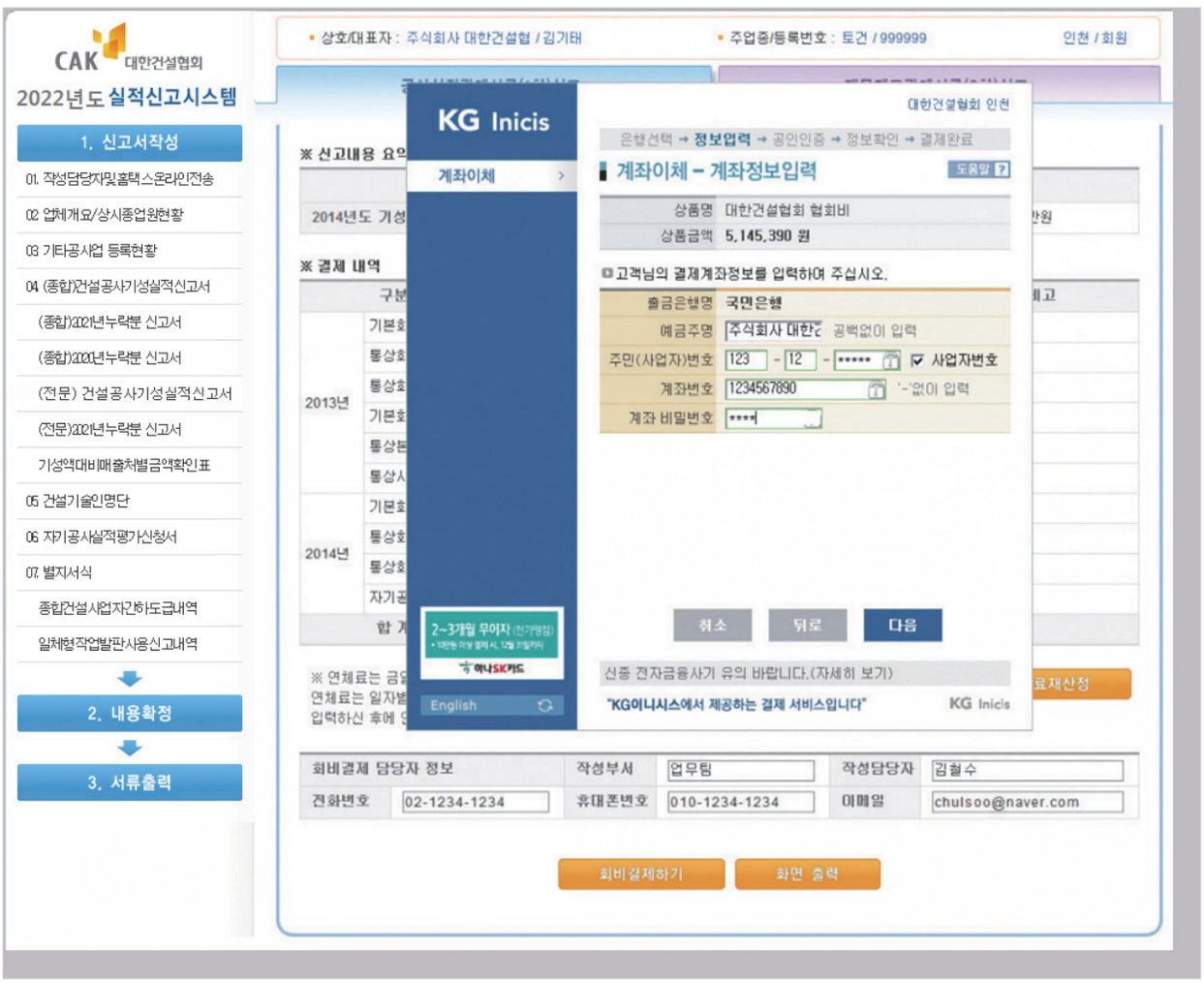

○ 회원사의 경우 : 회비결제

○ 자기공사가 있는 경우 : 자기공사평가 수수료 결제

- 자기공사 세금계산서는 결제 익일 작성자 이메일로 전송

3. 서류출력

○ "**전체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서류 출력

※ 건설공사실적총괄표,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는 내용 확정시 온라인 제출되므로 더이상 제출하지 말 것. 필요시 개별 출력

서류편철하기

○ 제출서류는 ㈎ **증명서철,** ㈏ **자기공사철**로 구분

㈎ 증명서철

<table>
<tr><th colspan="2">연번</th><th>제출서류 목록</th><th colspan="2">비고</th></tr>
<tr><td colspan="2">No. 1</td><td>건설공사실적신고(Ⅰ) 표지</td><td colspan="2" rowspan="4">필수</td></tr>
<tr><td colspan="2">No. 2</td><td>기성실적증명서 원본(발주자 확인)
※ 종합공사 → 전문공사, 신고번호순 정렬</td></tr>
<tr><td colspan="2">No. 3</td><td>기성액 대비 매출처별 금액 확인표 (전산출력물)</td></tr>
<tr><td colspan="2">첨부</td><td>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원본(세무대리인 확인, 간인)</td></tr>
<tr><td rowspan="7">별지</td><td>1</td><td>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내역신고서</td><td>72쪽 참조</td><td rowspan="7">선택서류
(해당사례가 있는 경우만 제출)</td></tr>
<tr><td rowspan="2">2</td><td>일체형 작업발판 사용내역 확인서</td><td>73쪽 참조</td></tr>
<tr><td>+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확인서(원본)</td><td rowspan="5">192쪽 ~ 200쪽 서식 참조하여 작성</td></tr>
<tr><td>3</td><td>산업·환경설비제조실적신고서
+산업·환경설비제조실적 확인서(원본)</td></tr>
<tr><td>4</td><td>건설사업관리위탁수행실적신고서</td></tr>
<tr><td>5</td><td>새로운기술·공법사용에 따른 공사비절감, 시공기간 단축공사 내역신고서
+새로운기술·공법사용에 따른 공사비절감, 시공기간 단축공사 증명서(원본)</td></tr>
<tr><td>6</td><td>건설공사 직접시공분 내역 신고서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원본)</td></tr>
<tr><td>7</td><td>경력 건설근로자 건설업등록(창업) 우대 신고서</td></tr>
</table>

㈏ 자기공사철

연 번	제출서류 목록	비고
No. 4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 표지	선택서류 (해당사례가 있는 경우만 제출)
No. 5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 신청서	
No. 6	총공사비내역총괄표	

- **건설공사실적총괄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는 이번부터 제출하지 않음**

- **No.2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신고 번호순으로 철함**

  ※ 견출지 부착, 제본 등 작업하지 말 것

- **홈택스 온라인 전송하지 않은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좌측 여백에 붉은색 펜으로 **신고번호 기재**

서류제출하기

○ 실적신고 관계서류를 신고기한 내(2월 15일까지)에 접수처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도착 ☞ 접수처 : 9쪽 참조

※ 신고서류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사본 보관 바람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서 우측 상단에 인쇄된 "**고유번호**"를 우편봉투에 그대로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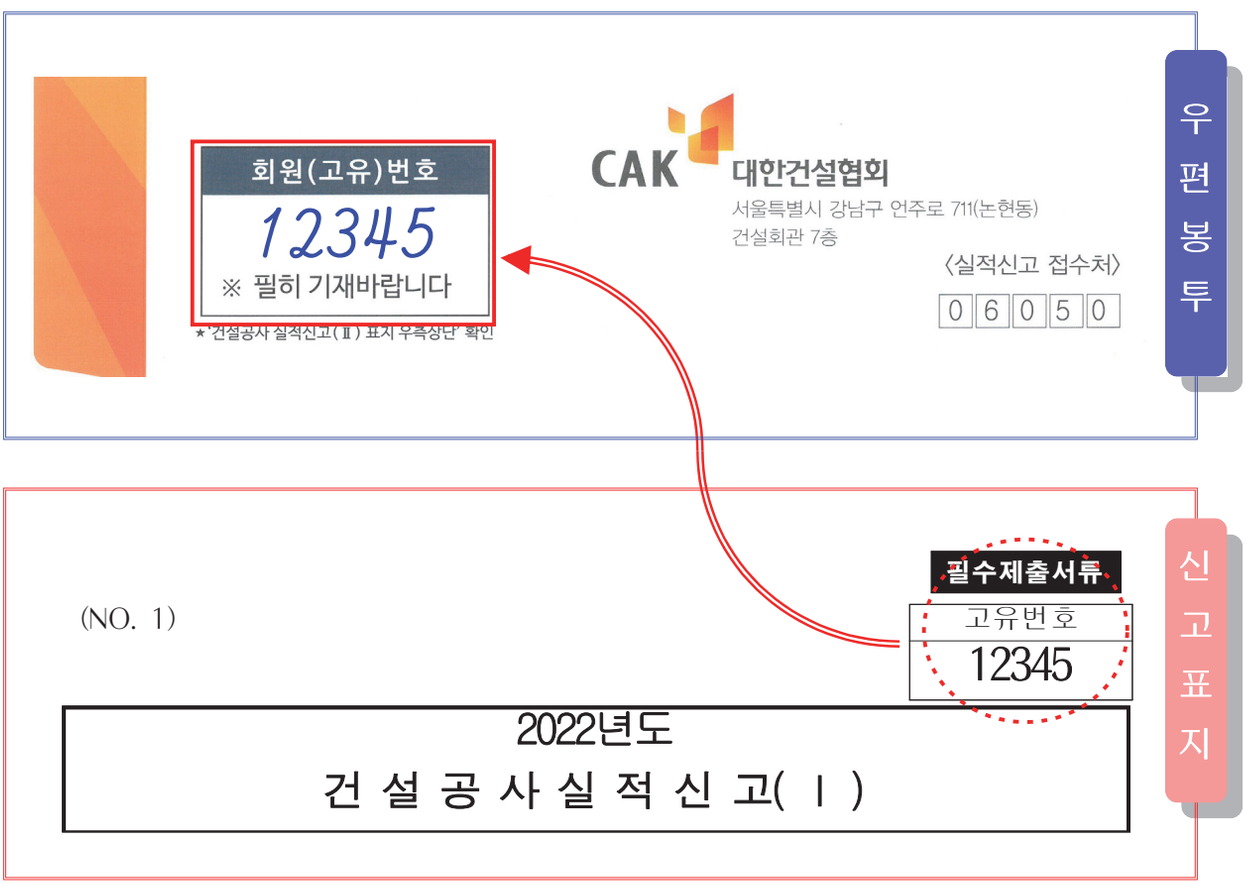

Creating Advanced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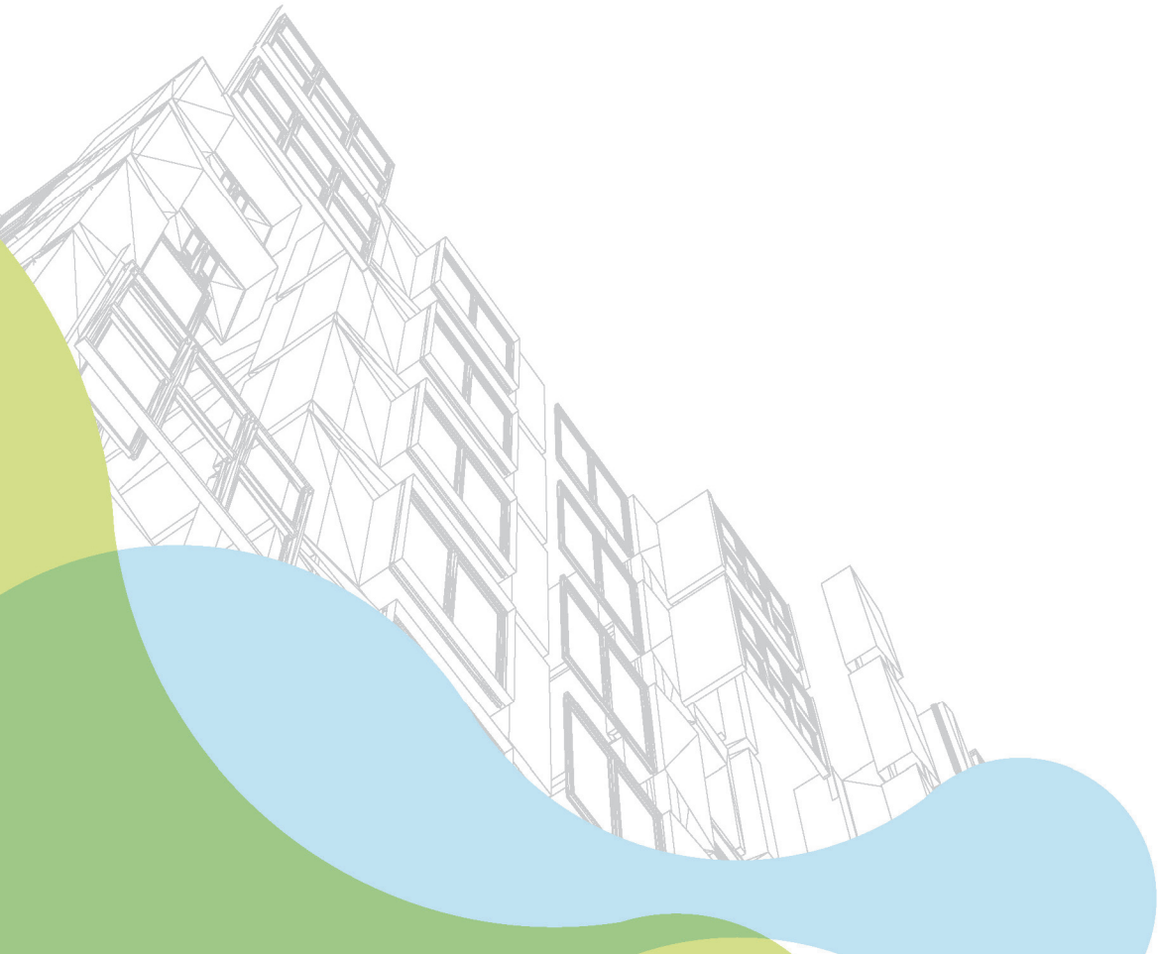

2022년도

실적신고

Ⅱ. 실적신고 하기

나. 2차 실적신고(재무제표 관계서류)

1. 개　　요
2. 작성요령
3. 내용확정 및 출력, 서류제출

나 2차 실적신고(재무제표 관계서류)

1 개 요

신고대상

○ 2022. 12. 31 현재 **종합건설업***을 등록(보유)한 건설사업자

*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2차)신고기간

○ **법인** 사업자 : 2023. 4. 3(월) ~ 4. 17(월)

○ **개인** 사업자 : 2023. 5. 31(수)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소득세법 제70조의2)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6월 22일(목)까지**

접수처 : 대한건설협회 (☞ 9쪽 참조)

회 원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본사 소재지 기준)
비회원(정보이용등록 포함)	대한건설협회 본 회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사업자가 "정부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재무상태 신고**는 대한건설협회만 신고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공동활용

제출서류

○ 협회 실적신고 시스템에서 작성·확정한 출력물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제출서류 목록 : 필수

필수

① **2022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 (Ⅱ) 표지** (서식 : No.7)

② **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재무제표확인원

※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별도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제출

구분	감사보고서	재무제표확인원
대상	외부감사 대상업체[3)]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업체
구성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공사원가명세서
	주 석	

※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재무제표) 참조(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의 경우도 포함)

3) 외부감사 대상업체 : ☞ 185쪽 참조

√ 재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도비교식 재무제표**"로 작성
- **정기결산일**(예시 : 2022. 3.31, 2022. 6. 30)을 **기준**으로 작성
- 당기 및 전기는 **회계기간 전부**가 **포함**되도록 작성
  ※ 특정기간(반기, 분기, 월 등)으로 작성 불가
- 재무제표 **전체서류**에 대한 **확인자**(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간인**·철인·압인 등 표시가 존재할 것
  ※ 책자형(제본)의 감사보고서는 간인 생략

※ 건설업 신규등록(22년)하고 결산일 미도래로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 : 법인 설립시의 최초결산서(개시대차대조표, 진단보고서, 감사보고서 중 택 1)와 정관 사본(원본 대조필) 제출

제출서류 목록 : 선택

선택

◎ 선택 서류 : 제출한 경우만 평가

구 분	제출 대상(활용분야)
① 현금흐름표	**현금흐름비율을 평가하는 입찰(지자체 100억 이상 적격심사)에 참가하려는 자** ※ 반드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하고 확인자 등록증 사본 첨부
② 기술개발 투 자 비	기술개발투자비율을 평가하는 입찰(PQ 대상공사, 지차체 100억 이상 적격심사)에 참가하려는 자 ※ 2022년도에 관할세무서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건설부문 기술개발비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서류목록】** 구분 / 서류명 필수 / ㈎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No. 8, 205쪽 참조) 필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No.8-1·2·3·4, 206쪽 참조) √ ㈎, ㈏는 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하고 확인자 등록증 사본 첨부 ※ 시공능력평가액만 가산받고자 하는 경우 세무사 가능

제출서류 목록 : 해당시 필수

해당시 필수

◎ 해당하는 경우 필수서류

구 분	제출 대상(활용분야)
① **매 출 액 구분확인서** (216쪽 참조)	손익계산서상 **건설매출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 **건설매출액**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매출만을 의미. 건설용역(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과 비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공사) 제외 ※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하고 확인자 등록증 사본 첨부 ☑ **미제출시 처리방법 : 당해 연도 실적신고 인정 기성액을 1.1로 나눈 값을 건설매출액으로 간주**
② **차입금 확인서** (217쪽 참조)	재무상태표상 차입금 항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하고 확인자 등록증 사본 첨부
③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정기결산일이 변경된 경우 ※ 정기총회 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가능

주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제출전 **부본을 보관**할 것

○ 서류**제출 후** 일체의 **추가·보완·수정 불가**

○ 외부감사 대상 업체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라 하더라도 감사보고서 **제출**

○ **주권상장법인**은 반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감사보고서 제출

※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재무제표 제출

○ 제출된 재무제표 관계서류는 공사입찰시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활용

- 추정가격 50억 ~ 100억미만 공사의 경영평가 서류를 협회에서 확인·발급받기 위해서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감사보고서 제출

○ 자료입력/내용확정 후 신고서와 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확인원)를 반드시 원본 제출(우편, 내방)할 것

○ 경영상태 평가결과를 협회 신고안내시스템(http://siljuk.cak.or.kr)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할 것

- **확인기간** : 6월 12일 ~ 16일(예정)
- **평가결과 확정** : 이의 신청없이 확인기간이 지난 경우
- **경영상태 증명발급** : 7. 1 개시(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작성요령

시스템 접속하기

- 대한건설협회 신고안내시스템(http://siljuk.cak.or.kr)에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공동인증서 확인 후 로그인
- 재무제표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01 작성담당자 및 홈택스온라인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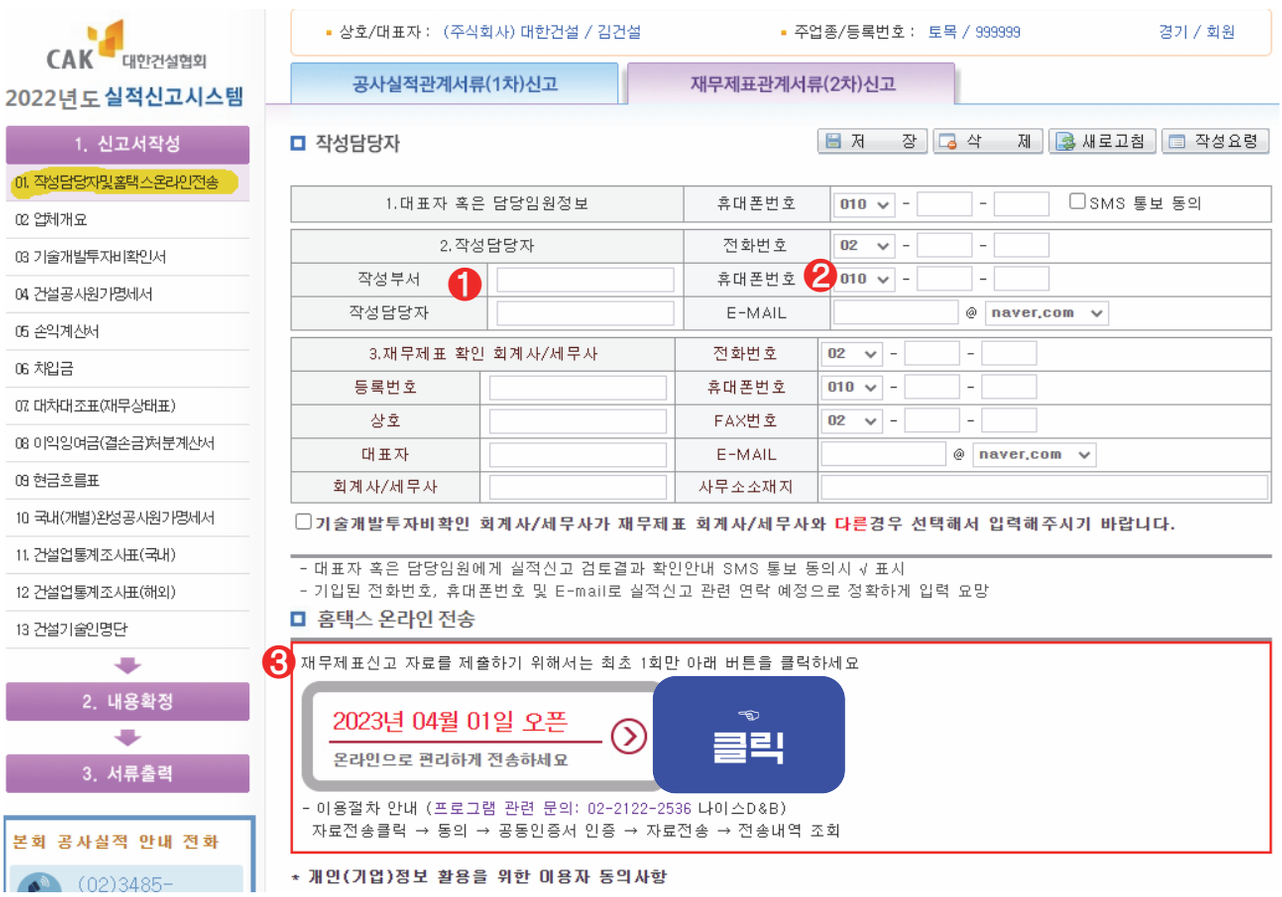

❶ 작성부서 및 작성담당자, ❷ 연락처

- 실적신고 후 증빙자료 추가 제출, 평가결과 통보 등에 사용
  - ※ 실적신고 이후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협회로 통보
  - ※ 대표자 또는 담당임원도 안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SMS 통보 동의에 ☑ 체크
- 입력완료 후 반드시 "저장"하여야 함

❸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상태 자료 전산연계하기

- "**홈택스 온라인 전송**" 클릭 : 재무제표신고 내용 입력을 위하여 자료전송 필수

★ 홈택스 온라인 전송 진행절차

자료전송 클릭

동의(☑) 후 확인 및 로그인 클릭

사업자번호 입력 후 로그인 클릭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선택 및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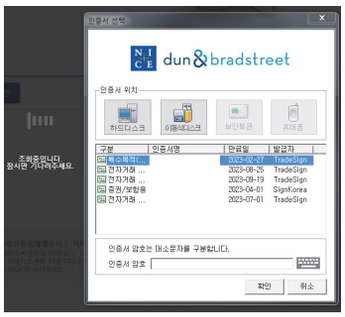

공동인증서 암호 입력후 확인 클릭

전송내역 조회

※ 관련문의 : 02-2122-2536 나이스D&B

02 업체 개요

❶ 정기결산기준일 : 직전년도 결산서의 정기결산일

※ 결산 기준일 변경의 경우 :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총회회의록(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❷ 외부감사대상※ 여부

※ 외부감사 대상업체 : ☞ 185쪽 참조

❸ 기업구조조정 여부

㉮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또는 종결)된 경우 : 진행중(또는 종결)을 선택하고 사건번호((예시)서울2021회합1234) 입력

㉯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또는 종료)된 경우 : 진행중(또는 종결) 선택

※ 2차 신고이후 ㉮, ㉯의 개시/종결된 경우 협회 통보

03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선택)

구 분	내 용
제출대상	**2022**년도에 관할세무서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건설부문 기술개발비용이 있는 경우
용 도	ㅇ 시공능력평가액 가산 ㅇ 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율을 평가하는 입찰(PQ 대상공사, 지차체 100억 이상 적격심사)에 활용
구비서류	①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No. 8 협회서식)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① ②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확인자 등록증 사본 첨부 ※ 시공능력평가액만 가산받고자 하는 경우 세무사의 확인 가능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비】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반복적인 정부수집 활동
-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연구개발비의 명세항목 등 세부내용은 회계사에게 문의

공사실적관계서류(1차)신고 | 재무제표관계서류(2차)신고

■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저 장 | 삭 제 | 새로고침 | 작성요령

(단위 : 원, VAT 불포함)

구 분	합계 ①+②	건설부분 기술개발투자비 금액 ①	비건설부분 기술개발투자비 금액 ②
기술개발투자비 총 합계	0	0	0

o 기술개발투자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2022년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상의 금액을 기재

o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 공인회계사 확인 : PQ.적격심사 및 시공능력평가 활용
- 세무사 확인 : 시공능력평가에 활용

o 제출서류 :
1.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록증 사본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2), 별지 제3호서식 부표(1)(2)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 및 간인하여 제출

○ 작성방법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확인서 기준**으로 입력

· **단 위** : 각 항목들의 단위는 **원(VAT 제외)**으로 입력

· **건설업 외에 겸업하는 경우** : 기술개발투자비를 **건설부문***과 **비건설부문**으로 정확히 구분하고, 합계를 기재하여 작성

* **건설부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만을 의미. 건설용역(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과 비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공사) 제외

· **확인자**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구분하여 필히 입력

※ 건설기술개발투지비확인서 확인자별 인정용도

확인자가 **공인회계사**인 경우	확인자가 **세무사**인 경우
○ 시공능력평가액 가산 ○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증명 발급에 반영	○ 시공능력평가액 가산

04 공사원가명세서

☞ P. 계정과목은 부록 5. 176쪽 참조

○ 건설공사원가명세서 입력시 주의사항

- 아래의 손익계산서 과목과 건설공사원가명세서의 과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유의사항

손익계산서

과 목	당기	전기
매출원가		
(1) 공사원가		
1. 국내공사	500	
2. 해외공사	200	
(2) 분양원가		
1. 기초완성주택재고액		
2. 당기완성주택공사비	100	
3. 기말완성주택재고액		
(3) 기타겸업 매출원가	50	

건설공사원가명세서

과 목	국 내 공사원가	해 외 공사원가	분양원가	기타겸업
(28)하자보수비				
(29)현장관리비				
5. 당기총고사비용				
6. 공사손실충당부채				
7. 기초미성공사				
8 합계				
9 기말미성공사				
10. 타계정대체액				
11. 당기공사원가	500	200	100	50

05 손익계산서

☞ P. 계정과목은 부록 5. 171쪽 참조

○ 홈택스자료 온라인전송한 경우 : 자동완성 됨

○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건설매출액과 건설외매출액으로 구분 표시

※ 건설매출액과 건설외매출액의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건설매출액구분확인서' (216쪽) 제출

[이자비용 입력방법]

구 분	이자비용
재무제표 확 인 원	영업외비용 항목중에 이자비용, 지급이자 및 할인료, 금융수수료, 회사채 이자 등은 모두 합하여야 함. 공제조합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
감사 보고서	영업외비용 항목중 에 이자비용을 입력함 감사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자비용, 지금이자 등 명칭을 달리하더라도 이자비용성격은 모두 이자비용으로 표시하므로 이자비용만 입력
국제회계 기준	판관비가 아닌 따로 금융비용으로 별도 표시 금융비용, 금융원가로 표시 금융원가=이자비용+외환차손+..이므로 주석사항 확인하여 이자비용의 금액을 기입하여야 함

06 차입금

○ **차입금 별도 입력**(재무상태표 中 부채과목)

- 시공능력평가액의 경영평점 중 차입금의존도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아래의 계정과목을 모두 합산하여 입력

※ 차입금이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차입금구분확인서(217쪽 참조) 제출

차입금 계정과목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당좌차월, 유동성장기차입금 단기대출금, 단기융자금 어음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임금, 관계회사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장기대출금, 장기융자금 주주임원종업원장기차입금, 관계회사장기차입금 리스장기차입금
단기사채 유동성사채 유동성전환사채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외화사채, 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차관
외화단기차입금 유동성외화장기차입금 유동성외화장기부채	장기외화차입금, 외화리스부채
유동성리스부채 유동성리스미지급금	리스부채, 리스미지급금
유동성장기채무 유동성장기부채 가수금 위 계정과목 외 차입금	국민주택기금(차입) 공제조합 대출금 위 계정과목 외 차입금

※ 주주, 대표이사 직원 등에 빌린 금액으로서 대여금, 차입금, 가수금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어도 모두 차입금에 포함하여야 함

※ 리스로 표시된 계정과목은 차입금에 반드시 모두 포함

※ 입력하여 신고한 금액과 최종 협회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영상태 평가 확인기간에 확인(6월 12일 ~ 16일(예정))

07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P. 계정과목은 부록 5. 166쪽 참조

○ 홈택스자료 온라인전송한 경우 : 자동완성 됨

08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

☞ P. 계정과목은 부록 5. 175쪽 참조

※ 결손금처분계산서의 경우는 해당값에 (-)붙여 신고프로그램 입력 요망

【이익결손금의 경우】

- 계정과목명에 '손실', '결손' 등이 포함된 경우 "-(음)"을 붙여 실적신고 프로그램에 입력

예시

서류명	계정과목명 : 금액	입력방법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결손금 : 100원	-100
이익결손금처분계산서	이익결손금 : 100원	-100

【당기순이익항목의 경우】

-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계산서의 과목 중 **당기순이익**(손실)의 **금액**은 서로 **반드시 같아**야 함

예시

손익계산서

과 목	당기	전기
계속사업이익		
중단사업이익		
당 기 순 이 익 (또는 손실)	1,234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계산서

과 목	당기	전기
미처분이익잉여금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 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		
(3) 전기오류수정		
(4) 중간배당액		
당 기 순 이 익 (또는 손실)	1,234	

09 현금흐름표

☞ P. 계정과목은 부록 5. 178쪽 참조

○ 작성 대상

㈎ 외부감사 대상업체	(필수)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업체 : 185쪽 참조
㈏ ㈎이외의 업 체	(선택)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흐름표를 제출한 업체 ※ 현금흐름비율을 평가하는 입찰(지자체 100억 이상 적격심사)에 참가하려는 자

○ 현금흐름표 입력시 아래 그림 참조하여 입력

① 계정과목증감으로 표시된 현금흐름표의 경우

– 현금흐름을 입력(계정과목증감의 당기를 입력하는 것이 아님)

과 목	계정과목증감(재무상태표)			실적신고 프로그램 입력
	당 기	전 기	증감액	현금흐름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당기순이익(손실)	입력X			입력O

② 현금흐름표 당전기 비교식

과 목	현금흐름표	
	당 기	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당기순이익(손실)	입력O	

※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현금유입을 영업활동의 현금유입으로 작성하여 제출시 반려될 수 있음

10 국내(개별)완성공사원가명세서

① **대 상** : 총공사금액 : **3억원**(VAT 제외) **이상**(자기공사 포함)
※ 공동수급체인 경우 : 총공사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기 간** : **2022년도**에 완성된 공사

- 착공일에 관계없이 2022년 완성된 공사
- 장기계속공사는 총차수가 모두 끝나는 년도에 전체금액 입력

③ **입력방법**

<table>
<tr><td>**입력 기준(unit)**</td><td>3억이상 대상공사를 현장별로 입력</td></tr>
<tr><td>**(착공일)/(준공일)**</td><td>(최초 착공일) / (2022년 ○○월 ○○일)로 구분 기재</td></tr>
<tr><td>**금액**</td><td>전체공사기간에 대한 총 공사원가금액/총공사금액 기재</td></tr>
<tr><td>**공종 세분류**</td><td>Ⅳ부록 – 2. 발주자 분류/세분류 해설 (132쪽 참조)</td></tr>
<tr><td>**발주자 분류**</td><td>
<table>
<tr><th>코드번호</th><th>발주기관</th><th>코드번호</th><th>발주기관</th></tr>
<tr><td>1</td><td>중앙정부기관</td><td>4</td><td>공공단체</td></tr>
<tr><td>2</td><td>지방자치단체</td><td>5</td><td>주한외국기관</td></tr>
<tr><td>3</td><td>공기업</td><td>6</td><td>민 간</td></tr>
</table>
※ 발주자 분류코드가 1, 2, 3, 4 경우 프로그램 입력화면에 “7.예정가격”입력란이 생성되므로 해당사항에 표시하여 제출 / 민간공사 예정가격 입력 불필요
</td></tr>
<tr><td>**주요 계정과목**</td><td>건설공사원가명세서(No.15) 주요 계정과목 (176쪽 참조)
※ 입력값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유의</td></tr>
<tr><td>**노무비**</td><td>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하여 입력
※ 조달청 제비율 산정시 참고가 되는 자료</td></tr>
<tr><td>**노무비**</td><td>- **직접노무비** :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게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 **간접노무비** :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 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 (대부분 외주한 경우) 외주업체 관리를 위한 현장소장, 각종 비용 지급 등 현장 사무실 인력, 청소원 등이 간접노무비에 해당</td></tr>
<tr><td>**발주자 공급자재**</td><td>- 재료비에 포함시키지 말고 개별원가명세서 하단에 동 자재가격을 각각 기재함</td></tr>
</table>

11 건설업조사표

주의사항

① (타산업(건설업 이외) 겸업업체) **건설업부문만 분리 작성**

※ 자세한 사항은 건설업조사 홈페이지(http://kostat.go.kr/) 참조 요망

② **건설관련 모든 등록업종***의 2022년도 매출액 기준

* 건설관련 모든 등록업종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도 포함

③ (해외건설등록 업체) 국내공사와 해외공사를 구분하여 별개의 조사표와 실적신고서를 각각 작성

입력방법(결산사항 - 국내)

※ 좌측 메뉴의 [건설업조사표(국내)]를 클릭

☆ **상시 종업원수 필수 기입사항(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산출 등 「건설업경영분석」 통계반영**

① 종사자 수

- 해당업체에 고용되어 현장 또는 현장이외의 장소에서 **건설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함

  ※ 개인사업체의 경우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

- (타산업(건설업 이외) 겸업업체) **건설업부문만 분리 작성**

  ※ 분리가 불가능할 때는 총매출액과 건설공사 매출액의 비율로 배분

- 경영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공동경영자 또는 주주) **불포함**

- (**하도급업체의 종사자)** 원도급업체의 종사자에 **불포함**

② 종사자 구분

구 분		내 용
① 상용 상 시 종사자	사무 및 기 타 종업원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 사환,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건설장비 운전사는 기능공에 포함) 및 청소원을 포함 • 일당 급여 방식에 따라 1년 이상 고용된 상근 사무보조원 포함 • 사업체의 유급임원(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 단, 무급 비상근 임원은 제외
	기술인	각종 건설과 관계된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등재 기술인(기술자) 중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또는 학력·경력 소지자 ※ 공사기획, 설계, 감독업무 수행자
	기능공	1년이상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실제의 취업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정액 급여를 받는 현장근로 종사자, 1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진 통칭 숙련공
②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1년 미만의 고용 계약으로 실제의 취업일수(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잡부, 인부, 단순노무자 등을 포함한 현장근로 종사자 -「소득세법상의 일용임금지급조서」를 작성하는 대상자 - 기업체의 상용 종업원으로 고용되지 않고 일고(日雇)로 고용된 기능공 ※ 상용에 나열된 모든 직종(사무 및 기타종업원, 기술인, 기술공, 기능공 등)의 종사자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분류

구 분	내 용
③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건설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 ※ 사업자형태가 개인인 경우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반드시 기입되어야함 ○ **자영업자** :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자기 혼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개인기업체는 경영자 모두 자영업자로 조사 - 법인 사업체의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닌 상용종사자로 분류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동일가구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사람 -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상시 근무에 종사하고, 이에 대한 임금 또는 봉급의 형식으로 급여를 받는 자는 상시 종사자의 해당 부문(상용 또는 임시근로자)에 포함

③ 종사자수 조사요령

㈎ 상용종사자 : 월평균 종사자 수*를 기입

* 월평균 종사자 수 : 조사대상기간(2022.1.1.~2022.12.31.)의 상용종사자수 합계 ÷ 조업월수

<월평균 상용종사자 수 예시1>

명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용직	152	12	14	13	11	18	17	10	9	11	13	12	12

▶ 조사 대상 기간(12개월)에 이직, 채용 등이 발생하여 월별로 고용한 직원의 합계 152명을 조업월 수(12개월)로 나누고 반올림

▶ 계산식 : 152 ÷ 12 = 12.6명 → 13명

<월평균 상용종사자 수 예시2> : 7월 신규업체인 경우, 합병제외

명	총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용직	67	10	9	11	13	12	12

▶ 조사 대상 기간 월별로 고용한 직원의 합계 67명을 조업월 수(6개월)로 나누고 반올림

▶ 계산식 : 67 ÷ 6 = 11.1명 → 11명

※ **연간 조업월수** : 당업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상용근로자가 조업한 개월수·최소한 상용 종사자가 월간 1주일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만 조업월수에 포함

㈏ 임시 및 일용종사자 : 연간투입 연인원(연간투입일수)

▶ 조사 대상기간(2022.1.1. ~ 2022.12.31.) 1년동안 매일매일 현장에 투입한 임시 및 일용종사자의 투입일수를 합계한 총투입일수를 기입

※ 연인원 :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과 소요된 일수를 하루에 끝내는 것으로 가정하여 환산한 총인원수

※ 연간급여액 ÷ 평균일당 = 연간투입인원수(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임시 및 일용종사자 연간투입 연인원 예시1>

명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용직	420	15	15	40	100	50	40	20	20	30	60	20	10

▶ 조사대상 기간에 조업월수(12개월) 동안 채용한 임시직 합계를 기입

▶ 4월의 임시종사자의 연인원 계산 예시
- 2명은 10일 근무, 5명은 16일 근무했을 때 : (2명 × 10일) + (5명 × 16일) = 100명
  ※ 동일한 방법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파악하여 모두 합산

▶ 계산식 : 420명 = 15 + 15 + 40 + 100 + 50 + 40 + 20 + 20 + 20 + 30 + 60 + 20 + 10

<임시 및 일용종사자 연간투입 연인원 예시2> : 7월 신규업체인 경우, 합병 제외

명	총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용직	67	10	9	11	13	12	12

▶ 조사 대상 기간에 신규 업체가 나타난 경우 7월부터 고용한 직원의 합계 67명 기입

▶ 계산식 : 67명 = 10 + 9 + 11 + 13 + 12 + 12

주의사항

- 피고용자에는 장기결근자(3개월이상), 군복무자는 제외되며, 외국인은 국내공사에는 포함하고 해외공사분에는 제외함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업체의 종사자수는 제외
- 겸업사업체 : 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건설업부문 종사자만을 분리하여 기입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는 총매출액과 건설매출액의 비율로 배분)
- 임시종업원은 상용고와 반드시 구분·조사함(소수점이하는 1명으로 처리)

④ 연간급여 및 임금

- **급여** : 공사원가 및 일반관리 부문에서 발생한 제반 급여
  - 조사기준 기간 중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급여
  - 현금(봉급, 임금, 상여금, 각종수당, 생계보조비 등)
  - 현물로 지급된 것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포함

- **연간급여액 :** 종업원 구분별로 연간지급한 급여총액(상여금 등 각종 수당 포함)으로 업체에서 부담한 총액을 기입

  ※ 피고용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보험료, 적립금 등을 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를 업체에서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이 부담액을 급여액에 가산(복리후생비 제외)

- 2022년 전에 체불된 급여를 2022년 중에 지급한 경우 제외

  ※ 2022년도에 체불된 급여 포함

- 해외현장의 국내인의 급여액 포함

  ※ 외국에서 현지 고용한 외국인 피고용자의 급여는 제외시키고, 이는『3항의 매출액 및 건설비용의 (3)건설비용의 ⑬기타 영업비용』에 포함

⑤ 매출액 및 건설비용

※ 이 조사에서 흑백 처리된 부문은 전산처리하므로 기입하지 않으며 (5)납부부가가치세만 입력

- **납부부가가치세** :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 **건설부문납부부가가치세** : 건설업과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납부부가가치세를 기입

예시

[A업체의 2022·2023년 분기별 부가가치 납세액]

	2022.1	2022.4	2022.7	2022.10	2023.1
부가세 **납입액**	~~10억원~~	8억원	5억원	9억원	12억원
부가세 **환급액**	~~2억원~~	1.6억원	1억원	1.8억원	2.4억원
실제 부가세	~~8억원~~	6.4억원	4억원	7.2억원	9.6억원

※ 2022년 1월 납세분은 2021년 4분기 과세분이므로 미포함하고 2023년 1월 납세분은 2022년 4분기 과세분이므로 포함

부가가치세 합계 : 27.2억원 = 6.4억원 + 4억원 + 7.2억원 + 9.6억원

입력방법(결산사항 - 해외)

※ 좌측 메뉴의 [건설업조사표(해외)]를 클릭, 국내결산사항을 참조하여 해외결산사항을 입력

3 내용확정 및 출력, 서류제출

내용확정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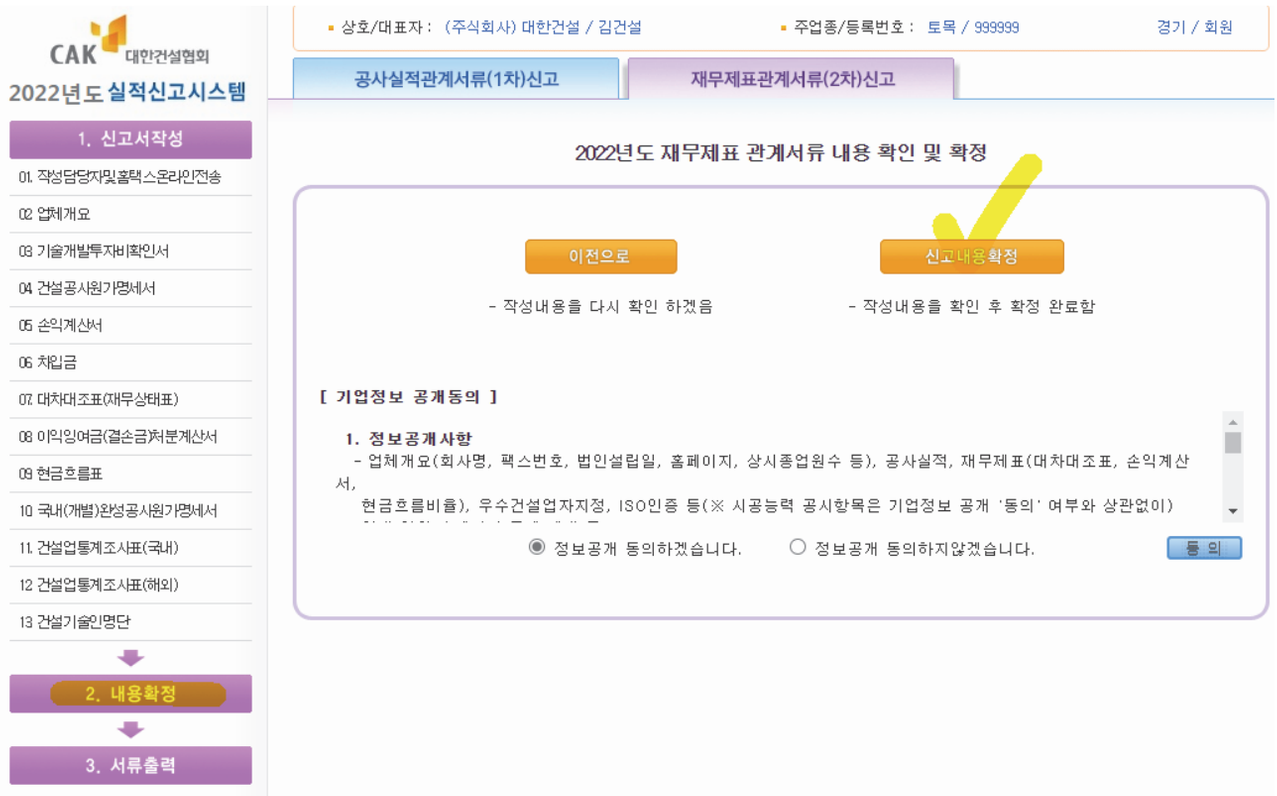

① 재무제표 작성 후 좌측의 **[내용확정] 버튼 클릭**

② 재무제표 신고현황 최종 확인 후 "**신고내용 확정**" 버튼 클릭

③ 신고내용 확정 후 실적신고 관계서류를 신고기한 내(4월 17일까지)에 접수처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도착해야 재무제표(2차) 신고 완료

신고서류 출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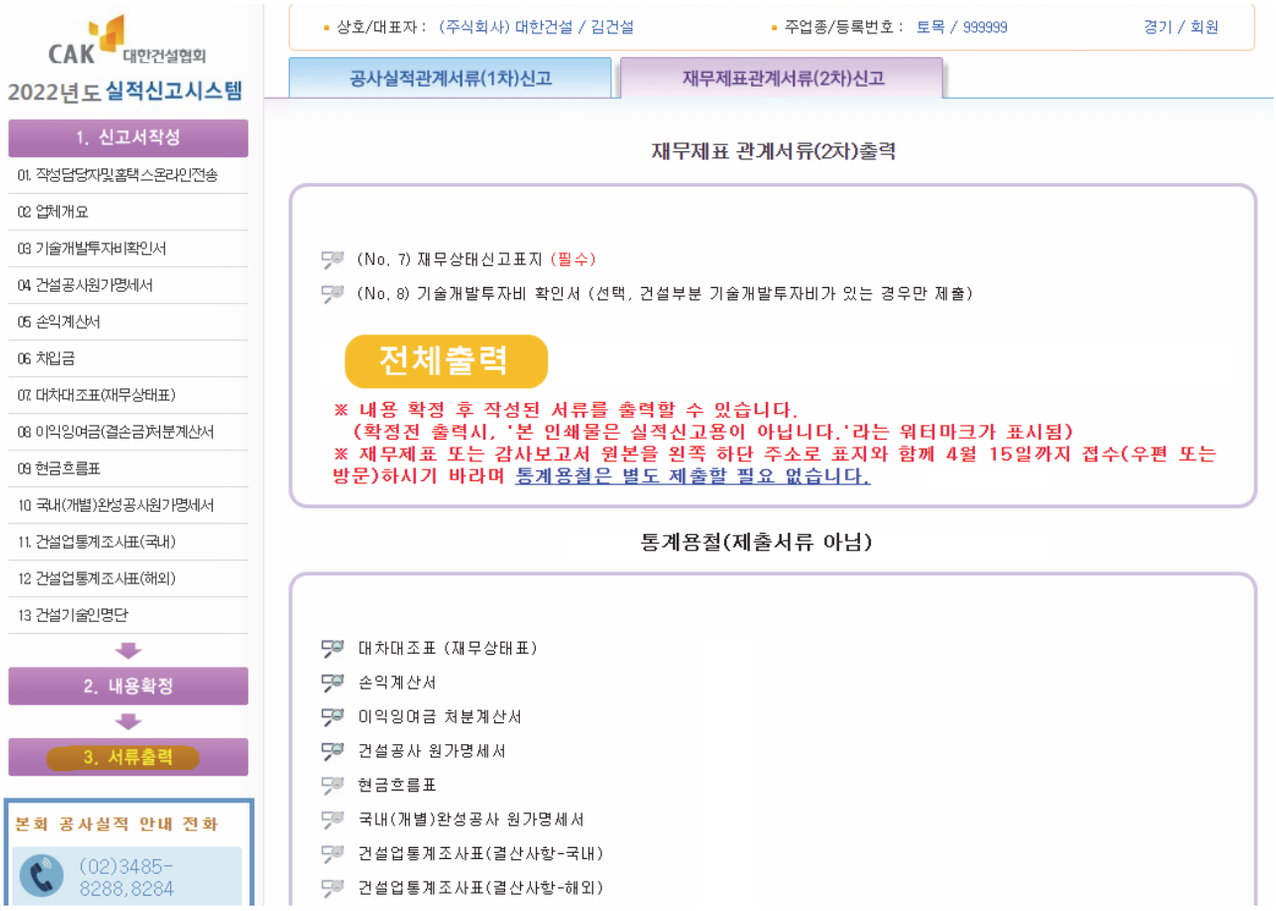

-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출력 "**전체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류 출력

※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는 입력 저장된 값이 있는 경우에만 전체출력에 포함하여 출력됨

※ 통계용철은 제출서류가 아님. 출력이 필요한 경우 좌측 돋보기아이콘 클릭

서류접수 하기(2차 신고하기)

필수	2022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 (Ⅱ) 표지 (서식 : No.7)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외부감사 대상업체) 재무제표확인원(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

선택	현금흐름표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매출액구분확인서
	차입금구분확인서

☞ 제출서류 목록 세부내용 : 87쪽 참조

※ 출력물 중 통계용철은 제출하지 않음(전산입력만으로 완료)

○ 실적신고 관계서류를 신고기한 내(4월 15일까지)에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 9쪽 참조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서 우측 상단에 인쇄된 "**고유번호**"를 우편**봉투**에 그대로 기재

Creating Advanced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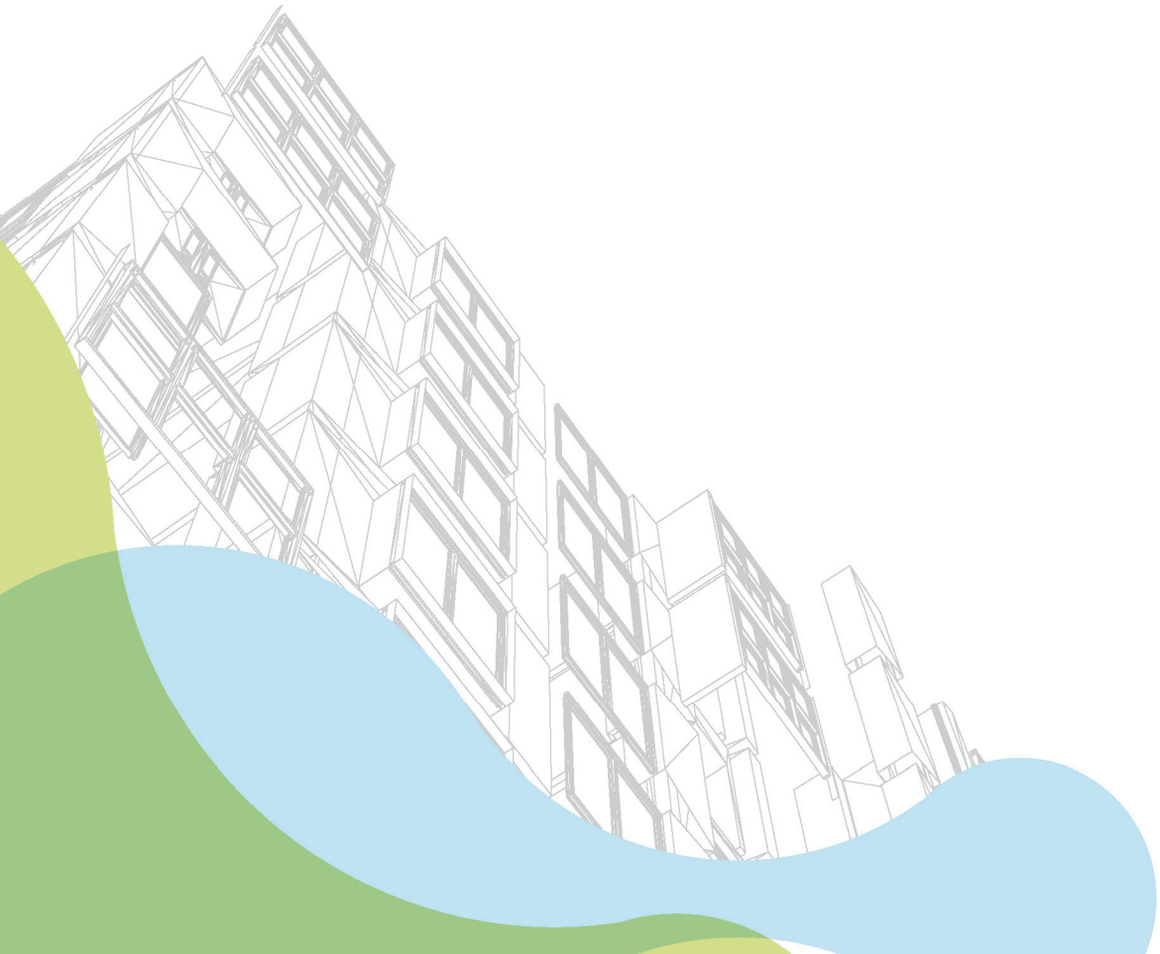

2022년도
실적신고

Ⅲ. 실적신고 이후 해야 할 일

1. 1차 실적신고 이후 해야 할 일
2. 2차 실적신고 이후 해야 할 일

1 1차 실적신고 이후 해야 할 일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사항

○ 1차 실적신고 기간내(2023. 2. 1. ~ 2. 15.)에 서류를 접수한 경우

⇒ 서류접수 여부 **확인**
(우편접수의 경우 도착일로부터 약 2 ~ 3일 후 확인 가능)

< 서류접수 여부 확인절차 >

①	실적신고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접속 및 로그인
②	"접수여부 확인" 클릭
③	실적신고 접수 여부 확인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사항

기성실적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증빙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서류는 실적신고시 입력한 작성담당자의 핸드폰(카카오톡 또는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됨

※ 작성담당자 변경시 협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 보완서류는 실적신고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 및 서류 업로드 가능

○ 보완사항이 여러 건인 경우 대표적인 1건의 공사에 대해서만 이메일 통보되는 경우도 있으니 실적신고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전체 보완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서류 업로드 요망

○ 보완사항은 기성실적이 확정되기 전까지 통보될 수 있음

○ 신고한 내용과 평가결과가 동일한지 "평가결과 확인기간" 동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기간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 평가결과 확정)

⇒ 공사실적 평가결과 확인 : 5월 15일 ~ 19일(예정)

※ 결과는 개별 안내하지 않으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보완서류의 예시

기성실적 증명서	-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본을 제출한 경우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가 아닌 다른 서식을 제출한 경우 - 증명서에 발주자 날인이 누락되거나 상이한 경우 - 증명서의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다른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지 않거나 세무대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합계표에 간인이 누락되거나 사본을 제출한 경우 - 합계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발주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민등록발행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주민등록발행분이 개인별이 아닌 전체 금액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발주자 개인별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기재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표시)을 함께 제출

2 2차 실적신고 이후 해야 할 일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사항

○ 2차 실적신고 기간내(2023. 4. 3. ~ 4. 17.)에 서류를 접수한 경우

⇒ 서류접수 여부 **확인**
(우편접수의 경우 도착일로부터 약 2 ~ 3일 후 확인 가능)
☞ 확인절차 112쪽 참조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사항

2차 실적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서류는 2차 실적신고시 작성한 작성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핸드폰(SMS : 카카오톡)으로 통보됨
※ 작성담당자 변경시 협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 보완서류는 실적신고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 및 서류제출 가능

○ 보완사항은 경영상태가 확정되기 전까지 통보될 수 있음

○ 신고한 내용과 평가결과가 동일한지 "평가결과 확인기간" 동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기간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 평가결과 확정)

⇒ 경영상태 평가결과 확인 : 6월 12일 ~ 16일(예정)
시공능력 평가요소 확인 : 7월 10일 ~ 14일(예정)
※ 결과는 개별 안내하지 않으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보완서류의 예시

감사보고서	-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한 경우 포함) - 감사보고서(손익계산서)의 건설매출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구분확인서 제출(협회 양식 : 214쪽 참조)
재무제표 확 인 원	-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포함) -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확인원에 간인이 누락되거나 사본을 제출한 경우 - 연도비교식이 아닌 당기의 재무제표만 제출한 경우 - 재무제표(손익계산서)에 건설매출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구분확인서 제출(협회 양식 : 214쪽 참조)
현금흐름표	-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현금흐름표에 간인이 누락되거나 사본을 제출한 경우 - 연도비교식이 아닌 당기의 현금흐름표만 제출한 경우 - 직전년도 회계기간 전부(1년)가 아닌 반기, 분기, 월로 현금흐름표가 작성된 경우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간인이 누락되거나 사본을 제출한 경우 - 확인자의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세무사의 확인을 받았으나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증명발급을 받기 원하는 경우

Creating Advanced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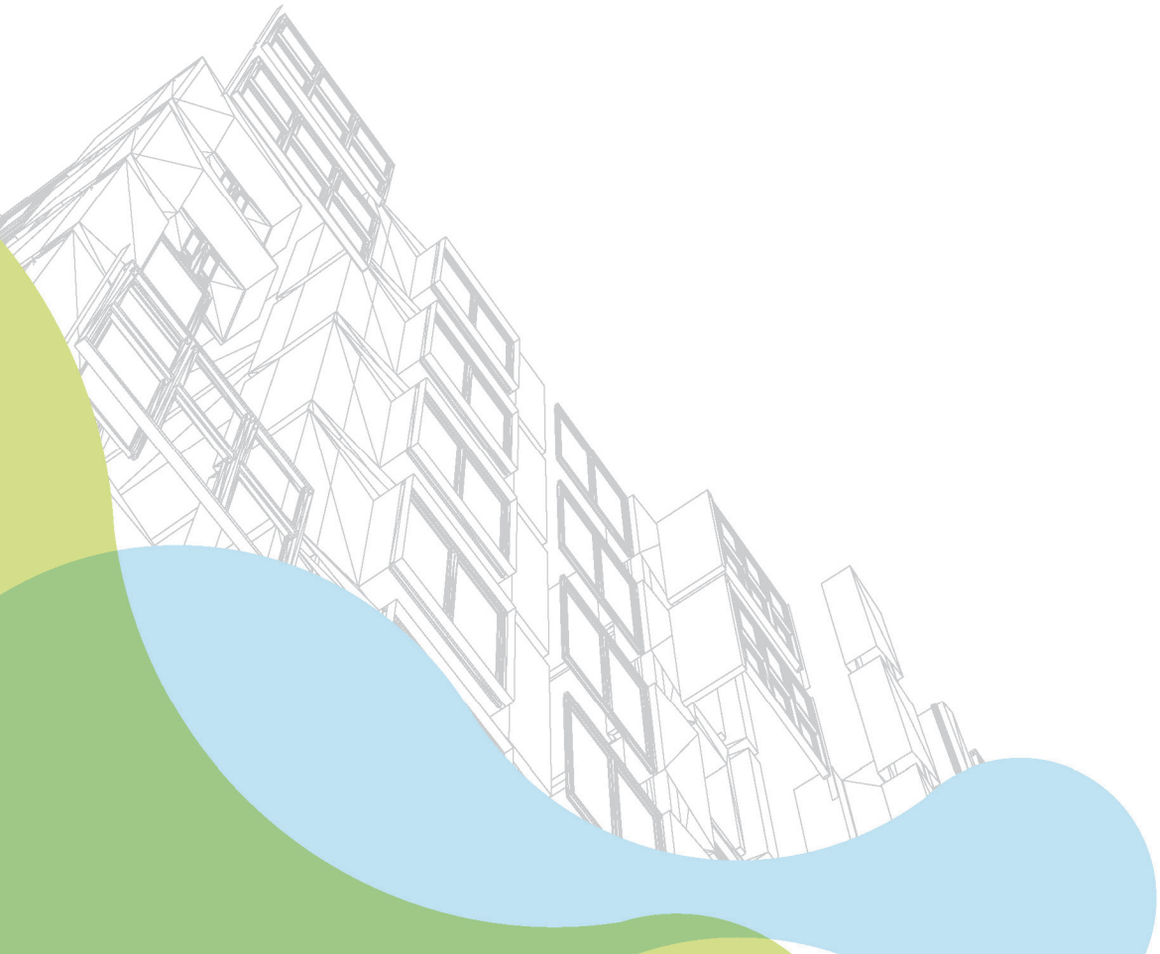

2022년도

실적신고

Ⅳ. 부 록

1. 시공능력평가 관련 규정
2. 발주자 (분류/세분류) 해설
3. 공사유형[신설/유지보수] 판단 요령
4. 공 종 (분류/세분류) 해설
5. 건설기술인 분류
6. 재무제표 계정과목 해설
7. 교재 주석 해설
8. 서식 모음

부록1 시공능력평가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삭제<1999. 4. 15.>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

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 또는 하도급공사의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의 서류만 해당한다.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착공신고증명서 또는 사용승인서

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해외건설촉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바.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사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건설공사 직접시공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나. 삭제 <2011.11.3>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4.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5.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표(건설업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및 주력분야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주요 공사 종류별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ㆍ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건설기술인 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법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체불 이력 및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상속인,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

⑥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법 제82조의2제3항 및 제8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⑦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이후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도가 발생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⑧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시공능력의 공시일 전까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재평가받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은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경우

⑩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의2,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1.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한정한다)이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시공한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삭제<2007. 12. 31.>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4의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 6. 삭제<2011. 11. 3.>

6의2.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6의3. 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6의4.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6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수급인이 해당 발주자가 구입한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한 경우

⑪ 제4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업등록번호

4.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5. 건설업종별·주력분야별·주요 공사 종류별 건설공사실적 및 건설업종별 직접시공실적

6. 보유기술인수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일간신문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건설사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12. 3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
+(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1)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할 때에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

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2)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할 때에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이 새로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4)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100

(1)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평점 + 이자보상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5

(나) 위 경영평점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 · 이자보상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는 때에는 0으로 하고, 0 미만인 때에는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 ×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수 × 30/100)
+ (퇴직공제납입금×10)
+ 최근 3년 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에 따라 산정한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은 종합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기술인은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으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인 수에 1, 중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인 수에 1.1

5, 고급기술인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인 수에 1.3,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인 수에 1.5, 그 밖의 기술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 중 기술사ㆍ기사 및 산업기사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인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다)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최초 건설업 등록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다목(1)(나)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가 최초로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한정하여 그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4)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 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에 따른 등록한 협력업

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나) 평가결과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 평가결과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라) 평가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뺀다.

(4)「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인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뺄 수 있다.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사업자의 평균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7) 삭제 <2021. 8. 31.>

(8)「해외건설촉진법」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한다.

(다)「해외건설촉진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외건설협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외건설협회의 장은 출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9)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거짓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11)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사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인 1명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가산하는 금액은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13) 평가년도의 직전 연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4)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구분	고용평가단위	고용평가등급	가산비율
종합건설업체	종합건설업체 전체	1등급	5/100
		2등급	4/100
		3등급	3/100

(15) 건설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6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발주한 공사(이하 "민간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일체형 작업발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제6절에 따른 시스템 비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일체형 작업발판 등의 설치 사실에 대한 감리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국내 민간공사의 신규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현장 수 대비 일체형 작업

발판의 설치현장 수 비율(이하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라 한다)이 3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사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토목분야 및 건축분야에 대한 평가 시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은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부록2 발주자 (분류/세분류) 해설

발주자 구분

구 분	내 용
공 공 (公 共)	- **국 가** (133쪽 참조) - **지방자치단체** (134쪽 참조) · 광역 지자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도 · 기초 지자체 : 시·군·구(읍·면·동 포함) · 지방자치단체 속한 본부 : 상하수도사업본부, 건설사업본부 등 - **공 공 기 관** (135쪽 참조)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민 간 (民 間) (144쪽 참조)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자연인) - 개인/법인 사업자 -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사립 초·중·고등학교, 사립대학) - 협동조합(농협, 수협, 축협) - 상법상의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무한회사) - 재단법인, 사단법인, 민간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민자사업 ※ BTL, BTO, BOT, BOO 등의 민자사업 - 시중은행, ㈜KT
기 타	- **주한외국기관** : 주한외국군부대, 외국상사, 주한외국공관 등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관 - **해외외국기관** : 해외에서 발주된 공사

공공 발주자 분류 및 해설

(가) 국가 : 행정각부와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헌법재판소 포함) 등

분류번호	발 주 자	분류해설
0101	기 획 재 정 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위의 산하기관
0102	행 정 안 전 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서, 지구대(해양경찰청·서 제외) •소방청(소방서 제외) √ 광역자치단체(특별·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도, 도)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포함) 제외
0103	법 무 부	•법무부, 검찰청, 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국립병무병원,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법무연수원 등
0104	교 육 부	•교육부 및 그 산하기관 •병설유치원, 국립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제외 √ 사립유치원, 사립초·중·고등학교, 사립대학(교) 제외 √ 시립·도립 학교 제외
01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및 그 산하기관
010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그 산하기관
010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및 그 산하기관
0109	환 경 부	•환경부 •기상청
0110	보 건 복 지 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그 신하기관
0111	고 용 노 동 부	•고용노동부 및 그 신하기관

분류번호	발 주 자	분류해설
0112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및 그 산하기관
0114	국 방 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군부대
0199	기 타	•위의 행정각부(산하기관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청 등 •입법부(국회) 및 사법부(법원, 헌법재판소 포함) 등

(나) 지방자치단체

○ 광역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도(道)

○ 기초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읍·면·동 포함)

○ 지방자치단체 속한 본부·사업단·사업소 : 상하수도사업본부, 건설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예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등

○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립(市立)·도립(道立) 학교

√ 병설 유치원, 국립(國立) 초·중·고등·대학교 제외 ⇒ 교육부

√ 사립(私立) 유치원·초·중·고등·대학교 제외 ⇒ 민간

○ 소방서

(다)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함

○ 공기업 : 시장형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말함

분류번호	발 주 자	분류 해설
0303	한국도로공사	
0304	한국수자원공사	
0306	한국전력공사	
0307	한국가스공사	
0308	한국농어촌공사	
0309	인천국제공항공사	
0310	인천항만공사	
0311	한국공항공사	
0312	부산항만공사	
03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314	여수광양항만공사	
0315	한국토지주택공사	
0390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140쪽 참조)
0399	기타공기업	시장형공기업(16) 또는 준시장형공기업(20) 중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공기업 (136쪽 참조)

○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분류번호	발 주 자	분류 해설
21010399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13),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83), 기타공공기관(218) (136쪽 참조)

⊙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2. 1. 28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5)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1)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1)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1)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수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 (220)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20)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엠씨에스㈜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20)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 지방공기업 현황 (2022. 9. 30 기준, 출처 :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지역	구분	유형	수	기관명
서울	광역	직영	2	서울특별시상수도, 서울특별시하수도
		공사	4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공단	2	서울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초	공단	24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부산	광역	직영	2	부산광역시상수도, 부산광역시하수도
		공사	3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공단	3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기초	공단	2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대구	광역	직영	2	대구광역시상수도, 대구광역시하수도
		공사	2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공사
		공단	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기초	공단	1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인천	광역	직영	3	인천광역시상수도, 인천광역시하수도,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공사	3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공단	2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기초	공단	8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광주	광역	직영	2	광주광역시상수도, 광주광역시하수도
		공사	3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공단	1	광주환경공단
	기초	공단	1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대전	광역	직영	2	대전광역시상수도, 대전광역시하수도
		공사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관광공사
		공단	1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울산	광역	직영	2	울산광역시상수도, 울산광역시하수도
		공사	1	울산도시공사
		공단	1	울산시설공단
	기초	공단	4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지역	구분	유형	수	기관명
세종	광역	직영	3	세종특별자치시상수도, 세종특별자치시하수도, 세종특별자치시공영개발
		공사	1	세종도시교통공사
		공단	1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경기	광역	직영	2	경기도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경기도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사	4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기초	직영	68	수원시상수도, 성남시상수도, 고양시상수도, 부천시상수도, 용인시상수도, 안산시상수도, 안양시상수도, 남양주시상수도, 의정부시상수도, 평택시상수도, 시흥시상수도, 화성시상수도, 광명시상수도, 파주시상수도, 군포시상수도, 광주시상수도, 김포시상수도, 이천시상수도, 구리시상수도, 양주시상수도, 안성시상수도, 포천시상수도, 오산시상수도, 하남시상수도, 의왕시상수도, 동두천시상수도, 과천시상수도, 여주시상수도 양평군상수도, 가평군상수도, 연천군상수도
				수원시하수도, 성남시하수도, 고양시하수도, 부천시하수도, 용인시하수도, 안산시하수도, 안양시하수도, 남양주시하수도, 의정부시하수도, 평택시하수도, 시흥시하수도, 화성시하수도, 광명시하수도, 파주시하수도, 군포시하수도, 광주시하수도, 김포시하수도, 이천시하수도, 구리시하수도, 양주시하수도, 안성시하수도, 포천시하수도, 오산시하수도, 하남시하수도, 의왕시하수도, 동두천시하수도, 과천시하수도, 여주시하수도, 양평군하수도, 가평군하수도, 연천군하수도
				성남시공영개발, 의정부시공영개발, 시흥시공영개발, 안성시공영개발, 의왕시공영개발, 과천시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공사	22	수원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천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군포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김포도시공사 +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포천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양평공사
		공단	9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파주도시관광공사(파주시시설관리공단 + 파주도시관광공사),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여주도시관리공단,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강원	광역	직영	-	
		공사	1	강원도개발공사
	기초	직영	23	춘천시상수도, 원주시상수도, 강릉시상수도, 동해시상수도, 태백시상수도, 속초시상수도, 삼척시상수도, 홍천군상수도, 영월군상수도, 평창군상수도, 정선군상수도, 철원군상수도, 인제군상수도, 고성군상수도, 양양군상수도
				춘천시하수도, 원주시하수도, 강릉시하수도, 동해시하수도, 속초시하수도
				춘천시공영개발, 원주시공영개발, 강릉시공영개발
		공사	2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공단	6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충북	광역	직영	-	
		공사	1	충북개발공사
	기초	직영	17	청주시상수도, 충주시상수도, 제천시상수도, 옥천군상수도, 영동군상수도, 진천군상수도, 음성군상수도, 단양군상수도
				청주시하수도, 충주시하수도, 제천시하수도, 옥천군하수도, 증평군하수도, 진천군하수도, 음성군하수도
				충주시공영개발, 음성군공영개발
		공단	3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관리공단,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지역	구분	유형	수	기관명
충남	광역	직영	-	
		공사	1	충청남도개발공사
	기초	직영	30	천안시상수도, 공주시상수도, 보령시상수도, 아산시상수도, 서산시상수도, 논산시상수도, 계룡시상수도, 당진시상수도, 금산군상수도, 부여군상수도, 서천군상수도, 홍성군상수도, 예산군상수도, 태안군상수도
				천안시하수도, 공주시하수도, 보령시하수도, 아산시하수도, 서산시하수도, 논산시하수도, 계룡시하수도, 당진시하수도, 금산군하수도, 부여군하수도, 홍성군하수도, 예산군하수도, 태안군하수도
				천안시공영개발, 아산시공영개발, 계룡시공영개발
		공사	1	당진항만관광공사
		공단	4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전북	광역	직영	-	
		공사	1	전북개발공사
	기초	직영	17	전주시상수도, 군산시상수도, 익산시상수도, 정읍시상수도, 남원시상수도, 김제시상수도, 완주군상수도, 고창군상수도, 부안군상수도
				전주시하수도, 군산시하수도, 익산시하수도, 정읍시하수도, 남원시하수도, 김제시하수도, 완주군하수도
				익산시공영개발
		공사	1	장수한우지방공사
		공단	1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남	광역	직영	-	
		공사	1	전남개발공사
	기초	직영	19	목포시상수도, 여수시상수도, 순천시상수도, 나주시상수도, 광양시상수도, 화순군상수도, 영암군상수도, 영광군상수도
				목포시하수도, 여수시하수도, 순천시하수도, 나주시하수도, 광양시하수도, 화순군하수도, 영암군하수도, 영광군하수도
				목포시공영개발, 순천시공영개발, 광양시공영개발
		공단	1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경북	광역	직영	-	
		공사	2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기초	직영	28	포항시상수도, 경주시상수도, 김천시상수도, 안동시상수도, 구미시상수도, 영주시상수도, 영천시상수도, 상주시상수도, 문경시상수도, 경산시상수도, 의성군상수도, 영덕군상수도, 칠곡군상수도, 울진군상수도, 예천군상수도
				포항시하수도, 경주시하수도, 김천시하수도, 안동시하수도, 구미시하수도, 영주시하수도, 영천시하수도, 상주시하수도, 문경시하수도, 경산시하수도, 영덕군하수도, 칠곡군하수도, 예천군하수도
		공사	2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공단	7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영천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지역	구분	유형	수	기관명
경남	광역	직영	-	
		공사	1	경상남도개발공사
	기초	직영	27	창원시상수도, 진주시상수도, 통영시상수도, 사천시상수도, 김해시상수도, 밀양시상수도, 거제시상수도, 양산시상수도, 함안군상수도, 창녕군상수도, 거창군상수도, 합천군상수도, 고성군상수도
				창원시하수도, 진주시하수도, 통영시하수도, 사천시하수도, 김해시하수도, 밀양시하수도, 거제시하수도, 양산시하수도, 창녕군하수도, 거창군하수도, 고성군하수도
				창원시주택건설, 진주시공영개발,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공사	4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공단	7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제주	광역	직영	3	제주특별자치도상수도,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
				제주특별자치도공영버스
		공사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민간(民間) 발주자

① 비사업자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분류부호	발 주 자	분류해설
1100	비사업자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음

② 사 업 자 :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법인 사업자

(가) 제조업

분류부호	발주자	분류해설
1101	음료	• 알콜음료 제조업 •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02	담배	• 담배 제조업
1103	섬유제품(의복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104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 봉제의복 제조업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편조의복 제조업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105	가죽, 가방 및 신발	•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1106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 제외)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나무제품 제조업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10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 펄프, 종이 및 판지제조업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10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인쇄 및 인쇄 관련 산업 • 기록매체 복제업

분류부호	발주자	분류해설
110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 석유 정제품 제조업(원유 정제처리업,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1110	화합물질·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화학섬유 제조업
111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 고무제품 제조업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차 플라스틱제품,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포장용 플 라스틱제품, 기타)
1112	비금속 광물제품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업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13	1차 금속	• 1차 철강 제조업(제철,제강및합금철)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비철금속,동,알루미늄,연,아연등 제련,정련 및 합금) • 금속 주조업 (철강,선철주물,강주물,비철금속,알루미늄주물,동주물,기타)
1114	금속가공제품 (기계·가구제외)	• 구조용금속제품,탱크및증기발생기제조업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그외 기타)
1115	기타 기계 및 장비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내연기관 및 터빈, 유압기기, 펌프·압축기, 베어 링·기어및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노및노용 버너, 산업용 트럭·승강 기및물품취급장비, 냉각·공기조화·여과·증류및가스발생기, 사무용 기계 및 장비, 기타)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농업 및 임업용 기계, 가공공작기계,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등)
1117	전기장비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장치 제조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 가정용 기기 제조업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118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마크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분류부호	발주자	분류해설
1119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11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부품 제조업
1121	기타 운송장비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철도장비 제조업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모터사이클, 그 외)
1122	가구 제조업	•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 목재가구 제조업 • 기타 가구 제조업(금속 가구, 그 외 기타)
1124	식료품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기타 식품 제조업
1125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1126	기타 제품 제조업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악기 제조업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간판 및 광고물, 사무 및 회화용품, 가발·장식용 품 및 교시용 모형, 그 외)

(나) 비제조업

분류부호	발주자	분류해설
1201	농림, 임업 및 어업	•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 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영림업, 벌목업, 임산물 채취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 어로 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202	광업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금속 광업(철, 비철금속광업)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광업 지원 서비스업
120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전기업(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사업(생활용수 공급업, 산업용수 공급업)
1204	도매 및 소매업	•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상품 중개업(산업용 농축산물, 산동물, 음·식료품 및 담배) •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가정용품 도매업 •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 종합 소매업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종합적으로 소매) •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 연료 소매업 •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및 소매업 • 무점포 소매업(통신, 배달, 이동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
1205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업(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숙박업) • 음식점업(일반,기관구내식당업,출장 및 이동)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1206	운수업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육상여객, 도로화물, 소화물운송업) • 해상운송업,내륙수상및항만내운송업 • 정기 항공, 부정기 항공 운송업 • 보관 및 창고업, 기타 운송관련서비스업

분류부호	발주자	분류해설
1201	농림, 임업 및 어업	•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 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영림업, 벌목업, 임산물 채취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 어로 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202	광업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금속 광업(철, 비철금속광업)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광업 지원 서비스업
120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전기업(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사업(생활용수 공급업, 산업용수 공급업)
1204	도매 및 소매업	•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상품 중개업(산업용 농축산물, 산동물, 음·식료품 및 담배) •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가정용품 도매업 •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 종합 소매업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종합적으로 소매) •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 연료 소매업 •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및 소매업 • 무점포 소매업(통신, 배달, 이동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
1205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업(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숙박업) • 음식점업(일반,기관구내식당업,출장 및 이동)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1206	운수업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육상여객, 도로화물, 소화물운송업) • 해상운송업,내륙수상및항만내운송업 • 정기 항공, 부정기 항공 운송업 • 보관 및 창고업, 기타 운송관련서비스업
1207	금융 및 보험업	• 금융업(은행 및 저축기관, 투자기관, 기타) • 보험업, 재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 금융지원,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1208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 운송장비 임대업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무형재산권 임대업

분류부호	발주자	분류해설
1209	건설업	• 건축 건설업(주거용, 비주거용) • 토목 건설업(지반조성, 교량, 터널, 댐 등 토목시설)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전기 및 통신 공사업(토목 및 건축관련)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건설장비 운영업
121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경비, 경호 및 탐정업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1211	교육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국립, 공립 제외) •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일반 교습 학원 • 기타 교육기관 • 교육지원 서비스업
121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 보건업 • 사회복지사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213	협회및단체,수리 및기타개인서비스업	• 산업,노동 및 전문가단체 또는 조합 • 연합회, 종교 및 정치 및 기타협회 및 단체 • 기계 및 장비수리업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이용·미용업, 욕탕·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세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개인간 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121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환경복원업	• 하수및폐수처리업 • 분뇨및축산분뇨처리업 •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처리업 • 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 환경정화및복원업
1218	출판,영상,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업	• 출판업(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 방송업(라디오,텔레비전방송업) • 통신업(우편업,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분류부호	발주자	분류해설
12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연구개발업(자연, 과학 및 공학, 인문 및 사회과학) • 법무 관련,회계 및 세무관련,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회사 본부·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수의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그 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2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오락 관련 서비스업 (유원지, 테마파크, 오락장, 수상오락, 갬블링 및 배팅업, 그 외 기타)

부록3 공사유형[신설/유지보수] 판단 요령

※ 본 안내는 실적신고 시 **건설사업자의 공사유형 판단을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 따라서 실적신고 시 건설사업자는 본 안내와 더불어 **입찰공고, 공사내역, 공사내용 등**을 통해 **공사유형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❶ 기본 판단기준

□ (신설)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 (유지보수)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 · 보수 · 보강하는 공사

<유지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 시설물의 **완공 전** 공사

▶ 건축물의 **증축 · 개축 · 재축** 및 **대수선**공사

※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정의는 건축법에 따르며 참고2를 참조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 ·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 · 보강 · 변경**하는 공사

*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주요구조부>

-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 우선 **공사 시점**이 **시설물의 완공 전후**인지 **판단**하고, **완공 전**은 **신설**, **완공 이후**는 **입찰공고 및 공사내역** 등을 통해 **신설인지 유지보수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공사시점에 따른 원 · 하도급 공사유형>

구분		원도급	하도급
공사유형	시설물 완공 이후	신설	신설/유지보수
			신설/유지보수
		유지보수	신설/유지보수
			신설/유지보수
	시설물 완공 전	신설	신설

❷ 세부사례별 판단기준

□ **신설**공사의 **하도급 공사 성격**이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공사**인 경우

⇒ **하도급 공사 시점**이 시설물 **완공 전**인 경우 하도급 공사 성격이 **유지보수공사이더라도 신설**로 판단

> ○ (사례) **아파트 건축공사(신설)**에서 발생한 **타일하자**에 대해 **보수**하는 **하도급 공사**의 경우
>
> - 아파트 **완공 전**이라면 해당 하도급 공사유형은 **신설**이고, **완공 이후**라면 **유지보수**

□ **신설**과 **유지보수**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

⇒ **공사내용, 규모 및 금액** 등을 통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신설인지 유지보수인지**를 **판단**

○ (사례1) **급식실의 증축공사(신설, 2억원)**와 급식실 내 **트렌치 주변 보수 공사(유지보수, 3천만원)**가 같이 발주된 경우

- 급식실 **증축**이 **공사규모 및 금액** 등으로 보아 **주된 공사**이므로 **공사유형**을 **신설**로 보아야함

○ (사례2) **노후화된 역사 보수 및 보강 공사(유지보수)** 내역에 **승강기 교체(신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역사 **보수 및 보강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승강기 교체(신설)**는 이에 필요한 **부대공사**이므로 이 공사는 **유지보수**로 보아야 함

□ 시설물 **완공 이후 기능 유지 및 향상** 등을 위해 **일부**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경우

⇒ **유지보수**로 보아야 하나, 해당부분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거나 공사내용이 **증설·확장** 또는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인 경우는 **신설**

○ (사례1) 건축물의 **주계단**을 **해체**하고 **재시공**하는 경우

-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고, 이는 **대수선** 공사이므로 **신설**

○ (사례2) 화장실 **내부 시설(변기, 세면대 등) 및 타일 등**을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새로 시공 및 설치**하는 경우

- 화장실을 **기능 향상**을 위해 **완공 이후** 전체적으로 **개량 및 보수**하는 공사이므로 신설이 아닌 **유지보수**로 보아야 함

□ **입찰공고**의 **공사유형**이 **실제 공사**와 **다른** 경우

⇒ **발주자**와 **협의**하여 **실제 공사유형**으로 **증명** 받아 신고

○ (사례) 인테리어 공사, 도색공사, 도장공사, 도로보수공사 등 **유지보수공사**임에도 **신설**로 **공고**된 경우

- 이 경우,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의 **'그 밖의 사항'**에 **사유**를 **명시**하고 유지보수로 **발주자 증명**을 받는다면,

- **공고(신설)와 달리 유지보수**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참고1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 사례

신설공사 사례
[마을만들기사업 토목건축공사]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하수관로 교체공사] 기존 하수관로 철거 후 신규 관로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ㅇㅇ주택 건설공사 1공구 중 합성수지제창 제작 및 설치공사]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의 일부에 해당하여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ㅇㅇ초등학교 체육관 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ㅇㅇ공장 건축물 해체공사] 건축물 · 구조물의 **해체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ㅇㅇ상가 엘리베이터 해체 및 설치공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공사에 해당하나 **기계설비를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는 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ㅇㅇ동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공사에 해당하나 공사종류가 **증축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ㅇㅇ교 ㅇㅇ교구 성당 개축공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공사에 해당하나 공사종류가 **개축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ㅇㅇ읍 근린생활시설 재축공사] 건축물 · 시설물을 다시 축조하는 **재축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ㅇㅇ초등학교 본관동 대수선 공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공사에 해당하나 **대수선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유지보수공사 사례
[2022년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 [어린이놀이터 바닥 보수공사], [ㅇㅇ은행 보수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보수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급식실 트렌치 주변 보수보강공사], [ㅇㅇ번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2022년 ㅇㅇ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판단기준 : 완공 이후 시설물을 보수하는 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ㅇㅇ대학교 행정실동 옥상방수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건축물의 **기능보전을 위한 보수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ㅇㅇ시장 청년몰 기초기반조성 구조보강공사], [00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00도로 재포장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시설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ㅇㅇ교육센터 화장실 개량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상복구하기 위한 개량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ㅇㅇ점 한파원상복구공사], [지점 이전에 따른 구점포 원상복구공사] 판단기준 : 자연재해, 사고 또는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완공된 시설물의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ㅇㅇ고등학교 천장교체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시설물의 편의와 완전을 높이기 위해 개량하는 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ㅇㅇ중학교 기숙사 화장실 수선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시설물의 편의와 완전을 높이기 위해 개량·보수하는 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사면보강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해 사면을 보강하는 공사로 유지보수에 해당한다.
[00건물 재도장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구조물의 미적 기능 향상을 위해 개량, 보수하는 공사로 유지보수에 해당한다.

참고2 증축 · 개축 · 재축 및 대수선 정의(건축법령 참고)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

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부록4 공종 (분류/세분류) 해설

토목공사

구분	분류 부호	공 종 세분류	분 류 해 설	공 사 내 용
교통시설	2011	일반도로	국도, 지방도, 시 • 군도, 사설도로, 기타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사설도로, 기타도로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인도, 중앙선분리대, 개설, 증설, 보수공사 포함) 단, 터널, 교량 제외
	2012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용도로 시행하는 공사와 부대(중앙분리대, 중앙선, 개 • 보수, 인터체인지식재 등)되는 공사(터널, 교량, 고가도로 제외)
	2013	고속화도로	고속화도로 (도시고속화도로)	고속화도로공사(도시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와 이에 부대(중앙분리대, 개 • 보수 화단조성 등)되는 공사
	2061	도로교량	차량, 인도용 교량	일반형교량공사, 트러스교공사, 아치교공사, 라멘교공사, 현수교공사, 사장교공사육교 및 연도로공사, P.C교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2062	철도교량	철도용 교량	철도용으로 시공된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일반형교량공사, 트러스교공사, 아치교공사, 라멘교공사, 현수교공사, P.C교공사)
	2211	공항	공항부지조성, 활주로 및 유도로, Gate 및 계류장설치공사 등	- 공항부지조성공사: 공항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이에 부대되는 공사(항공운송터미널제외) - 기타 공항관련 토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2261	도로터널	도로용, 도보용터널	차량통행용 및 도보용으로 시공되는 터널 공사와 이에 부대(절개지보수, 식재 등)되는 공사
	2262	철도터널	철도용터널	철도용으로 시공되는 터널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2311	일반철도	일반철도, 정차장 및 수리시설공사	선로, 선반 등 철도와 철도차량 및 수리시설과 관련한 토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2312	고속철도	고속철도공사	고속화를 위한 고속철도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2313	지하철	지하철, 정차장 및 수리시설공사, 경전철	- 지하철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건축공사제외) - 정차장 및 수리시설과 관련한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구분	분류 부호	공 종 세분류	분 류 해 설	공 사 내 용
수자원시설	2111	댐	댐시설, 취수설비 (다목적댐에 따른 수력 발전소 포함), 하구언공사	용수공급댐공사, 수력발전댐공사(건축공사제외), 홍수조절댐공사, 다목적댐공사, 하구언공사 및 이에 부대 되는 공사
	2162	항만	항만, 인공섬축조, 요항, 계류시설, 조선시설, 기타항만공사	접안시설,방파제,갑문,배(선박)를 정박하거나 수리를 위한 시설물공사 등 항만관련공사 및 이에 부대 되는 공사
	2413	운하	운하공사	운하공사
	2415	치수·하천	하천,저수지공사	- 치수공사: 하천보존을 위하여 시행되는 토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 하천공사: 하천관리를 위한 하수공사, 유수지공사, 제방공사, 하천시설물(수제, 통문, 갑문, 수문 등)설치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 저수지공사: 하천 및 우수를 모아 저장하는 저수지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농업용 저수지 공사 제외)
	2263	수로터널	운하터널, 유수로터널공사	- 운하터널공사(수중,수상) - 유수로터널공사:유류 및 물의 수송을 위한 터널공사
	2461	상수도 1천㎜이상	상수도 부설공사	상수도관(직경 상수도 1천㎜ 이상)을 부설하는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2462	상수도 1천㎜미만	상수도 부설공사	상수도관(직경 상수도 1천㎜ 미만)을 부설하는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2463	하수도	하수의 송·배수관 공사	하수 송배수관 설치 및 하수도관련 토목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관거,맨홀 등)
	2464	정수장	정수장설치공사	정수장 설치를 위한 기기설치 및 각종 부대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2512	관개수로	농업용저수지 및 시설물공사	- 농업, 임업, 수산업 관련 관개수로공사와 부대공사 - 농업전용저수지 조성공사와 부대공사
기타토목	2161	간척	간척공사, 매립공사	- 간척공사: 수면지나 저습지를 육지로 만드는 간척공사 및 부대되는공사 - 매립공사: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여 토지를 조성하는 매립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2264	기타터널	기타터널	- 위에 분류되지 않은 터널공사
	2361	택지조성	택지조성 공사	택지(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및 이에 부대 되는 공사(토목구조물 공사 포함)

구분	분류 부호	공 종 세분류	분 류 해 설	공 사 내 용
기타토목	2362	공업용지공사	공업용지 공사	공업용지 및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2414	치산.사방	치산,.사방	- 치산공사 : 산림천보존을 위하여 시행되는 토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 사방공사 : 흙이나 모래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공사
	2513	농지정리	농업 • 임업, 농 • 경지정리,	농업 • 임업, 농 • 경지정리 및 조성공사와 부대공사
	2919	기타토목시설	위에 분류되지 않은 토목공사	- 군사시설용 토목공사 - 장례 및 묘지 시설을 위한 토목공사 - 위에 분류되지 않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구분	분류 부호	공 종 세분류	분 류 해 설	공 사 내 용
주거시설	4011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개인용 단독주택과 가정보유시설 - 다중주택: 건축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하숙집 등과 같이 단독 주택형의 건축물 - 공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단체)의 기관장이 거주하는 공관과 외국공관에 해당하는 건축물 - 연립주택: 1개동의 건축연면적이 660㎡ 이상이고 4층 이하의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 1개동의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의 공동주택 ※ 기숙사, 관사, 숙소포함 **(군기숙사.관사는 군사시설)**
	4012	저층아파트	1층~5층이하	아파트 층수가 5층 이하인 아파트
	4013	고층아파트	6층~15층이하	아파트 층수가 6 ~ 15층까지 아파트
	4014	초고층아파트	16층이상	아파트 층수가 16층 이상인 아파트
	4061	주거 • 상업겸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주거, 상업용 겸용 건물

구분	분류 부호	공 종 세분류	분 류 해 설	공 사 내 용
비주거시설	4111	상가, 백화점, 쇼핑센타	도 • 소매상가, 백화점, 쇼핑센터	- 도 • 소매 시장: 도매 및 소매 상가용 건물 - 백화점: 백화점 및 유사 건축물 - 쇼핑센터 : 점포, 상가 및 슈퍼마켓
	4161	사무실빌딩	사무실	금융기관, 사무소, 신문사 등 업무용시설(사옥, 신문사, 공공단체용건물, 법무 및 회계사무실 등 일반 사무용건물)
	4162	오피스텔	오피스텔	오피스텔 및 이와 유사한 건물
	4163	인텔리전트빌딩	인텔리전트빌딩	건물전체가 전산화,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한 최첨단 건축물로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한 빌딩
	4164	관공서 건물 (11층이하)	일반근린 공공시설, 특별공공 근린시설,군사시설, 교정시설	**11층 이하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일반공공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도서관 등 - 특별공공시설: 양 • 정수장 및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시설물 - 군사시설 : 군사시설 및 이와관련한 건축물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관련 시설물
	4165	관공서 건물 (12층이상)	일반근린 공공시설, 특별공공 근린시설,군사시설, 교정시설	**12층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일반공공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도서관 등 - 특별공공시설: 양 • 정수장 및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시설물 - 군사시설 : 군사시설 및 이와관련한 건축물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관련 시설물
	4211	호텔 •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	호텔, 여관, 연인숙,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고시원 포함)
	4261	학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원, 연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원, 연수원, 교육원시설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화장실, 실습실 등) ※ 유치원, 각종 군사학교, 행정기관 소속 학교 포함
	4262	병원	의료시설, 격리병원	- 병원, 한방병원, 요양소, 정신병원 등 의료시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포함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병원
	4263	교회, 사찰 등 종교용건물	종교용 시설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등 이와 유사한 종교시설 건축물
	4311	전통양식건축	전통양식(한옥)건축	전통양식(한식)의 건축물 및 시설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
	4312	기타문화재 및 유적건물	문화재, 기타유적건물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정한 문화재 시설의 복구, 보수 및 설치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구분	분류 부호	공 종 세분류	분 류 해 설	공 사 내 용
비주거시설	4361	공연, 집회장소	공연장 시설, 집회시설	극장(야외극장제외), 영화관, 연예당, 음악당, 서커스장, 회의장, 예식장, 강당 등의 시설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
	4362	경기장, 운동장	경기장, 운동장시설	각종 경기 및 운동경기 관람을 위한 시설물 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4363	전시시설	전시관, 동 • 식물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등 각종전시시설,동 • 식물원 등
	4411	공장, 작업장용건물	공장건물, 작업장건물	-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수리를 위한 공장 건축물 - 기계장치등이 없는 단순 작업용도의 건축물
	4412	기계기구설치	기계기구설치 (플랜트 제외)	기계기구 설치를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4413	변 • 발전소용건물	변 • 발전소용 건물	변전소, 발전소 등의 전력공급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
	4911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창고, 운수, 차고, 자동차관련 시설	- 창고 및 하역장 용도의 건물(위험물시설제외)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건축물, 항만시설건축물 - 터미널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차고 등의 자동차관련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주차장 포함)
	4912	위험물저장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가스충전소, 유류판매소, 유독물판매소 등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919	기타건축시설	방송, 통신, 노인복지, 아동복지, 사회복지, 노인거주, 동물관련, 식물관련, 묘지, 장례관련, 위락시설, 관광시설, 청소년, 위생 • 냉난방, 기타 건축물 공사	- 방송 • 통신용시설 - 노인복지시설: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물 -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물 - 사회복지시설: 장애자, 사회, 근로복지시설 등 - 노인거주시설 : 실버타운 등 - 동물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동물 검역소 등 - 식물관련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 채소 재배시설 등 - 묘지 및 장례시설: 화장장, 납골당, 장례관련 건축물 - 위락시설: 유흥업소, 카지노, 목욕탕 등 -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 청소년 시설 : 청소년회관, 학생회관, 심신수련장, 야영장, 자연학습관, 유스호스텔 등 - 위생.냉난방용 건물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위생을 위한 시설물 - 기타용도의 건축물 : 마을회관 등

산업환경설비공사

구분	분류 부호	공 종 세분류	분 류 해 설
5012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기설치 및 각종 부대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5013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각종 농업,임업,공업용 폐수처리를 위한 기기설치 및 각종 부대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5014	쓰레기소각장	쓰레기 소각시설	쓰레기 소각처리를 위한 기계시설 공사
5015	기타환경시설공사	소음 · 진동방지, 대기환경측정 및 정화시설, 기타환경공사	- 소음 · 진동방지시설 - 대기환경측정 및 정화시설공사 - 기타 위에 분류되지 않은 환경시설 공사
5061	원자력발전소	원자력 설비	관련 시설을 위한 기계 · 기구 등의 설치
5062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설비	관련 시설을 위한 기계 · 기구 등의 설치
5063	열병합발전소	열병합발전소설비	관련 시설을 위한 기계 · 기구 등의 설치
5064	수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설비	관련 시설을 위한 기계 · 기구 등의 설치
5065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소 설비	관련 시설을 위한 기계 · 기구 등의 설치
5066	풍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설비	관련 시설을 위한 기계 · 기구 등의 설치
5067	조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설비	관련 시설을 위한 기계 · 기구 등의 설치
5111	(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송유관시설공사	관련 부설공사 및 관련 플랜트 시설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5112	(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	유류저장	유류 및 배출관련 플랜트시설공사
5113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가스관 시설공사	관련 부설공사 및 관련 플랜트 시설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5114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	가스저장 시설공사	가스 저장 및 배출 관련 플랜트 시설공사
5161	제철소, 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제철소 생산시설, 석유화학생산시설	제철생산, 석유화학 생산을 위한 기계설치 공사
5169	기타플랜트설비공사	위에 분류되지 않은 플랜트 설치공사 등	각종 제조등 공장시설의 기계설치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조경공사

구분	분류 부호	공 종 세분류	분 류 해 설
6011	수목원	식재, 녹화공사	- 식재공사: 경관 및 환경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이식 및 보호 유지공사 - 녹화공사: 지표면 녹화를 위한 공사 및 이와 유사한 공사
6061	공원조성공사	공원편의시설, 분수대 및 인공연못 설치 공사	- 공원 편의 시설공사: 공원, 유원지내의 벤치 및 음료수대, 놀이기구, 운동기구 등의 편의, 위락시설공사 - 공원, 유원지내의 분수대 및 인공연못 설치공사
6911	기타조경시설	기타조경시설공사	상기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조경시설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부록5 건설기술인 분류

건설기술인의 범위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3) 용 접 5) 일반기계	2) 건설기계 4) 승강기
나. 전기 · 전자	1) 철도신호 3) 산업계측제어	2) 건축전기설비
다. 토목	1) 토질 · 지질 3) 항만 및 해안 5) 철도 · 삭도 7) 상하수도 9) 토목시공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2) 토목구조 4) 도로 및 공항 6) 수자원개발 8) 농어업토목 10) 토목품질관리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3) 건축시공 5) 건축품질관리	2) 건축기계설비 4) 실내건축 6) 건축계획 · 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 · 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3) 가스	2) 소방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3) 소음진동 5) 자연환경 7) 해양	2) 수질관리 4) 폐기물처리 6) 토양환경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 · 재무 3) 건설마케팅	2) 건설기획 4) 건설정보처리

부록6 재무제표 계정과목 해설

☞ **재무제표**(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 **기준일** : 정기결산일(2022.12.31 ← 12월 말일이 정기결산일인 경우)
- **기 간** : 당기(2022.1.1. ~ 2022.12.31.), 전기(2021.1.1. ~ 2021.12.31.)
- **단 위** : 원

※ 프로그램에 음영 표기된 부분은 소항목 입력시 전산처리되므로 입력하지 않음

1 재무상태표 주요계정과목

① 자산

계정과목			내용 및 주의사항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통화**(지폐와 동전) 및 **통화대용증권**(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등) - **요구불예금** : 보통예금, 당좌예금 - **현금성자산** :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
		2. 단기 투자자산	기업이 여유자금 활용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기예금, 단기매매증권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포함) 및 단기대여금 등 - **단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 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그 기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 **단기투자증권** : 유가증권의 실제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이 있으며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증권
		3. 매출채권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에 **대손충당***액을 뺀 순액으로 기재 → 건설관련 매출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 및 분양미수금으로 기재하며 타겸업업종 매출에서 발생한 매출채권만을 기재 * **대손충당**부채 :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부채로 설정하여, 매출채권 과목에서 차감하는 금액
		4. 공사미수금	외부에서 도급받은 공사의 미수금에 대손충당액을 뺀 순액으로 기재
		5. 분양미수금	건설한 주택과 상가 등을 건설·분양하고 미수된 금액에 대손충당액을 뺀 순액으로 기재

계정과목			내용 및 주의사항
I 유동자산	(1) 당좌자산	6. 선급공사원가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도급공사로 계약전에 발생한 공사원가를 경과적으로 계상 예) : 수주활동을 위하여 선 투입된 모든 지출(수주비), 도시정비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할 때 대여한 모집원 이주비에 대하여 건설사가 부담하는 이자비용(이주비 대여금이자), 모델하우스비 등
	(2) 재고자산	1. 상품·제품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으로 미착(도착하지 않은)상품, 적송품(판매를 위탁한 상품) 등을 말하며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부산물 등
		2. 반제품	자가(직접)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 등을 말함
		3. 완성주택	분양(판매)목적으로 건설 완료한 주택 및 상가 중 미분양된 주택 계정으로서 손익계산 서상 매출원가의 기말완성주택재고액과 일치
		4. 미완성주택	분양(판매) 목적으로 건설중인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공사비용은 지출되었으나 분양매출원가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건설공사 원가명세서상 분양주택부문의 기말미완성 주택과 일치
		5. 용지	분양을 목적으로 매입, 보유한 건설용 토지를 계상
		6. 미성공사	도급공사의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나 공사매출원가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건설공사 원가명세서상 국내 및 해외공사부문의 기말미성공사와 일치
		7. 원자재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원료, 재료, 매입부분품 미착원재료 등
		8. 가설재	도급공사의 시공과정상 공사를 위하여 보조적 또는 임시적으로 설치, 사용되고 당해 공사완료 후 해체 또는 철거되는 모든 자재
		9. 저장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비품, 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 등
II.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건설을 위해 취득·보유중인 임대주택용지, 미완성임대주택, 임대주택토지, 완성임대주택, 임대주택 및 임대주택채권을 통틀어서 임대 주택자산이라 하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사이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
III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1. 장기금융상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만기가 1년후에 도래하는 특정현금과 예금, 장기성예금 등이며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등은 포함
		2. 장기투자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건설공제조합출자금 등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증권
		3. 장기대여금	기업의 여유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그 회수기간이 결산보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것을 말함.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 어음장기대여금, 장기 주택자금 융자 등. 그 회수기간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유동성장기대여금으로 계정대체를 하여야 함
		4.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이란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을 말함

계정과목			내용 및 주의사항
Ⅲ 비유동자산	(2) 유형자산	1. 토지	기업이 자신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함. 공장, 사무소, 주차장, 사택, 운동장 등의 부지
		2. 건물	토지위에 건설된 공작물로써 지붕이나 둘레벽을 갖추고 있는 사무소, 점포, 공장 및 냉난방·조명·통풍 및 이에 부수되는 설비도 포함함. 공장, 사무실, 영업소, 기숙사, 사택, 차고, 창고, 건물 부속설비, 점포 등
		3. 구축물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이외에 선거·교량·안벽·부교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화단, 가로등, 다리, 정원, 철탑, 포장도로 등)
		4. 기계장치	동력 등의 힘을 이용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원·부재료를 가공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각종 제조설비 또는 작업장치로서 기계장치 운송설비(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
		5. 건설용 장비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중기 및 기계류
		6. 차량운반구	철도차량, 기차, 자동차 등 운반구
		7. 건설중인 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외주비 및 경비를 말하며,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
	(3) 유형자산	1. 영업권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계상
		2. 산업재산권	관련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 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
		3. 광업권	일정한 광구에서 부존하는 광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어업권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5. 차지권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포함)
		6. 창업비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 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 준비기간 중에 사업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 (회계처리시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해줘야 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의 기타로 처리함)
		7. 개발비	새로이 현저하게 개량된 재료,장치,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된 모든 비용
	(3) 기타비유동자산	1. 이연법인세 자산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따라 납부예정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를 기재
		2. 보증금	전세권·전신전화가입권·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
		3. 장기미수금	그 회수기간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미수금으로 기업의 고유한 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되는 미수채권 예) : 유형자산의 매각 등
		4. 장기 매출채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타겸업업종)

자산총계 = Ⅰ유동자산 + Ⅱ임대주택자산 + Ⅲ비유동자산

② 부채

계정과목		내용 및 주의사항
Ⅰ 유동부채	1. 매입채무	물건을 사고 일정기간 후에 돈을 주기로 하거나 물건을 팔고 어음을 주었을 경우 계상
	2. 단기차입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사용 후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돈을 말함. 금융기관 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의 단기차입금, 어음 단기차입금, 당좌차월 등
	3. 미지급법인세	회계연도말 현재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 즉, 회계연도말 현재 당해 회계연도에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로서 미지급된 금액을 말함
	4. 미지급금·미지급비용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금) 또는 발생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미지급비용) 및 미지급배당금을 기재
	5. 유동성장기부채	비유동부채 중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1년내에 도래하는 부채(사채, 장기차입금 등)를 기재
	6. 공사손실충당부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동 예상손실을 공사손실충당부채 계정에 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
	7. 공사선수금	도급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중 공사수익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8. 분양선수금	분양현장에서 수령한 분양대금중 분양수익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Ⅱ 비유동부채	1. 사채 ▷ 사채발행차금 (사채할인·할증차금)	- 결산일로부터 1년 후에 상환되는 사채의 가액으로 기재(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포함) - 사채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하여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
	2. 장기차입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최종상환기한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의 장기차입금, 어음 차입금, 당좌차월 등
	3. 장기공사선수금	장기공사에 있어서 당해 연도 예정공사진행률에 따른 유동부채선수금 정산분을 제외한 결산일 현재 1년후의 선수금을 기재
	4. 장기성매입채무	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
	5. 하자보수충당부채	건설공사의 완성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위해서 기업이 회계상에 미리 설정해놓는 비용
	6. 이연법인세부채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금액을 기재

부채총계 = Ⅰ유동부채 + Ⅱ비유동부채

③ 자본

계정과목		내용 및 주의사항
Ⅰ 자본금*	1. 보통주자본금	주주총회할 때 의결권이 있는 주권
	2. 우선주자본금	의결권은 없으나, 보통주보다는 이익배당이 목적
Ⅱ 자 본 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시 액면을 초과한 금액
	2.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하는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
	3. 자기주식 처분이익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주식을 되팔아 이익을 본 경우 그 가액
Ⅲ 자 본 조 정	1. 자기주식	상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절차에 의하여 또는 증권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목적으로 자기자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본조정의 차감(△)항목으로 계상 처리
	2.주식할인발행차금	증자비용 등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상 처리
	3. 주식매수선택권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감사 포함)이 미리 정한 가액으로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4. 출자전환채무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납입자본의 임시계정
	5.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하는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모자랄 때에 그 부족금액
Ⅳ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매도가능증권이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주식이나 만기보유증권 또는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채권으로 결산일 현재 평가이익을 계상
	2. 해외사업환산손익	해외사업관련 자산·부채를 결산일 현재 환율로 환산할 경우 발생하는 손익을 계상
	3.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향후 예상되는 거래에 대한 위험회피로 예상되는 거래가 발생하기 전까지 결산일 현재 평가한 손익
Ⅴ 이 익 잉여금 (결손금)	1. 법정적립금	법률로써 규정된 적립금을 기재(예 : 상법 제458조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1/2내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배당액의 1/10이상을 적립)
	2. 임의(별도)적립금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임의로 적립하는 금액. 주로 사업확장 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등의 합계액
	3. 처분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확정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용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차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차기이월결손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명칭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미처분이익잉여금'과 동일하게 표시
자본총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결손금)		

* **자본금** : 법률에 따른 정해진 납입자본금

2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과목

계정과목			내용 및 주의사항
I 매출액	(1) 도급공사수입		도급공사의 시공매출액으로 국내와 해외공사수입으로 구분하여 기재
	(2) 분양공사수입		주택 및 상가 등을 자기(자체) 공사로 건설하여 타인에게 분양한 수입 (단, 토지분은 기타겸업매출액)
	(3) 기타 겸업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건설업이 아닌 매출액은 겸업 매출액에 기재하며 비등록사업일 경우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
II 매출원가	(1) 공사원가	1. 국내공사원가	건설공사원가명세서상 국내공사원가부문의 당기공사원가와 반드시 일치
		2. 해외공사원가	건설공사원가명세서상 해외공사원가부문의 당기공사원가와 반드시 일치
	(2) 분양원가*	1. 기초완성 주택재고액	전년도에 공사가 완료되고 미분양된 주택 및 상가의 재고분(전년도 손익계산서상 기말 완성주택재고액이 당년도 기초완성주택재고액이 됨)
		2. 당기완성 주택공사비	당년도에 공사원가에 투입되어 매출액으로 계상된 부문으로 건설공사원가명세서상 분양주택부문의 당기공사원가(11번항목)를 기재
		3. 기말완성 주택재고액	완성된 공사중에서 미분양되고 기말재고로 남아 있는 것을 기재하며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 중 완성주택과 일치
	(3) 기타 겸업 매출원가		건설매출을 제외한 겸업매출원가를 합산하여 기재

*분양원가 : 기초완성주택 재고액 + 당기원성주택공사비 - 기말완성주택재고액

III 매출 총이익	I 매출액 - II 매출원가

IV 판매비와 관리비	1. 급여	판매와 일반관리사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료, 임금, 제수당, 잡급 등을 하나의 계정으로 계상
	2. 퇴직급여	종전기준의 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 계정으로 동 충당부채잔액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시 초과부분도 퇴직급여 계정으로 회계 처리함.
	3. 명예퇴직금	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4. 복리후생비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국민연금사업주부담금 등
	5. 임차료	임차료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사무실 임차료, 복사기·팩스 임차료, 차량랜탈비, 창고·주차장 임차료
	6. 접대비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금전을 제외한 재화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거래처에 지출한 주대, 차대, 선물비용, 경조사비 등
	7. 감가상각비	토지, 건설가계정을 제외한 업무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8.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에 대해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등에 따른 당해 자산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 비용

계정과목		내용 및 주의사항
Ⅳ 판매비와 관리비	9. 세금과공과	자동차세, 사업소세, 인지대, 적십자회비, 국민연금회사 부담분, 협회 및 조합비, 균등할 주민세(취득/등록세 : 취득건물의 원가에 포함. 법인/소득/주민세는 포함하지 아니함)
	10. 광고선전비	TV신문광고료, 광고물제작비, 광고물 배포비, 간판제작비
	11. 연구비	과학적·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조사활동 비용으로 신제품개발비, 신기술연구비 등
	12. 경상개발비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
	13.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받을어음등 채권의 대손추산액 또는 경상적인 대손상각
	14. 미분양주택관리비	재고아파트 및 상가의 회사부담관리비 및 유지에 관계되는 제비용
	15. 수주비	입찰, 견적서 작성 및 중개수수료 등 수주 및 기타 판매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 경비
	16. 여비교통비	판매와 일반관리사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에 대한 여비(출장비 포함)와 교통비
	17. 통신비	전신, 전화, 우편 등의 비용
	18. 수도광열비	수도료, 전기료, 가스비, 연료비 등의 비용
	19. 수선비	판매와 일반사무용의 건물, 건물부속설비, 비품등의 수선비를 말하며, 개량확장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20. 보험료	판매와 일반사무용의 건물, 건물부속설비, 비품등의 화재보험료와 기타 손해보험료
	21. 보관비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의 보관비와 외부창고업자의 제품창고를 이용했을 때의 창고보관비를 말하며, 건설업은 자재 및 장비의 보관비 등이 해당
	22. 개발비	신제품 또는 신판매 개척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계상
	23. 운반비	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과정이나 자사내에서 제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제품의 발송과 짐꾸리기, 그밖의 운송에 관한 비용
	24. 지급수수료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수반되는 수수료와 설계 • 공사시험에 소요되는 증지대 • 수수료로 지급되는 제비용
	25. 교육훈련비	직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사내.외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강사초빙비용, 학원수강료, 위탁교육비, 연수원 임차비 간부수련비, 워크샵비용 등
	26. 해외시장개척비	해외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활동경비
	27. 차량유지비	회사업무용 차량의 유지에 필요한 수선비, 유류대 등을 말하며, 보험료, 자동차세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
	28. 소모품비	청소용구 및 쓰레기봉투 등 사무실과 관련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전기자재 및 철물, 전화기, 랜카드 구입비, 기타 소모품(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시 고정자산)

계정과목		내용 및 주의사항
IV 판매비와 관리비	29. 도서인쇄비	도서구입비나 인쇄대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계정
	30. 하자보수충당 부채 전입액	판매된 완성주택, 상가 및 완료된 도급공사분의 하자보수와 당해 연도 충당부채를 설정한 경우의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
	31. 기타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창업비 등)
V 영업이익		III 매출총이익 - IV 판매비와 관리비
VI 영업외 수익	1. 이자수익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예적금, 국공채, 사채, 대여금, 대표이사 가지급금이자
	2. 배당금수익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받게 되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의제배당
	3. 임대수익	부동산 또는 동산을 임대하고 타인으로부터 지대, 집세, 사용료 등의 대가로 수취하는 금액
	4.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1년이내 보유의도를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의 처분에 따른 이익
	5.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1년이내 보유의도를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의 결산일 현재 평가 이익
	6. 외환차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7. 외화환산이익	결산일에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화폐성 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기재
	8. 지분법이익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주식이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손실)로 인해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이로 발생한 이익
	9. 장기투자증권 손상차손환입	감액한 투자유가증권의 가치가 회복되었을 때 취득원가를 한도로 인식할 수 있는 수익
	10. 투자자산처분이익	투자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장부가액보다 더 많이 받고 처분할 경우 인식하는 수익금액
	11.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높게 처분한 경우 발생된 이익.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 또는 재평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
	12. 사채상환이익	사채의 조기상환시 장부가액과 상환가액의 차액인 상환이익
	13. 법인세환급액	전기에 과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익
	14. 하자보수충당부채환입	전기 대손충당부채 및 하자보수충당부채 설정분중 당기환입액
	15. 자산수증이익	회사가 회사의 주주, 채권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계상
	16. 채무면제이익	회사가 회사의 주주, 채권자 및 제3자로부터 회사의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을 계상
	17. 보험차익	회사보유자산에 대하여 보험가입후 보험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실제 지급받은 보험금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계상
VII 영업외 비용	1. 이자비용	외부로부터 조달한 타인자본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와 할인료, 또는 사채 이자
	2. 기타의대손상각비	정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중 대손발생액

계정과목		내용 및 주의사항
Ⅶ 영업외비용	3.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1년이내 보유의도를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의 처분에 따른 손실
	4.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1년이내 보유의도를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의 결산일 현재 평가 손실
	5. 재고자산 평가손실	재고자산을 기말에 평가하는 경우 취득시의 원가보다 시가가 더 하락한 경우 동 차액
	6. 외환차손	외화자산을 상환받을 때 원화로 받는 수취가액이 외화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와 외화부채를 원화로 상환하는 금액이 외화부채의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동차액을 처리하는 계정
	7. 외화환산손실	기업이 외국통화를 보유하고 있거나 외화로 표시된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기말결산시 원화로 환산평가함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 또는 발생당시의 외국환 시세와 결산일에 있어서의 외국환시세가 변동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손
	8. 기부금	경상적으로 기부한 금액 또는 의연금을 기재
	9. 지분법 손실	지분법손실은 피투자회사의 순손실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으로 취득시점에 피투자회사의 장부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상각한 금액에서 투자회사의 내부거래에 따른 손실
	10. 장기투자증권손상 차손	투자주식 또는 채권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
	11. 투자자산 처분손실	투자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
	12.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의 처분시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차액
	13. 사채상환손실	사채를 조기상환시 사채의 장부가액과 상환가액과의 차액을 계상
	14. 법인세추납액	법인세추납액은 납부해야할 세액이 신고·납부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금액
	15. 보상비	공사완료후 발생한 사후발생보상비 즉, 인근지역의 피해보상비등 ※ 산재보험 등의 처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비는 우발채무로 보아 영업외비용 부문의 잡손실로 처리 계상한다.
	16. 재해손실	천재, 지변 등 불가피한 사고로 거액의 자산에 대한 재해를 입은 경우 동 금액
Ⅷ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 손익		Ⅴ 영업이익 + Ⅵ 영업외수익 - Ⅶ 영업외비용
Ⅸ 계속사업손익법인세 비용		계속사업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을 기재
Ⅹ 계속사업 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Ⅺ 중단사업 손익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포함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순액으로 보고
Ⅻ 당기순이익(또는 순손실)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반드시 일치
주당손익		1. 기본주당계속사업손익 2. 기본주당순손익 3. 희석주당계속사업손익 4. 희석주당순손익

3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 주요 계정과목

○ **잉여금의 처분**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 **법정적립금** 우선 적립 : 이익준비금과 기타법정적립금(기업합리화적립금 등)
- **임의적립금** 차선 처분 :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법정·임의적립금을 뺀 나머지

계정과목	내용 및 주의사항
1. 미처분이익잉여금	①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전기로부터 당기로 이월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재 ② 회계정책변경의누적효과 : 회계원칙의 변경에 대해 소급법을 적용, 미처분이익잉여금에 가감 ③ 전기오류수정이익 :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 사항에 속하는 중요한 손익항목을 말함 ④ 중간배당액 : 배당가능이익의 발생으로 금전에 따른 중간배당했을 경우 그 금액 ⑤ 당기순이익(손실) : 손익계산서에서 계상된 당기순이익(손실)을 기재
2.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필요로 하는 처분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임의적립금 등을 이입하여 당기의 배당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적립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당기적립금의 이입액을 기재
3. 이익잉여금 처분액	① 이익준비금 :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순이익의 1/10이상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타 법정 적립금 :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 하여할 적립금을 말한다. ③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액 : 주식발행시 액면에 미달했을 경우 그 금액을 계상 ④ 배당금 : 주주총회의 결과로 지급확정된 금액을 현금과 주식으로 구분기재함 • 현금배당 :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배당받게 되는 현금 • 주식배당 :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배당받게 되는 주식 ⑤ 사업확장적립금 :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임의적립금으로서 그 목적이 사업확장을 위한 적립금을 기재 ⑥ 감채적립금 : 사채상환을 목적으로 기업 내부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기금
4. 차기 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이익잉여금처분액

4 건설공사원가명세서 주요 계정과목

구 분	내용 및 주의사항
1. 재료비 기초재료재고액 + 당기재료매입액 − 기말재료재고액	① **기초재료재고액** : 전기 기말재료재고액으로써 당년도로 이월된 원재료를 기재 ② **당기재료매입액** : 당년도에 공사에 투입될 재료를 매입한 금액을 기재한다. ③ **기말재료재고액** : 계산시점에서 당년도 공사에 투입되고 남은 재료를 기재하며 대차대조표 상 재고자산의 원재료와 일치된다.
2. 노무비	지급기준에 기초하여 당해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집계·계산하되, 작업시간 또는 작업량에 비례하는 노무비는 실작업시간 또는 실작업량에 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급여, 퇴직급여, 기타로 구분 계상
3. 외주비	건설업 회계처리의 특성으로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타건설사업자에 재도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비용을 전액 기재한다.
4. 현장경비	① **전력비**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전기료를 말한다. ② **수도광열비**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수도료, 가스대, 석탄대 등을 말한다. ③ **운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 ④ **기계경비** : 중기임차금, 보유중기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관비, 운반비등을 포함하여 기재 ⑤ **특허권사용료** : 타인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를 기재한다. 당해 계약 목적물을 시공하는 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비 및 동 부대 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기재 ⑥ **기술료** :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 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 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 ⑦ **연구개발비** : 당해 목적물을 시공하는 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외주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 등을 기재 ⑧ **품질관리비** : 당해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품질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의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재한다. ⑨ **가설비**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재한다. ⑩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 사용 또는 제공된 토지, 건물의 사용료 ⑪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다만,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함 ⑫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구 분	내용 및 주의사항
4. 현장경비	⑬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⑭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 비용을 기재한다. 외주비계정을 외주가공비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3. 외주비로 입력 ⑮ **안전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 ⑯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 등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⑰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⑱ **세금과공과** :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등을 기재 ⑲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기재 ⑳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 등 ㉑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화된 수수료(설계,공사시험에 소요되는 제수수료 등)를 기재 ㉒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 오염방지 시설을 위한 비용 ㉓ **보상비** : 당해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 등을 기재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 ㉔ **안전점검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 ㉕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㉖ **기타법정경비** : 상기 경비항목이외의 것으로써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화된 경비를 기재한다. 법령경비가 아닌 것으로써 기타경비는 현장관리비로 계상 ㉗ **감가상각비** : 현장사무소, 차량운반구 등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기재 ㉘ **하자보수비** : 해당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필요할 경우 이에 소요된 실제비용 ㉙ **현장관리비(기타)** :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위의 어느과목에도 속하지 않는 경비
5. 당기총공사비용	재료비 + 노무비 + 외주비 + 현장경비 : 총공사비용은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노무비,외주비 및 경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당기 총공사비용에는 하자보수비를 포함한다.

구 분	내용 및 주의사항
6.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환입액)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은 가산, 공사손실충당부채환입액은 차감(-)하여 순액으로 기재한다.
7. 기초미성공사 (기초미완성주택)	전기로부터 이월된 미성공사(미완성주택)에 대한 총지출액을 기재
8. 합계	당기총공사비용 +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환입액) + 기초미성공사
9. 기말미성공사 (기말미완성주택)	당년도에 공사원가에는 투입이 되었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결산일 현재 공사중에 있는 공사 및 주택으로 재고자산의 미완성주택 및 미완성공사비와 일치한다.
10. 타계정대체액 (이입액)	자사의 건물이나 택지조성등을 자체공사하는 경우 지출된 부분(타계정대체액) 또는 시공상에 필요한 토지등 공사원가부문으로 투입되는 금액(타계정이입액)을 기록하되, 타계정대체액은 가산, 타계정이입액은 차감(-)하여 순액으로 기재
11. 당기공사원가	**합계 - 기말미성공사 - 타계정대체액(또는 이입액)** - 각 부문별(국내도급공사, 해외도급공사, 분양공사, 기타겸업) 당기공사원가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계정의 각 부문과 일치해야 함. 단, 분양주택부문의 당기공사원가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계정의 주택분양원가중 당기완성주택공사비와 일치해야 함 - 당기공사원가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기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또는 환입액)을 가산(차감)하고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기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또는 환입액)과 기초미성공사를 가산(차감)하고 기말미성공사와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5 현금흐름표 주요 계정과목

계정과목		내용 및 주의사항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손익계산서 항목에 당기순이익의 결정에 관하여 현금효과 있는 경우 나타나는 현금흐름으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1)당기순이익(손실) + (2)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3)현금의 유출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4)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 당기순이익(손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기재한다.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 중에서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매출 채권처분·평가 손실, 유가증권처분·평가 손실, 투자자산처분·평가 손실, 유형자산처 분·평가 손실, 등과 같은 현금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은 가산한다 (가. 감가상각비 ~ 아. 기타의 합계 금액임)

계정과목		내용 및 주의사항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손익계산서의 투자자산처분·평가 이익, 재고자산처분·평가 이익, 유가증권처분·평가이익, 유형자산처분·평가 이익 등과 같이 현금의 유입을 수반하지 않는 수익은 차감한다 (가. 투자자산처분·평가 이익 ~ 마. 기타의 합계 금액임) ※ (-) 부호는 표시하지 아니함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감소, 재고자산 감소, 매입채무 증가 등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가산하고, 매출채권 증가, 재고자산 증가, 매입채무 감소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차감한다 (가. 매출채권 ~ 타. 기타 자산부채의 증가(감소)의 합계 금액임) → 미지급금 : 기타 ※ (-) 부호 표시 가능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에는 대여금의 회수, 단기 금융상품·단기투자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가. 유동자산의 감소 + 나. 투자자산의 감소 + 다. 유형자산의 감소 + 라. 기타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가. 유동자산의 감소	단기대여금의 회수, 단기 금융상품 및 단기투자증권의 처분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말한다. ①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금액 ② 단기투자증권의 처분 : 기중에 보유중인 단기투자증권 등을 처분한 경우 당해 금액 ③ 기타 유동자산의 감소 :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외의 기타 유동자산 처분 금액
		나. 투자자산의 감소	장기투자증권을 처분하거나 장기대여금을 회수하는 것과 같은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현금 유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만기가 1년후에 도래하는 특정현금과 예금, 장기성예금 등의 처분금액 ②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 기중에 보유중인 장기투자증권 등을 처분한 경우 당해 금액 ③ 기타 투자자산의 감소 :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외의 기타 투자자산의 처분금액
		다. 유형자산의 감소	토지나 건물 또는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활동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의미한다 ① 토지의 처분 : 기중에 보유중인 토지를 처분한 경우 당해 금액 ② 건물·구축물의 처분 : 기중에 보유중인 건물이나 구축물을 처분한 경우 당해 금액 ③ 기계장치의 처분 : 기중에 보유중인 기계장치를 처분한 경우 당해 금액 ④ 기타 유형자산의 감소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외의 기타 유형자산 처분금액
		라. 기타	상기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이외의 자산을 처분하여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의미한다.

계정과목			내용 및 주의사항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금융상품·유사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 직전 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된다. **가. 유동자산의 증가 + 나. 투자자산의 증가 + 다. 유형자산의 증가 + 라. 기타** ※ (-) 부호는 표시하지 아니함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가. 유동자산의 증가	단기대여금을 대여하거나 단기금융상품 및 단기투자증권을 구입하는 활동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포함한다 ①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의 취득금액 ② 단기투자증권의 취득 : 기중에 단기투자증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 ③ 기타 유동자산의 증가 :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외의 기타 유동자산 취득금액
		나. 투자자산의 증가	장기투자증권을 구입하거나 장기대여금을 대여하는 등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포함한다 ①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만기가 1년후에 도래하는 특정현금과 예금, 장기성예금 등의 취득금액 ②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 기중에 장기투자증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 ③ 기타 투자자산의 증가 :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외의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금액
		다. 유형자산의 증가	토지나 건물 또는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포함한다. ① 토지의 취득 : 기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 ② 건물·구축물의 취득 : 기중에 건물이나 구축물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 ③ 기계장치의 취득 : 기중에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 ④ 기타 유형자산의 증가 :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외의 기타 유형자산 취득가액
		라. 기타	산업재산권 등 각종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등의 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포함한다.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은 장·단기 차입금의 차입, 회사채의 발행, 유상증자 등이 포함된다. **가. 유동자산의 증가 + 나. 비유동부채의 증가 + 자본의 증가 + 라. 기타**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가. 유동부채의 증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금을 차입하거나 관계회사나 주주·임원·종업원으로부터 단기로 자금을 빌려오는 등의 활동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① 단기차입금의 증가 : 금융기관이나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금액 ② 기타 유동부채의 증가 : 단기차입금외의 기타 유동부채 증가액

계정과목			내용 및 주의사항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나. 비유동부채의 증 가	회사채 발행이나 차입금을 장기로 조달하는 등의 활동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① 회사채의 발행 : 기중 신규로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조달되는 현금을 의미한다. ② 장기차입금의 증가 : 금융기관이나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자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금액 ③ 기타 비유동부채의 증가 : 회사채, 장기차입금 외의 기타 비유동부채 증가 금액
		다. 자본의 증 가	유상증자 등을 이용하여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는 등의 현금조달활동을 포함한다.
		라. 기타	상기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조달이 포함된다.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장·단기 차입금의 차입, 회사채의 발행, 유상증자 등이 포함된다. 가. 유동자산의 증가 + 나. 비유동부채의 증가 + 자본의 증가 + 라. 기타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가. 유동부채의 감 소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단기로 빌려온 자금을 상환하는 등의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① 단기차입금의 상환 : 금융기관이나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단기로 빌려온 자금의 상 환 금액 ② 기타 유동부채의 감소 : 단기차입금 외의 기타 유동부채 감소 금액
		나 비유동부채의 감 소	금융기관이나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장기로 빌려온 자금이나 회사채 등을 상환하는데 따른 현금유출을 의미한다. ① 회사채의 상환 : 회사채를 상환함으로써 지출된 금액 ② 장기차입금의 상환 : 금융기관이나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장기로 빌려온 자금을 상환한 금액 ③ 기타 비유동부채의 감소 : 회사채, 장기차입금 외의 기타 비유동부채의 감소 금액
		다. 자본의 감소	기중 유상감자나 자기주식 취득 등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포함
		라. 기타	상기 이외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IV 현금증감액(I+II+II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등 당해 연도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조달한 현금의 변동금액을 의미한다.
V 기초의 현금			직전연도의 현금흐름표상의 기말현금잔액을 의미하며 재무상태표상의 기초 현금 및 현금등가물 금액과 일치한다.
VI 기말의 현금(IV+V)			현금증감액과 기초의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상의 기말현금 및 현금등가물 금액과 일치한다.

부록7 교재주석 해설

▶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 × 1.2)
+ (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 × 1)
+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 × 0.8) 〕 ÷ 3

▶ 경영평점 산출방법

$$\text{경영평점 산식} = \frac{\left[\text{차입금 의존도 평점} + \text{이자보상 비율 평점} + \text{자기자본 비율 평점} + \text{매출액 순이익률 평점} + \text{총자본 회전율 평점}\right]}{5}$$

차입금의존도평점	=	전체업계의 차입금의존도비율 /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	**차입금의존도비율**	= 차입금 / 총자산
이자보상비율평점	=	해당업계의 이자보상비율 / 전체업계의 이자보상비율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자기자본비율평점	=	해당업계의 자기자본비율 / 전체업계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 자 본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해당업계의 매출액순이익률 / 전체업계의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평점	=	해당업계의 총자본회전율 / 전체업계의 총자본회전율	**총자본회전율**	= 매출액 / 총자본

▶ 허위신고 제재사항

제재 사항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8,000만원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별표6

(징역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시공능력평가액 감액) 다음 3년간 시공능력 신인도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60 감액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1-라-(9)

(부정당업자 제재)

- 6개월 또는 1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등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또는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등

▶ 물품구매·제작납품·용역계약 : 원칙적으로 실적신고대상 아님

물품구매·제작납품·용역계약실적 중 신고대상

- 요건 : ㉮와 ㉯ 모두 충족할 것

물품구매·제작납품·용역계약 등으로 계약된 경우라도

㉮ 건설업 등록과 시공(현장설치)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고

㉯ 발주자가 물품·납품(이행)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제출서류 : ㉮, ㉯, ㉰ 모두 제출

㉮ 물품·납품(이행) 실적증명서

㉯ 도급계약서 사본

㉰ 입찰공고문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원도급 : 1억원 / 하도급 : 4천만원 이상)를 통보하지 않고 협회에 신고한 경우

⇒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반드시 시공능력평가 공시일(7월 말)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외부감사대상업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을 말함**

가. 주권상장 법인

나. 해당사업년도 또는 다음 사업년도 중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다. 직전 사업년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회사(2개 이상) 또는 유한회사(3개이상)

아 래
①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 이상
② 직전사업연도말 **부채총액** 70억 이상
③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이상
④ 직전사업연도말 **종원수** 100명 이상
⑤ (유한회사만 해당) **사원수** 50인 이상

▶ **문화재수리공사**

① 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이루어진 신축, 보수, 복원 등의 공사

② 문화재수리업체가 문화재수리업 자격으로 수행한 공사

※ 등록문화재, 향토문화유산, 전통사찰 등에서 이루어진 신축, 보수, 복원 등의 공사

부록8 서식 모음

고유번호

(NO. 1)

필수제출서류

2022년도
건 설 공 사 실 적 신 고(Ⅰ)

수 신 : 대한건설협회장
참 조 : 정보관리실장
제 목 : 202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공사실적 관계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건설공사실적 및 건설사업자 실태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신고하오니 2023년도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실적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건설 **대표자 :** (인)

상 호		전화번호	( ) -
본사 소재지		홈페이지주소	

종 합 건 설 업	토 건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 경
등 록 번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서류 작성 담당자	성 명		부 서 명	
	전 화 번 호	( ) -	휴 대 폰	
	FAX번호	( ) -	E-MAIL	

NO	제출서류 목록	제출 여부
-	종합건설공사실적총괄표	
-	전문건설공사실적총괄표	
-	종합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	전문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2	기성실적증명서 (필수)	
3	기성액 대비 매출처별 금액 확인표 (필수)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세무사(회계사) 확인필) (필수)	
4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신청표지	
5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신청서	
6	자기건설공사 공사비내역총괄표	

NO	제출서류 목록	제출 여부
별지.1	- 종합 건설사업자간 하도급 내역신고서	
별지.2	-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내역신고서[별지.2] - 별지.2에 대한 실적 확인서(발주자(감리자) 확인필) 및 첨부	
별지.3	- 산업/환경설비 제조실적 신고서[별지.3] - 별지.3의 대한 확인서(발주자 확인필)	
별지.4	- 건설사업관리 위탁수행실적신고서	
별지.5	-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절감 및 시공기간단축 공사 신고서[별지.5] - 별지.5에 대한 증명서(발주자 확인필)	
별지.6	-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내역 신고서[별지.6] - 별지.6에 대한 증명서(발주자 확인필)	
별지.7	- 경력 건설근로자 건설업등록(창업) 우대신고서	
※ 별지3~7은 필요시 esingo 우측서식모음 활용		

※ 제출서류 목록은 확인후 제출여부에 O, X 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NO.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업종 및 등록번호

공사내역

공사명		총공사금액 백만원
현장 소재지(번지까지 기재)		
공사유형	주력분야	① 공사종류 ② 세부공사종류(종합) ③ 세부공사종류(전문)
		인·허가 기관
		인·허가 연월일

종합·전문 구분	신고번호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예정)연월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발주자공급 자재액						
					총계약금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관급 자재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그 밖의 사항 (공사의 규모·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년도 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수급인)

- 상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소
-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공사유형은 신설공사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는 유지보수공사로 기재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와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보강·변경하는 공사는 신설공사와 같이 신설공사로 기재합니다.
2. 주력분야는 건설사업자가 주력분야로 지정받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기재합니다.
3.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종합공사의 업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을 모든 건설사업자(종합 및 전문)가 기재합니다.
4. ②종합공사의 세부공사종류을 기재합니다.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③전문공사의 세부 공사종류도 기재합니다
5. ③전문공사의 세부공사종류을 기재합니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②종합공사의 세부 공사종류도 기재합니다.

(1) 공사유형 : 신설공사, 유지보수공사

(2) 종합공사의 세부공사종류

공사종류	세부공사종류(종합)			
토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 만 공 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 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토목시설
건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 교 병 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산업·환경설비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조경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기타 조경공사	

(3) 전문공사의 세부공사종류

세부공사종류 (전문)			
일반토공사	일반도장공사	상수도설비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발파공사	재(再)도장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일반포장공사	차선도색공사	철도·궤도공사	자동제어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미장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일반보링·그라우팅공사	타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가스시설공사(제2종)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방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가스시설공사(제3종)
파일공사	조적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난방공시(제1종)
일반실내건축공사	석공사	수중공사	난방공사(제2종)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준설공사	난방공사(제3종)
금속구조물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창호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온실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삭도설치·제거공사	
지붕·판금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건축물조립공사	비계공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NO. 3)

고유번호

2022년도 기성액 대비 매출처별 금액 확인표

20 . .

.

상호		주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번호	매출처	건수	기성액 (백만원)	홈택스매출 합계액(백만원)	신고번호(종합)	신고번호(전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상 호 :

주업종/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 동 자료는 ‘ 04. 건설공사기성신고’에 작성한 발주자(원도급자)별 기성액을 합산한 자료로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상호대조하여 적정 작성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1)

고유번호

2022년도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 내역신고서

(단위:백만원)

신고번호	공사명	하도급 포함 총계약액 (가+나)	총 계약액 (자사분) (가)	하도급 계약액 (나)	기성액 합계 (A+B)	자사 기성액 (A)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 내역		
							하도급자 상호	주업종 · 등록번호	하도급자 기성액 (B)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원도급자 상 호 :

주업종 · 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대 한 건 설 협 회 장 귀하

첨부 - 동일업종간 하도급 :발주자의 서면승낙서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동일하지않은 업종간 하도급 : 하도급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동 서류 미제출할 경우, 공사실적평가액 산정시 가산되지 않음

※ 작성시 주의사항

1.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공사만 기재(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공사는 작성대상 아님)
2. 작성시 금액단위는 백만원으로 기재(백만원 단위미만 절사)

(별지서식 2)

고유번호

2022년도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사용 내역신고서

신고번호	공사명	최초계약일	발주자명	감리자명	일체형 작업발판 임대(판매)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원도급자 상　　호 : 주식회사 ㅇㅇ건설

주업종 • 등록번호 : 토건 / ㅇㅇㅇㅇㅇ

대 표 자 : ㅇㅇㅇ　　(인)

대 한 건 설 협 회 장　귀하

첨부 :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확인서(원본)**

일체형 작업발판 임대(구매)계약서,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사본)

※ 동 서류 미제출할 경우, 신인도평가액 산정시 가산되지 않음

※ 작성시 주의사항

1. 국내민간공사로서 최초계약일이 2020년 이후 공사만이 신고대상 임
2. 공사 계약1건당 최초 한 번만 가산적용 대상공사 임
3. 업체가 가산 신고한 공사로서 별지서식을 첨부한 경우만 신인도평가액에 가산됨

(별지서식 2의 첨부)

고유번호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사용 실적 확인서
(발주자 또는 감리자 확인용)

1. 건설사업자(원수급인)

회사명		대표자	

2.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공사명			
공종		발주자	
현장소재지			
공사기간			
작업발판 사용기간			

상기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장제6절에 따른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를 사용한 현장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감리자(발주자)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 붙임 : 감리업등록증, 일체형 작업발판 임대(구매)계약서,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별지서식 3)

고유번호

2022년도

산업 • 환경설비 제조실적 신고서

(단위:백만원)

신고 번호	계약명 (산업환경설비 제조실적내용)	계약일	산업 • 환경설비 제조(납품)실적 (금액)	발 주 처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상 호 :

주업종 • 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대 한 건 설 협 회 장 귀하

첨부 : **산업.환경설비 제조실적 확인서, 제조 • 납품건별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원본 등**

※ 작성시 주의사항

1. 실적신고내용에 포함되는 산업 • 환경설비공사실적 이외의 산업 • 환경설비 제조납품 실적에 대하여만 작성
   ※ 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등록한 업체만 작성
2. 작성시 금액단위는 백만원으로 기재(백만원 단위미만 절사)

(별지서식 3의 첨부)

고유번호

2022년도

산업 • 환경설비 제조실적 확인서

□ **산업·환경설비 제조실적 내역**

신고번호	-		계 약 명		
계 약 일	. . .		제조(납품)일자	. . .	
계약금액	백만원		제조 및 납품금액	백만원	
수 급 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_____년도 중 「산업·환경설비 제조(납품)」과 관련하여 위와같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발 주 처 :
대 표 자 :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대 한 건 설 협 회 귀중

※ 해외수출인 경우, 영세율확인서, 외화입금증명서(원본) 등 수출과 관련된 서류일체(수출신고필증 등) 첨부 요망
※ 확인서 미제출시 불인정

(별지서식 4)

고유번호

2022년도

건설사업관리 위탁수행실적신고서

(단위:백만원)

신고번호	건설사업관리 위탁계약명	위 탁 자 (발 주 자)	계약일	위탁 계약액	위탁수행실적액 (CM수수료)	공종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상 호 :

주업종 · 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대 한 건 설 협 회 장 귀하

첨부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2.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계약서사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CM수수료)을 증명하는 서류(위탁자 등의 확인서류)

※ 작성시 주의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 작성
2. 작성시 금액단위는 백만원으로 기재(백만원 단위미만 절사)

(별지서식 5)

고유번호

2022년도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절감, 시공기간단축 공사 내역신고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5항)

(단위:백만원)

신고번호	공사명	총 계약액	누계 기성액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공사비 절감액**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상 호 :

주업종 · 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대 한 건 설 협 회 장 귀하

첨 부 : 1.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2.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절감, 시공기간단축 공사 실적 증명서 (발주자확인 원본)

※ 동 서류 미제출할 경우, 공사실적평가액 산정시 가산되지 않음

※ 작성시 주의사항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을 단축 등의 효과가 인정되어 설계변경을 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 작성
2. 작성시 금액단위는 백만원으로 기재(백만원 단위미만 절사)

(별지서식 5의 첨부)

고유번호

2022년도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절감, 시공기간단축 공사 실적 증명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본 사 소재지		업종 및 등록번호	

공 사 내 역

공 사 명		총공사금액	백만원
현장소재지 (세부주소기재)		공 종	

신고번호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당년도공사비절감액 (* 절감액의 30%만 기재) / 당년도기성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비 고 (공사 규모,공법, 공동도급 지분율 등)	

2022년도 중 위와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절감 및 시공기간단축 등의 효과가 인정되어 설계변경을 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상 호 및 대 표 자 : (인)

주 소 및 전 화 번 호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별지서식 6)

고유번호

2022년도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내역 신고서

(단위:백만원)

신고 번호	공사명	발주자명	공종	총공사금액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직접시공분 기성액
-						
-						
-						
-						
-						

직접시공의무 공사가 아닌 공공공사로서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를 통보하고 직접시공 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상　　호 :

주업종 · 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대 한 건 설 협 회 장　귀하

첨부 :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확인서(발주자확인 원본)**

※ 동 서류 미제출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산정시 가산되지 않음

※ 작성시 주의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가 아닌 70억이상 공공공사로서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만 작성

2. 작성시 금액단위는 백만원으로 기재(백만원 단위미만 절사)

(별지서식 6의 첨부)

고유번호

2022년도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업종 및 등록번호	
공 사 내 역				
⑤공사명		⑥총공사금액		백만원
⑦현장소재지(번지까지 기재)		⑧공사지역		
⑨공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공종을 말합니다)		⑩	인·허가 기관	
			인·허가 연월일	
			직접시공계획 통보일자	

⑪ 신고번호	⑫당해년도 기성액							당해년도 직접시공분										⑮ 계약 연월일	⑯ 착공 연월일	⑰ 준공 연월일
								⑬세부공종 (전문공사 업종)	⑭기성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입력불가)												
								계												

⑱기타(공사의 규모, 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2022 년도 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 직접시공분에 대한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상 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주 소

·전화번호

(별지서식 7)

고유번호

2022년도

경력 건설근로자 건설업등록(창업)시 우대 신고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설립일		건설업 최초진입일			
퇴직공제가입현황	가입경력기간	년		공제부금 납일일수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상　　호 :

주업종 · 등록번호 :

대 표 자 :

대 한 건 설 협 회 장　귀하

첨부 : **1.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확인분)**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舊.법인등기부등본) ※ 최근1개월내 발급분

※ 동 서류 미제출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산정시 가산되지 않음

※ 작성시 주의사항

1. 우대신고 업체 대표자 본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최초로 건설업등록을 한 경우에 한 함.
2. 대표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라 퇴직공제 가입이 5년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NO. 4)

고유번호

필수제출서류

2022년도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 신청표지

상 호		대 표 자	
본사소재지			

신 청 목 록				
일련번호	공 사 명	당 년 도 실적신청액(원)	수수료(원)	확인
1				
2				
3				
4				
5				
6				
7				
8				
9				
10				

서류 작성 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　　) -	휴대폰	- -
	FAX번호	(　　) -	E-MAIL	@

(NO.5)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 신청서

◈ **신청인 기재란**

구 분	실 적 년 도	2022	신 고 번 호	-
신 청 인	회 사 명		업종 및 등록번호	
	담 당 자		전 화 번 호	
공사현황	공 사 명		공 사 종 별	
	공사장 위치			
	공 사 개 요			
	전년도 연면적	(㎡)	연 면 적	(㎡)
인.허가 사 항	인.허가기관		인.허가번호	
	인.허가년월일		주 용 도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종 합 건설업자 도급내역	도급회사명		전화번호	
	도급 총계약금액	(원)	당년도 도급 총기성금액	(원)
총공사비 내 역	□ 직접공사비	(원)	□ 일반관리비	(원)
	□ 간접노무비	(원)	□ 이 윤	(원)
	□ 제 경 비	(원)	□ 부 가 세	(원)
공사실적	전년도까지 누계인정액	(원)	전년도까지 누계진도율	(%)
	당 년 도 실적신청액	(원)	당년도까지 누계진도율	(%)
확인자 (감리자)	회 사 명		성 명	(인)

위의 자기건설공사 실적을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이사 : (인)

대 한 건 설 협 회 장 귀하

◈ **검토자 기재란** (접수번호 :)

평 가 유 형	분 할 유 형	지 역 유 형	□ 일반 □ 도서
□ 공동주택 □ 철골조주택 □ 그 외 주택 □ 오피스 □ 근린생활시설 □ 내역평가	□ 통합(토목 · 조경 분할없음) □ 토목 · 조경 제외 □ 토목 제외 □ 조경 제외 □ 토목만 평가 □ 조경만 평가 □ 토목.조경만 평가	검토직접공사비	원
		기 준 년 도	
		평 가 자	인
참고사항			

(NO.6)

총 공 사 비 내 역 총 괄 표

○ 공사명 : ○ 작성자(직위.성명) : (인)

공 종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기계경비, 운반비, 가설비 등)	비 고
가 설 공 사					
토 공 사					
기 초 공 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 골 공 사					
조 적 공 사					
미장.방수공사					
목(가구)공사					
금 속 공 사					
지붕.홈통공사					
창호.유리공사					
타일.돌공사					
도 장 공 사					
수장(도배)공사					
잡 공 사					
조 경 공 사					
설 비 공 사					전기/통신/소방 제외
직접공사비 소계(①)					
간 접 노 무 비					
제 경 비		보험료(산재.고용.건강.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기타경비 등의 합계 (직접공사비에 포함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가설비 제외)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간접공사비 소계(②)					
총원가 (①+②)					
부 가 가 치 세					
총 공 사 비(③)					총원가 + 부가세
종합건설업자 도급금액 (④)					부가세 포함
전체공사비(③+④)					

※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 신청서 작성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총공사비(③) 금액임

(NO.7)

고유번호

필수제출서류

2022년도
재 무 상 태 신 고(II)

2023. . .

수 신 : 대한건설협회장
참 조 : 정보관리실장
제 목 : 2022년도 재무상태 신고(재무제표 관계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신고하오니 2023년도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실적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상호 : 대표자 : (인)

*** 2023 년 기업정보 공개 동의(2023 . .) 업체입니다.**

상 호		전화번호	
본사 소재지			

종 합 건 설 업	등 록 번 호	기타공사업 등록현황
토 건	제 호	
토 목	제 호	
건 축	제 호	기업구조조정 여부 등
산 업 · 환 경 설 비	제 호	□ 해당없음
조 경	제 호	□ 법정관리 (년 월 일) □ 워크아웃 (년 월 일)

서류 작성 담당자	성 명		부 서 명	
	전화번호		휴 대 폰	
	FAX번호		E - M A I L	

NO	제출서류 목록	제출 여부	비고
-	재무제표(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원본	필수	* "필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란인 경우 '제출 여부'에 따라 "0" 또는 "X"표기바람
-	현금흐름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원본		
8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원본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3호서식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원본		

(NO. 8)

2022년도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상 호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합계 (부가세 제외, 단위 : 원) ① + ②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금액 ①	**비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금액 ②

상기 기술개발투자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2022년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상의 금액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상호·명칭(대표자) :

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팩스 :)

담당공인회계사(세무사) : 등록번호 제_____호 성명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대 한 건 설 협 회 장 귀하

첨부서류 :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록증 사본

2.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2), 별지 제3호서식 부표(1)(2)

※ 2번 첨부서류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 및 간인하여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2. 3. 18.>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구분 /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⑥ 금액	건수	⑦ 금액	건수	⑧ 금액
합 계						

구분 / 계정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⑪ 총 계 (⑥+⑦+⑧+⑨+⑩)
	건수	⑨ 금액	건수	⑩ 금액	
합 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⑫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⑪)	⑬ 직전 4년 발생액 계 (⑭+⑮+⑯+⑰)	⑭ (직전 1년)	⑮ (직전 2년)	⑯ (직전 3년)	⑰ (직전 4년)

⑱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⑬/4)		⑲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⑯)/3]		⑳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2]	
㉑ 증가발생액 (⑫−⑭)					

❹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㉒ 대상금액(=⑪)	㉓ 공 제 율			㉔ 공제세액 (㉒×㉓)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㉕ 대상금액(=⑪)	㉖ 유예기간 종료연도	㉗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	㉘ 공 제 율	㉙ 공제세액 (㉕×㉘)
					종료 이후 1~3년차 15% 종료 이후 4~5년차 10%	
	중견기업	㉚ 대상금액(=⑪)	㉛ 공제율			㉜ 공제세액 (㉚×㉛)
			8%			
	일반기업	㉝ 대상금액(=⑪)	공제율			㉗ 공제세액 (㉝×㉖)
			㉞ 기본율	㉟ 추가	㊱ 계 (㉞+㉟)	
			0%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⑭<⑱ 경우 공제 제외)	㊳ 대상금액(=㉑)	㊴ 공제율	㊵ 공제세액 (㊳×㊴)	*공제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25%
		%		

㊶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㉔와 ㊵ 중 선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㉙와 ㊵ 중 선택)
	중견기업(㉜와 ㊵ 중 선택)
	일반기업(㉗과 ㊵ 중 선택)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❺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연구・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구분	정부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재료비 등의 "⑦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상품제작에 한함)・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를 적습니다.[별표6 제1호가목2) 항목]
3. 기타의 "⑧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별표6 제1호가목3) 항목]
4. 인력개발비의 "⑩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에 따른 위탁훈련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을 적습니다.
5. 공제율의 "㉞ 추가"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2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6. ❺, ❻의 "구분"란은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❺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개정 2022. 3. 18.>

신성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신성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 기술명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⑨ 합계 (⑥+⑦+⑧)
		⑥ 인건비	⑦ 재료비 등		
합 계					

❹ 공제세액

			공 제 율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⑩ 대상금액(=⑨)	⑪기본율	⑫추가	⑬계(⑪+⑫)	⑭ 공제세액 (⑩×⑬)
			30%			
			공 제 율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⑮ 대상금액(=⑨)	⑯기본율	⑰추가	⑱계(⑯+⑰)	⑲ 공제세액 (⑮×⑱)
			20% 또는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신성장 ·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 · 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 · 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 · 부품 · 원재료 · 시약류 구입 명세서, 소프트웨어·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와 신성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신성장 ·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 란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 ·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 1.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신성장·원천기술 코드(01)' 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⑦ 재료비 등"란은 신성장 · 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 부품 ·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 · 서체 · 음원 · 이미지의 대여·구입 명세서를 적습니다.
4. "⑦ 재료비 등" 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⑦신성장·원천기술 재료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⑫금액 중 ⑪기술구분코드가 '신성장·원천기술 코드(01)' 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6. "⑫, ⑰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7. "⑯ 기본율"란은 2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25%)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3)] <개정 2022. 3. 18.>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국가선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 기술명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⑨ 합계 (⑥+⑦+⑧)
		⑥ 인건비	⑦ 재료비 등		
합 계					

❹ 공제세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⑩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⑭ 공제세액 (⑩×⑬)
			⑪기본율	⑫추가	⑬계(⑪+⑫)	
			40%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⑮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⑲ 공제세액 (⑮×⑱)
			⑯기본율	⑰추가	⑱계(⑯+⑰)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란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 1.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국가전략기술 코드(02)'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⑦ 재료비 등"란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합계를 적습니다.
4.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⑧국가전략기술 재료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⑫금액 중 ⑩기술구분코드가 '국가전략기술 코드(02)'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6. "⑫, ⑰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개정 2022. 3. 18.>

(앞쪽)

과 세 연 도	. . . ~ . . .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사업자 등록번호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연구과제명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③ 연구 과제명	④ 재료비 등				
	계	견본품 등 (별표 6 1.가.2))	임차료 등 (별표 6 1.가.3))	위탁·공동연구비 (별표 6 1.나)	기타 (별표 6 1.다~사)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⑤ 연구 과제명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합 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①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1명의 연구원이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② 연구개발 인력 개발비"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인건비의 '⑥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라.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마.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다. "④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재료비 등의 '⑦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 제1호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 포함)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⑦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의 '⑨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마.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개정 2022. 3. 18.>

과 세 연 도	. . . ~ . . .	연구과제 총괄표	법 인 명	
			사업자 등록번호	

① 연번	② 기술 구분코드	③ 연구과제명	④ 기술명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만 작성)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작성한 연구과제는 ①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또는 ②새로운 서비스, 서비스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① 연번"란에는 1부터 시작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 기술구분 코드"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 종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코드번호	01	02	03

3. "③ 연구과제명" 란은 기업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연구과제별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과제의 구분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만 해당), 투입 인력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④ 기술명" 란은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명을 적습니다.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동 란을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외화 입금 증명서 샘플 >

외화 입금 증명서

상 호		거래은행	
대 표 자		계좌번호	
소 재 지			
발급용도			

입 금 내 용

(단위:원)

매입일자	계약번호	신고번호	금 액	비 고

상기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장 : (인)
(지점장)

< 주한미군 공사 계약서 샘플 >

ORDER FOR SUPPLIES OR SERVICES — PAGE 1 OF 25

1. CONTRACT/PURCH. ORDER/ AGREEMENT NO.: W91QVN18D 계약번호
2. DELIVERY ORDER/ CALL NO.: W91QVN18F 계약번호
3. DATE OF ORDER/CALL: 계약일자
4. REQ./ PURCH. REQUEST NO.: 562LE8003N004
5. PRIORITY

6. ISSUED BY — CODE W91QVN
411TH CONTRACTING SUPPORT BRIGADE, KOREA
RCC YONGSAN, UNIT#15289
APO AP 96205-5289
UNITED STATES

7. ADMINISTERED BY (if other than 6) — CODE W91QVN
411TH CSB, KOREA - CONST & SUPPLY TEAM
POC: MS. KANG, MYONG-HUI
TEL: 02-7914-7275
MYONGHUI.KANG1.LN@MAIL.MIL
APO AP 96205-5289
UNITED STATES

8. DELIVERY FOB
[ ] DESTINATION
[X] OTHER
(See Schedule if other)

9. CONTRACTOR — CODE 470AF — FACILITY
NAME AND ADDRESS: 업체정보

10. DELIVER TO FOB POINT BY (Date) (YYYYMMMDD): SEE SCHEDULE
TERMS

11. MARK IF BUSINESS IS
[ ] SMALL
[ ] SMALL DISADVANTAGED
[ ] WOMEN-OWNED

INVOICES TO THE ADDRESS IN BLOCK

14. SHIP TO — CODE W562LE

15. PAYMENT WILL BE MADE BY — CODE W09SAA

MARK ALL PACKAGES AND PAPERS WITH IDENTIFICATION NUMBERS IN BLOCKS 1 AND 2.

16. TYPE — DELIVERY [ ] CALL [X] This delivery order/call is issued on another Government agency or in accordance with and subject to terms and conditions of above numbered contract.

발주자명, 공사 계약명, 공사수행 내용, 공사기간(계약일,착공일,준공일),
계약금액 등 증명서상에 기재된 내용을 "형광펜"으로 표시

25. TOTAL: 계약금액
26. DIFFERENCES

e. MAILING ADDRESS OF AUTHORIZED GOVERNMENT REPRESENTATIVE

28. SHIP NO.

29. DO VOUCHER NO.

30. INITIALS

f. TELEPHONE NUMBER

g. E-MAIL ADDRESS

[ ] PARTIAL
[ ] FINAL

32. PAID BY

33. AMOUNT VERIFIED CORRECT FOR

36. I certify this account is correct and proper for payment.

a. DATE (YYYYMMMDD)

b. SIGNATURE AND TITLE OF CERTIFYING OFFICER

31. PAYMENT
[ ] COMPLETE
[ ] PARTIAL
[ ] FINAL

34. CHECK NUMBER

35. BILL OF LADING NO.

37. RECEIVED AT

38. RECEIVED BY

39. DATE RECEIVED (YYYYMMMDD)

40. TOTAL CONTAINERS

41.

업체 원본대조필 확인 필

DD Form 1155, DEC 2001 — PREVIOUS EDITION IS OBSOLET

감리자의 기성률 확인서

1. 공 사 명 :

2. 총계약액 :

3. 공사기간 : ~

4. 발 주 자 :

5. 수 급 인 :

- 상 호 :
- 대표자 :

상기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수급인 ( )가 2022.12.31까지 시공한 실행 누계진도율은 ( )%이며, 2022년도(2022.1.1～2022.12.31) 중 실제 공사를 수행한 부분의 기성률은 ( )%, 공사 기성금액은 ( )백만원임을 확인합니다.

6. 확 인 자

- 감리회사(감리자) :
- 대표자 : (인)

붙 임 : 감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끝.

2022년도 매출액 구분 확인서

2022년도 재무제표에 포함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아래와 같이 구분 확인합니다.

○ 거래기간(당기) : *2022.1.1～2022.12.31*

○ 매출액

(단위: 원)

구 분		제 (당)기
건설공사* 매출	도급공사매출	
	자체(자기) 공사 분양매출	
겸업매출	조선, 분양(시행), 제조, 임대, 용역,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환경전문공사 등	
합 계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매출

○ 확인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 (인)

등록번호 :

○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붙 임 : 세무사 또는 회계사 등록증 사본 1부. 끝.

2022년도 차입금 확인서

2022년도 재무제표에 포함된 재무상태표 상의 차입금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정기결산일 :

○ 차입금 (단위: 원)

구 분	계정과목명	금 액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합 계		
※ **회생채무 관련 금액이 있으나 차입금에 미포함한 경우**, 그 사유 기재		

○ 확인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 (인)
등록번호 :

○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붙 임 : 세무사 또는 회계사 등록증 사본 - 1부. 끝.

【참 고】 차입금 계정과목 예시

유동부채 (예시) 단기차입금, 유동성사채, 외화단기차입금, 어음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유동성금융리스부채, 유동성전환사채, 단기사채, 당좌차월, 관계회사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채무, 유동성외화장기차입금, 유동성금융리스미지급금, 단기융자금, 유동성장기부채, 유동성외화장기부채, 가수금, 단기대출금, 위 계정과목 외 차입금
(회생채무관련) 대여채무, 구상채무, (금융)보증채무, 신탁채무, 유동성채무 등

비유동부채 (예시) 장기차입금, 사채, 장기외화차입금, 신주인수권부사채, 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 금융리스부채, 전환사채, 금융리스미지급금, 금융리스장기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장기차입금, 외화사채, 교환사채, 차관, 관계회사장기차입금, 외화금융리스부채 장기융자금,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장기대출금, 위 계정과목 외 치입금 등
(회생채무관련) 대여채무, 구상채무,(금융)보증채무, 신탁채무 등